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3호
2017. 6. 8.(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13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7-135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7-1360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제2017-1367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 고 시

제2017-20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
제2017-201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
제2017-20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39
제2017-2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7
제2017-205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0
제2017-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86
제2017-207호 구로구 가리봉동(한뫼모아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88
제2017-208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0

◆ 공 고

제2017-130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08
제2017-132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108
제2017-1323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116
제2017-134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121
제2017-134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23
제2017-1350호 차량의 운행제한 변경공고	124
제2017-135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26
제2017-136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27
제2017-136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129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120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130
-----------------------------------	-----

◆ 구 고 시

제2017-8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31
--	-----

제2017-4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34
제2017-88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134
제2017-38호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140
제2017-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43
제2017-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동작구)	145
제2017-90호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강동구)	145
제2017-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152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53

◆ 구 공 고

제2017-499호 을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종로구)	163
제2017-513호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종로구)	165
제2017-556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 열람공고(광진구)	166
제2017-751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안) 열람 · 공고(은평구)	168
제2017-711호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양천구)	168
제2017-713호 도시관리계획[신탄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양천구)	170
제2017-714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172

◆ 사업소고시

제2017-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5
제2017-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5
제2017-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6

◆ 사업소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용산소방서)	177
-------------------------------------	-----

◆ 기 타

제2017-10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8
제2017-1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8
제2017-11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9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사업소 등 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 위임 규정 재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

2. 주요내용

- [별표 6] 사무위임 수임기관에 서울식물원장,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 추가
-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조례 근거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25, FAX: 2133-1080, E-mail: rlag1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5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 4.)에 따라 조례개정 검토
 - 해석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의 양도 허용은 법령 위반
 나. 감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조례상 임차권리의 양도조항 개정 미추진을 이유로 확인서 및 질문·답변서 징구('16.10.)

2. 주요내용

- 가. “임차권 양도 허용” 삭제(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6층(청계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도환경개선과(전화 : 2133-8132, FAX : 768-8905, E-mail : osk061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임차권리의 양도를 금지 하기 위한 조례 개정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보도환경개선 과장 서관석,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담당 오성균)							
4. 근거법령명등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호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서울특별시 25개 지하도상가 ○ 이해관계자 : 지하도상가 위탁법인 및 입점상인							
6. 규제존속기한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폐지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 여서는 아니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행정자치부 법령해석('16.4.25)에서도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대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市 공유재산 관계법령 준수와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가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규제는 그동안 임차권 양도허용이 명백히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 시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의 개정으로 임차권리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 市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법과 조례의 괴리 해소하고, 불법적 상황 해소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질서 확립에 기여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임차권리의 양도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체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인바,
- 일반 시민들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내용이며,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를 위반하여 조례로 임차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법령과 조

례의 일치를 통해 시민의 혼선을 줄이고 위법적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 타당성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60호**

서울특별시 상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정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브랜드 위원회의 전문성 및 위상강화

나. 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명으로 함

나. 당연직 위원에 기존 홍보·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외에 정무부시장을 추가함

다. 정례회의를 기존 격월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브랜드담당관(전화 : 02)2133-6194, FAX : 02)2133-0862 E-mail : lej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67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9조)

나.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5조)

다. 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관광정책과(전화: 02)2133-2810, FAX: 02)2133-1067, E-mail : ljkcr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저지대 침수예방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공원 및 도로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동작구 동작동 333-3일대	-	증) 936	936		공원 및 도로 중복결정(지하)

나.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유수지	- 유수지 : 936㎡ - 중복결정 : 공원(751㎡), 도로(185㎡)	저지대 침수예방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공원 및 도로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다.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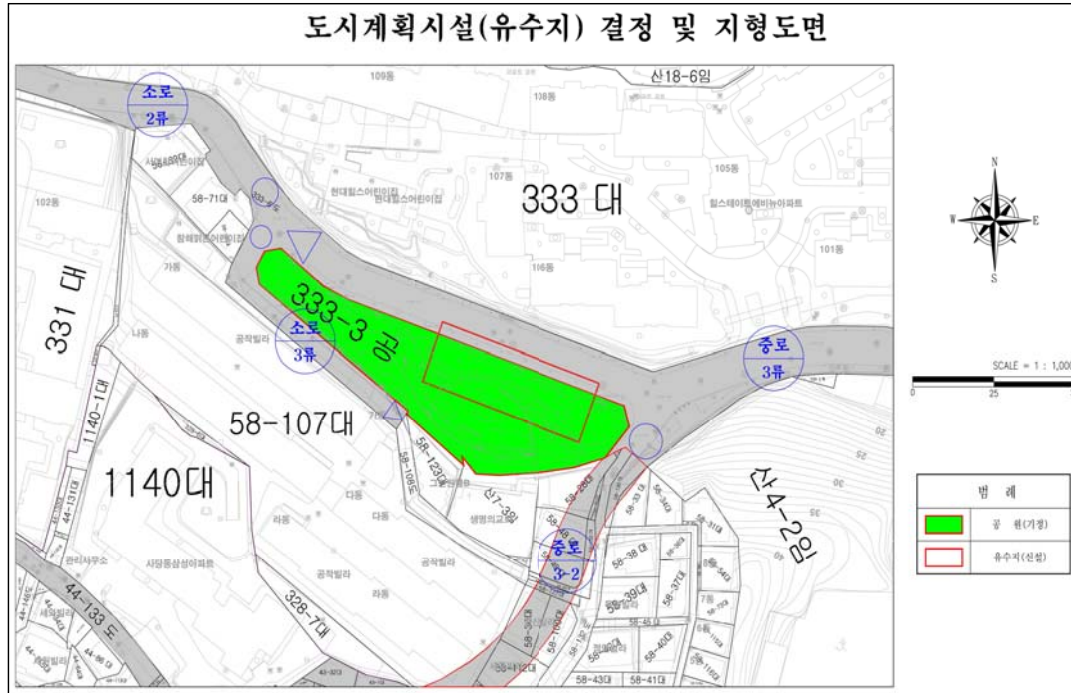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 820-9559)에 각각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호(2017.1.19.)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 좌동 일대	1,079,005.19	감)68.00	1,078,937.19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지적경계측량(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에 의한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 기준연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 친화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1) 주택건설용지 : 767,559.49㎡
- (2) 상업업무용지 : 98,600.00㎡
- (3) 공공시설용지 : 212,777.7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9,055.19	감)68.00	1,078,937.19	100.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택 건설용지	소 계	767,605.49	감)46.00	767,559.49	71.2	
	단독주택	12,601.00	—	12,601.00	1.2	
	공동주택	687,147.99	감)46.00	687,101.99	63.7	•가재울8구역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근린생활	67,856.50	—	67,856.50	6.3	
상업 업무용지	소 계	98,600.00	—	98,600.00	9.1	
	상업업무복합	98,600.00	—	98,600.00	9.1	
공공 시설용지	소 계	212,799.70	감)22.00	212,777.70	19.7	
	도 로	104,781.60	감)22.00	104,759.60	9.7	•가재울8구역내 도로 변경
	공공청사	3,009.10	—	3,009.10	0.3	
	공원녹지	64,628.50	—	64,628.50	6.0	
	학 교	33,249.60	—	33,249.60	3.1	
	도 서 관	3,486.80	—	3,486.80	0.3	
	사회복지	2,200.00	—	2,200.00	0.2	
	공공공지	1,444.10	—	1,444.10	0.1	
	폐기물처리시설	(5,108.50)	—	(5,108.50)	(0.5)	

※ () 부분은 근린공원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 46,705인/19,556세대 (변경)

구 분	면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기정	변경				
총 계	1,079,005.19	1,078,937.19	46,705	19,556	16,368	3,188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892	362	272	9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1,138	473	373	100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871	3,293	2,664	629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284,637.50		10,277	4,300	3,550	75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2,383	997	827	170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48,084.40		2,419	1,047	869	17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3,240	1,350	1,080	270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13,248.00	13,180.00	654	283	237	46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58,318.00		3,099	1,287	1,287	—
존 치	254,601.00		14,732	6,164	5,209	955

3) 교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389.6	-	43,389.6	
교육 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33,249.6	-	33,249.6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	-	7,438.0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066.9	-	11,066.9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	-	7,256.1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	-	7,488.6	
문화· 체육 시설등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10,140.0	-	10,140.0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	-	1,004.7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4.8	-	934.8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69.6	-	1,069.6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	-	3,486.8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	-	1,601.0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10 일원	599.0	-	599.0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	-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 공시설 (기부 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 (전용면적+공용면적)
	공공공지	공공공지	남가좌동 378 일원	1,444.1	-	1,444.1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628.50	-	64,628.50	
생활권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51,314.70	-	51,314.7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65.70	-	15,465.7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	10,500.3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생활권 공원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508.00	—	9,508.0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	5,240.0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766.30	—	1,766.3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06.10	—	1,006.10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13,313.80	—	13,313.80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	4,480.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292.50	—	1,292.5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1.60	—	411.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42.00	—	1,142.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	1,318.3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	1,221.9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	681.4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74.00	—	374.0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36.50	—	936.5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7-4 일원	1,455.00	—	1,455.00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대	북가좌동 82-1대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가감속 차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③-8장,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766,086.19	766,018.19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4,637.5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변경	도시환경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13,180.00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사업방식			합 계		766,086.19	766,018.19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4,637.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민간(조합) 시행	
변경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13,180.00	민간(조합) 시행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1)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9,005.19	감) 68.00	1,078,937.19	100.0	
주거지역	소 계	1,052,565.19	감) 68.00	1,052,497.1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432.20	-	141,432.20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896.34	-	406,896.3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0,332.25	-	440,332.25	40.8	
	준주거지역	42,465.40	감) 68.00	42,397.40	3.9	
상업지역	소 계	26,440.00	-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변경)

- ①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②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③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④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⑤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⑥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⑦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⑧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248.00	감) 68.00	13,180.00	100.0	
준주거지역	13,248.00	감) 68.00	13,180.00	100.0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없음)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35층이하	105.8이하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7층이하 / 33층이하	102이하
기정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5	50	- / 26층이하	80이하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300 (허용 340)	400	60	- / 27층이하	85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1)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가재울1재정비 촉진구역	19,782.09	5,043.90	-	-	-	5,043.90 (25.50)	
가재울2재정비 촉진구역	26,116.50	5,373.20	-	-	-	5,373.20 (20.57)	
가재울3재정비 촉진구역	242,710.00	74,800.30	23,172.10	14,469.40	-	37,158.80 (15.31)	
가재울4재정비 촉진구역	284,637.50	73,468.90	-	-	-	73,468.90 (25.81)	
가재울5재정비 촉진구역	52,867.70	10,902.50	2,336.60	1,562.90	599.00	6,404.00 (12.11)	
가재울6재정비 촉진구역	48,084.40	9,994.90	1,062.00	870.00	-	8,062.90 (16.77)	
가재울7재정비 촉진구역	78,640.00	21,026.00	3,172.00	5,963.00	-	11,891.00 (15.12)	
가재울8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3,248.00	3,378.00	1,857.80	-	-	1,520.20 (11.47)	
	변경 13,180.00	3,356.00	1,852.00			1,504.00 (11.41)	
총 계	기정 766,086.19	203,987.70	31,600.50	22,865.30	599.00	148,922.90 (19.44)	
	변경 766,018.19	203,965.70	31,594.70			148,906.70 (19.44)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65.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842.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1	1,00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2	18,504.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공지	3	1,444.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③-15장, 임대주택 건설)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구분		구역수	대상지역	비고
기정	1단계 (2004 ~ 2008년)	2개	가재울 1, 2촉진구역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기정	2단계 (2007 ~ 2015년)	3개	가재울 4, 5, 6촉진구역	
기정	3단계 (2010 ~ 2019년 이후)	2개	가재울 7,8촉진구역	자율정비구역 및 존치지역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③-18장,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9장, 폐기물처리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가.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나.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다.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라.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마.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바.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사.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	감) 68.0	13,18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 (2014.12.18.)

※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248.0	감) 68.0	13,180.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3,378.0	감) 22.0	3,356.0	25.5	-
	도 로	3,378.0	감) 22.0	3,356.0	25.5	가감속 차로 선형 변경
획 지	소 계	9,870.0	감) 46.0	9,824.0	74.5	-
	획 지 1	9,870.0	감) 46.0	9,824.0	74.5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248.00	감) 68.00	13,180.00	100.0	
준주거지역	13,248.00	감) 68.00	13,180.00	100.0	

※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31)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 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147)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128)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가감속 차로 선형 변경

※ () 부분의 연장은 가재울8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사회복지 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서고시2014-435호 (2007.12.18)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 확보 (전용면적+공용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사회복지 시설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지상 1-2층	- 서고시2014-435호 (2007.12.18)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 확보 (전용면적+공용면적)

※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부채납 대상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규모 이상으로 계획

시 설 명	기 준	법적기준	비 고
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884.38㎡ 이상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재울8	13,248.0	획지1	9,870.0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40	-	-	40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13,180.0		9,824.0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	
	명칭	면적(㎡)									
기정	가재울8 재정비	13,248.0	획지1	남가좌동 289-54번지일대	9,870.0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60 이하	400 이하	85m이하 (27층이하)	58,813	
변경	촉진구역	13,180.0			9,824.0					58,280	
주택의 규모 및 규모의 건설비율			•총건설세대 : 283세대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계		분양			임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83		237		46	100.00	
			85㎡이하	40㎡미만		-		-		-	-
				40~50㎡		-		-		-	-
				50~60㎡		120	166	74	120	46	58.66
				60~85㎡이하		163	117	163	117	-	41.34
			85㎡초과		-		-		-	-	
※ 주거비율은 70%(오피스텔 포함시 80%)이하로 확보하되, 비주거시설비율(오피스텔 10% 설치시)은 20% 이상확보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자의 연속성을 위하여 획지내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 폭6m(도면참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2m : 중로1-2, 중로3-2,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1호선변							
			벽면한계선	•저층부 벽면한계선 3m (2층이하) : 중로3-1호선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6m (6층이상) : 중로1-2 , 중로3-1, 중로3-2, 소로1-1호선변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 기존세대수 : 339세대 • 계획세대수 : 283세대 • 증가세대수 : 감) 56세대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가재울 8구역내	-	-	-	40㎡이하	-
			-	40~50㎡이하	-
			46세대 (16.25%)	50~60㎡이하	-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 · 북가좌동 일대	1,079,005.19	감) 68.00	1,078,937.19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9,005.19	감) 68.00	1,078,937.19	100.0	
주거지역	소 계	1,052,565.19	감) 68.00	1,052,497.1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432.20	-	141,432.20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896.34	-	406,896.3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0,332.25	-	440,332.25	40.8	
	준주거지역	42,465.40	감) 68.00	42,397.40	3.9	
상업지역	소 계	26,440.00	-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미관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54,900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104, 105번지 일대	58,318.0	서고제1997-25호 (1997.2.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 연장 : 444m	성산동2-20~흥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65.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842.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1	1,00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2	18,504.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공지	3	1,444.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1)교통시설 (변경 없음)

가)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대	북가좌동 82-1대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가감속 차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2) 공간시설 (변경 없음)

가)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65.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106.9㎡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부결정 5,106.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2,987.8㎡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854.7㎡ 존치구역(삼성APT기부체납) : 1,543.8㎡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508.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766.3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06.1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292.5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1.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42.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존치구역 : 1,318.3㎡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74.0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308㎡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66㎡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36.5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7-4 일원	1,455.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 378 일원	1,088.4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2	남가좌동 378 일원	330.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	남가좌동 116-4 일원	25.7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066.9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4.8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69.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복지시설	-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0	동방사회복지회
기정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6 일원	599.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전용면적+공용면적)

(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108.5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근린공원 지하에 중복결정

5. 변경사유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서울시 건축·교통 심의에 따른 변경
 - 건축배치 및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선형
 - 소로1-1호선 가감속차로 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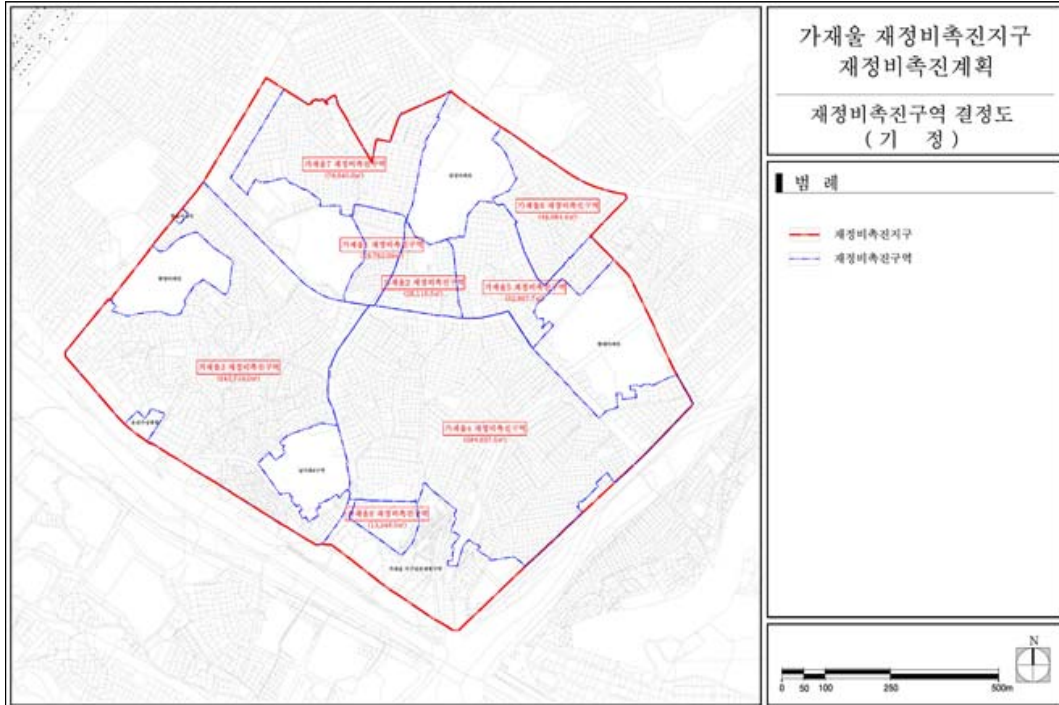
6. 관계도면 : 붙임참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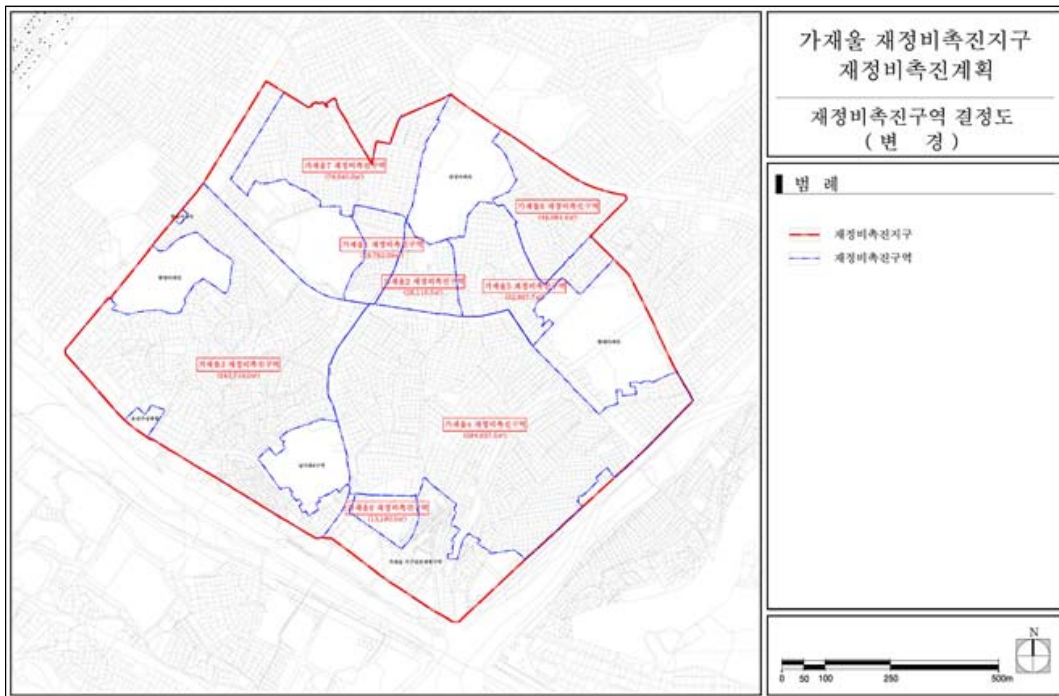
7. 관계도서 열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7)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30-1633)에 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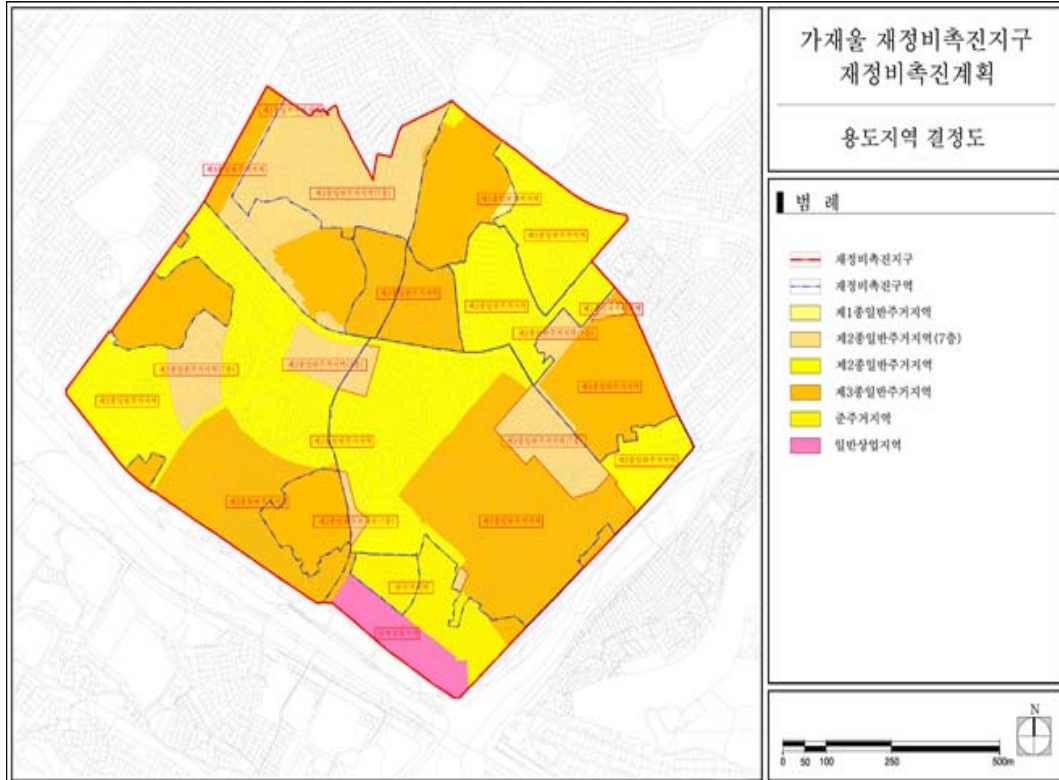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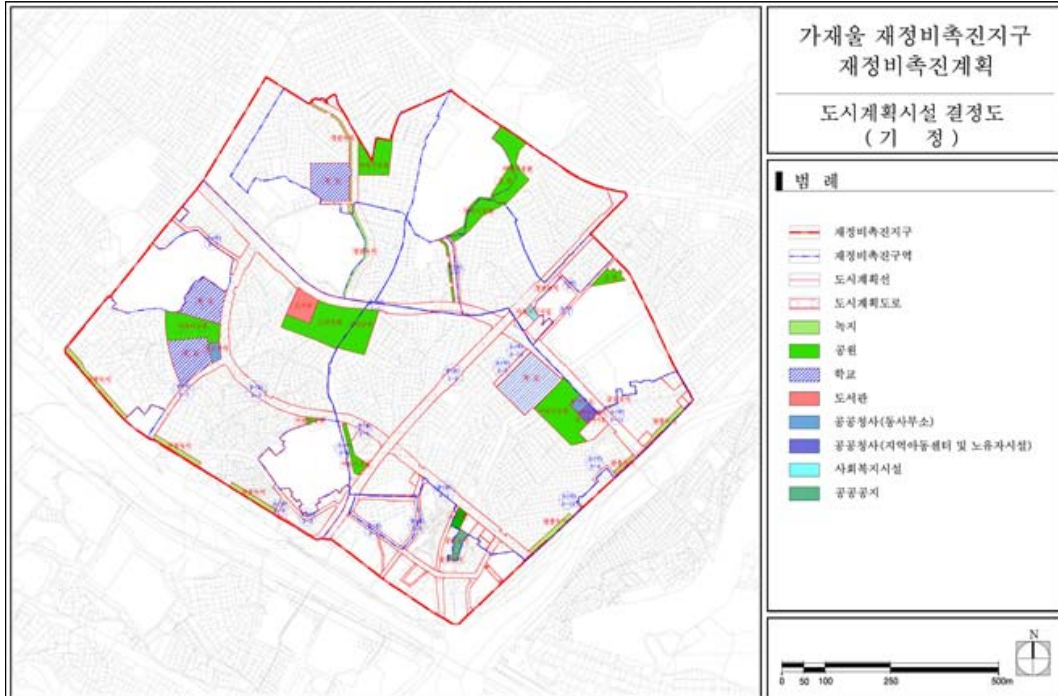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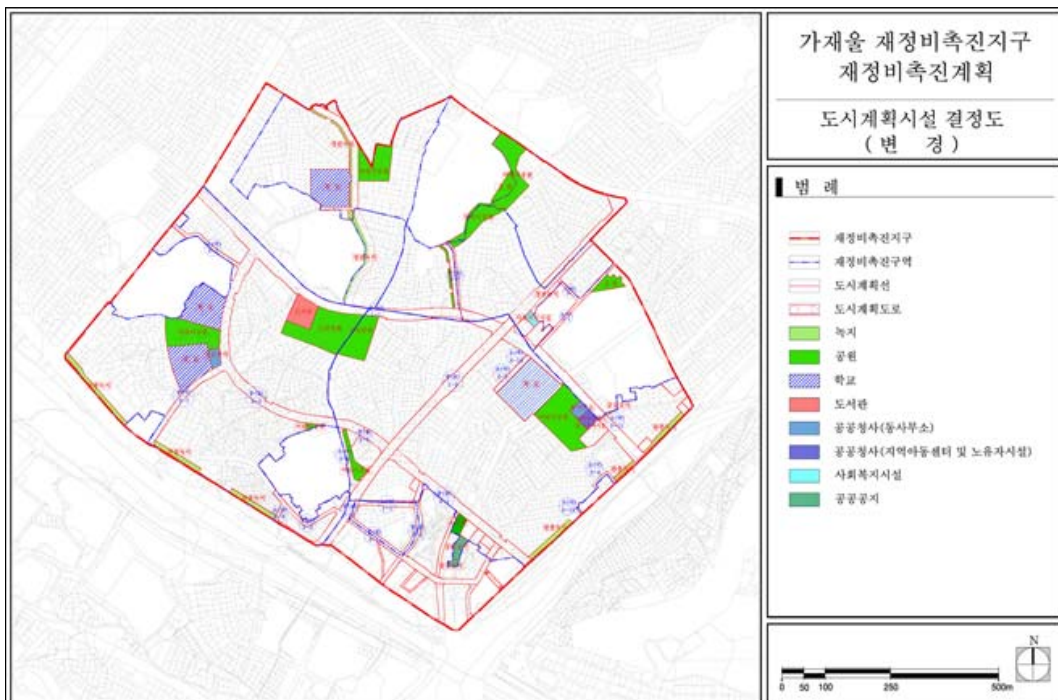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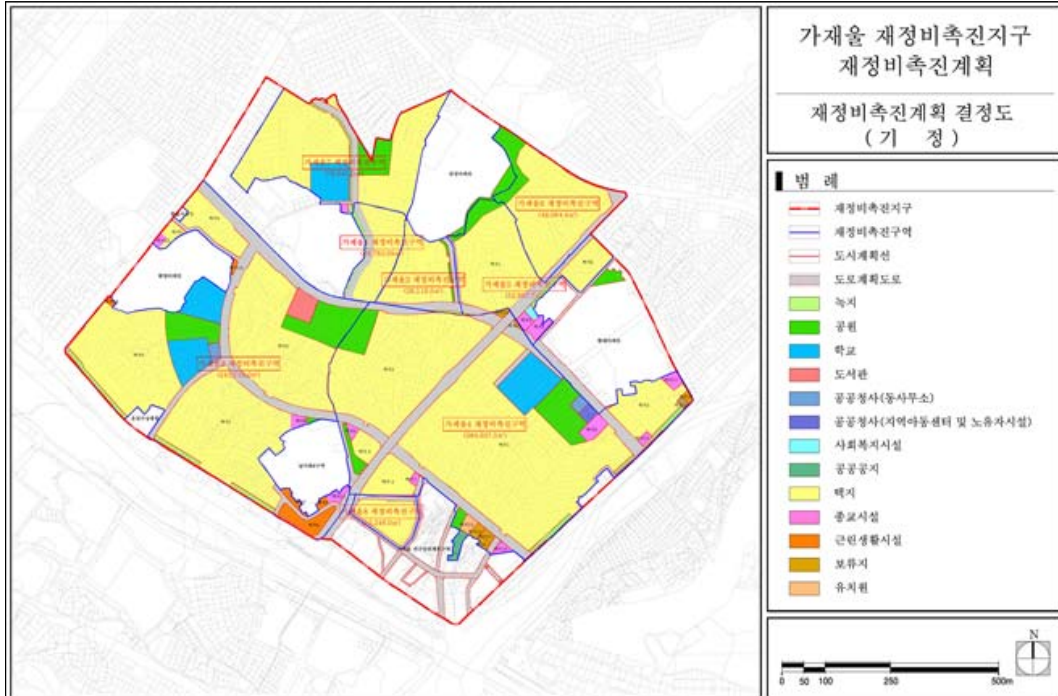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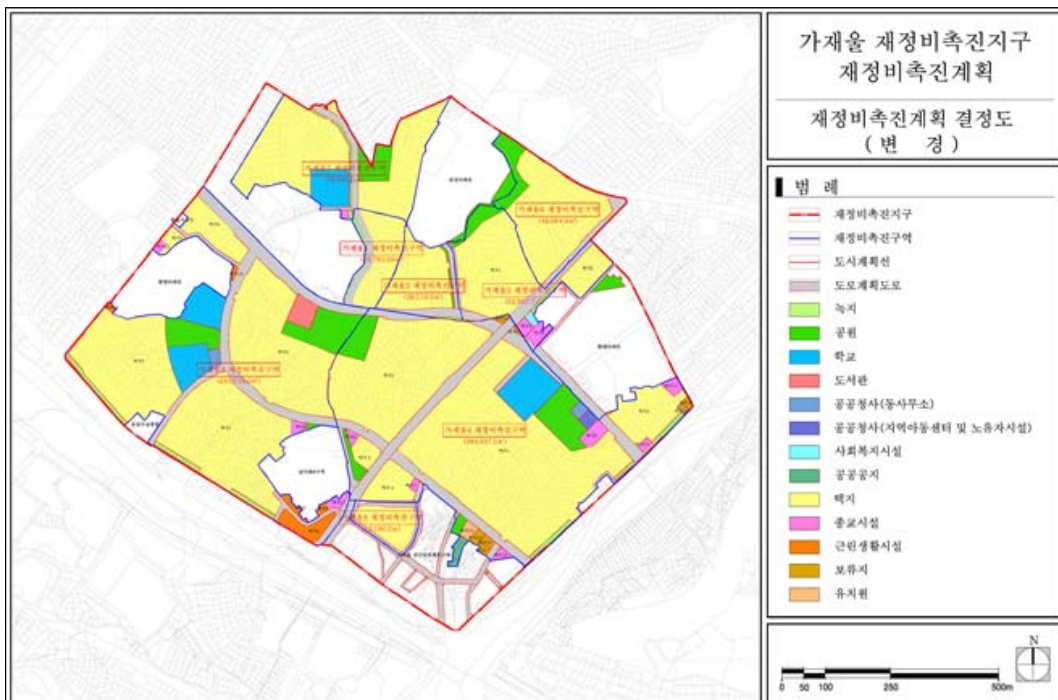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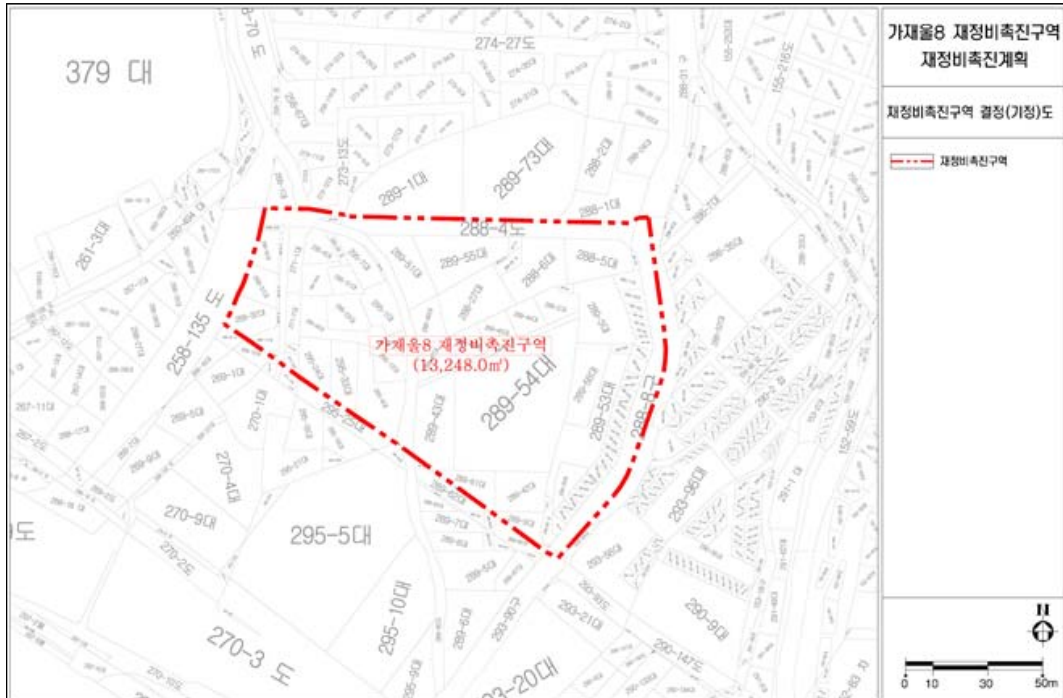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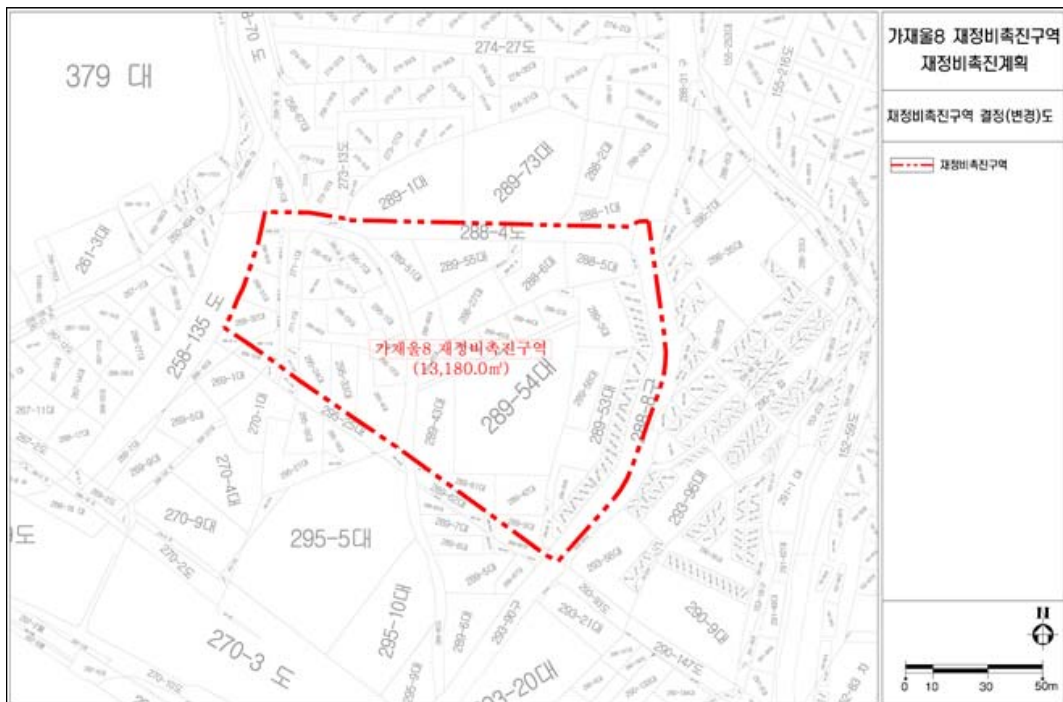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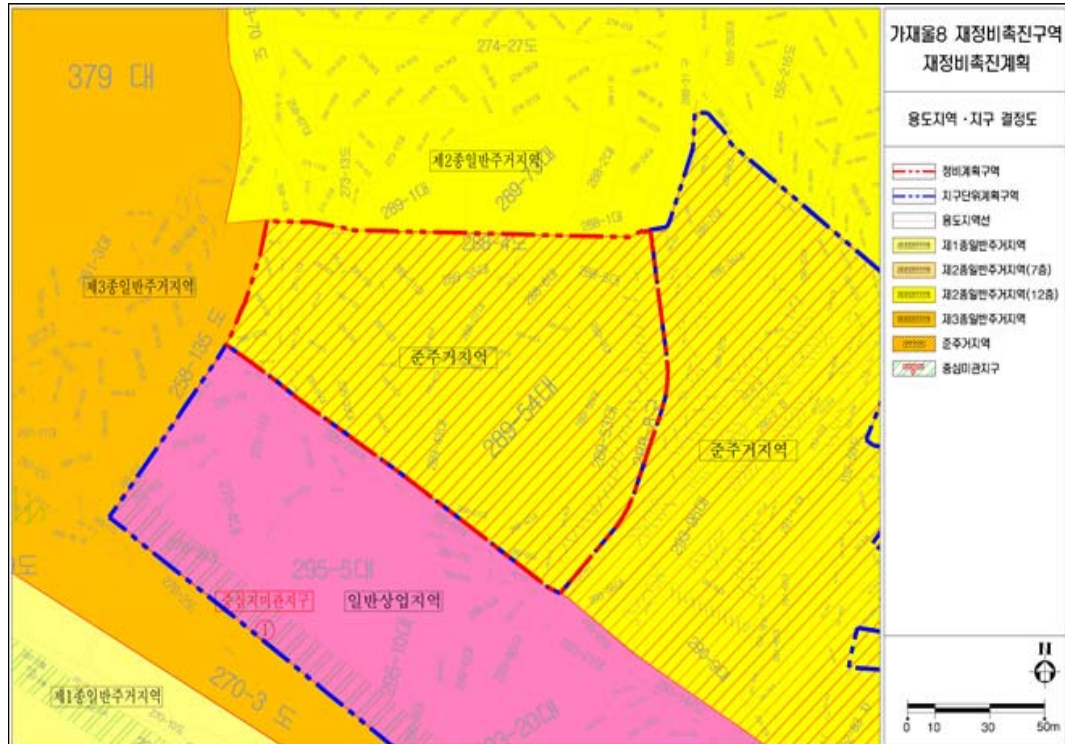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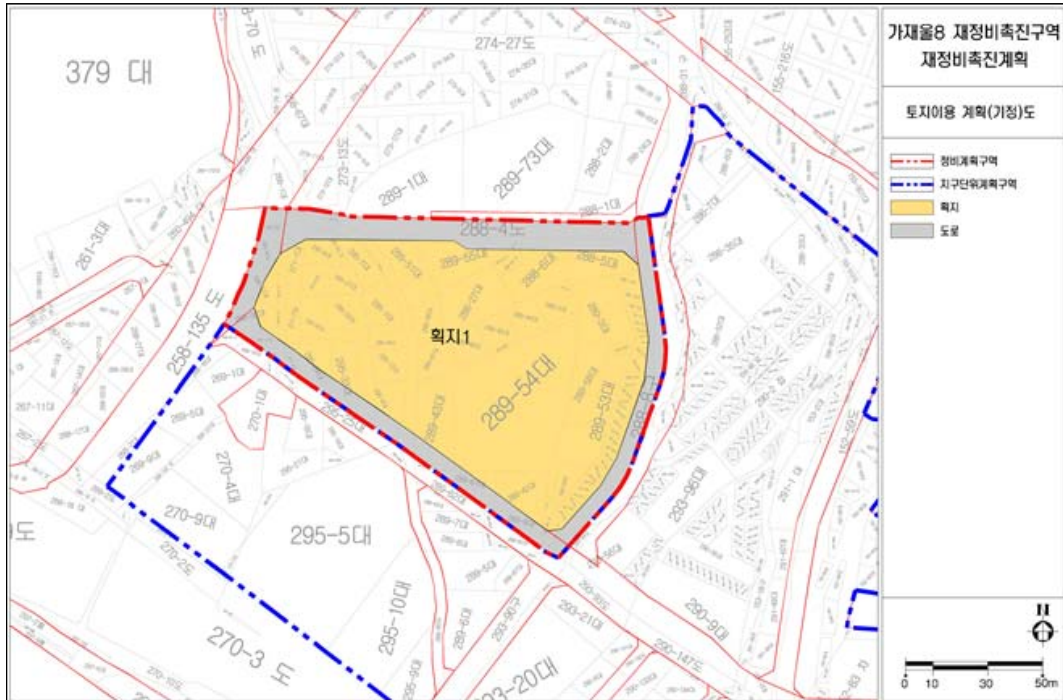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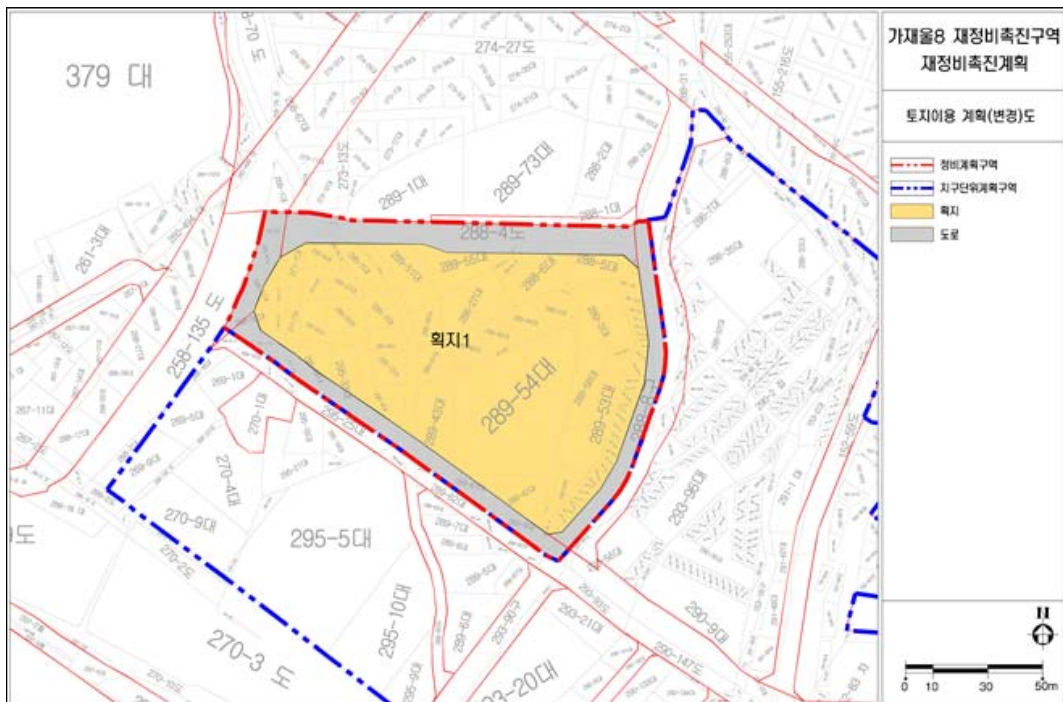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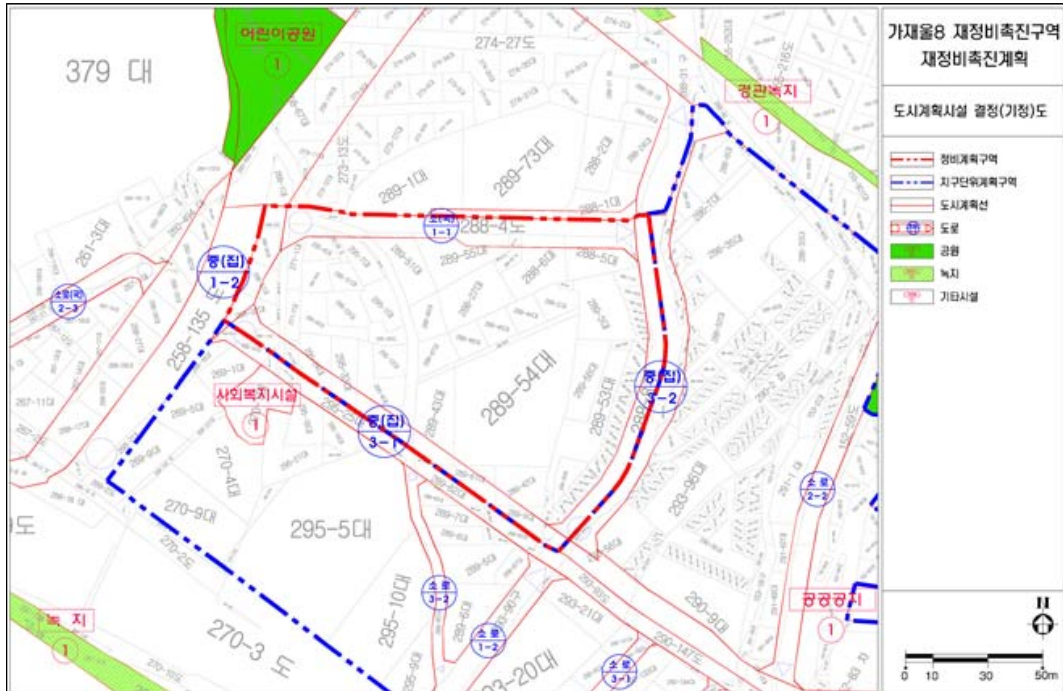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5호	흥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興天寺 極樂寶殿 極樂九品圖)	1점	152 × 229	1885년 경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흥천사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6호	흥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興天寺 極樂寶殿 道場神圖)	1점	109.5 × 112	1885년 경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興天寺 極樂寶殿 神衆圖)	1점	155.2 × 225.2	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8호	흥천사 천룡도 (興天寺 天龍圖)	1점	109.5 × 112	189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9호	흥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興天寺 萬歲樓 阿彌陀佛會圖)	1점	174 × 271	1890년 경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흥천사 만세루 신중도 (興天寺 萬歲樓 神衆圖)	1점	205 × 203	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1호	흥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興天寺 萬歲樓 帝釋天圖)	1점	201 × 203	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2호	흥천사 도량장엄번 (興天寺 道場裝嚴幡)	16점	일괄 127 × 69	1898년 경 (19세기 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3호	흥천사 목조여래좌상 (興天寺 木造如來坐像)	1점	높이 56.3 무릎 폭 38 어깨 폭 27	조선 (16~17세기 초)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4호	흥천사 목조보살좌상 (興天寺 木造菩薩坐像)	1점	높이 101.5 무릎 폭 65.5	16세기 말 ~17세기 초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흥천사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5호	흥천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興天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27점	아래 참조	17세기 후반	
415-1호	석조지장보살좌상 (石造地藏菩薩坐像)	1구	높이 84.5 무릎 폭6		
415-2호	석조무독귀왕상 (石造無毒鬼王像)	1구	높이 81.5 어깨 폭 28.5		
415-3호	석조도명존자상 (石造道明尊者像)	1구	높이 74 어깨 폭6		
415-4호	시왕상(十王像)	10구	높이 87.0~93.2 무릎 폭 35~44		
415-5호	귀왕상(鬼王像)	2구	높이 67.5~77 어깨 폭 24~25		
415-6호	판관상(判官像)	2구	높이 72~76.5 어깨 폭 24~25		
415-7호	사자상(使者像)	2구	높이 93.5~98 어깨 폭 27~28		
415-8호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2구	높이 135~138 최대폭 37~43		
415-9호	동자상(童子像)	6구	높이 37.5~56 어깨 폭13~17.5		

<지정 사유>

■ 흥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 우측에 봉안된 이 극락구품도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의 극락구품도는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흥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당시 저명한 화승인 대허체훈(大虛體訓), 혜산축연(惠山竺衍), 학허석운(鶴虛)

石雲) 등이 참여한 뛰어난 작품이며, 특히 고양 홍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와 유사한 작품으로 비교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홍천사 소장의 왕실발원 신중도(1885)의 제작한 참여한 화승이 이 극락구품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극락구품도 역시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경기 지역의 극락구품도와 비교되는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바이다.

■ 홍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도량신도로서 도량신은 <화엄경> 약찬계에 등 장하는 화엄신중의 하나이며 도량의 더러움을 없애는 신이다.

도량신을 단독탱화로 조성·봉안한 매우 드문 예로, 홍천사의 도량신도는 단독탱화로 조성된 도량신도의 대표적 작품으로 19세기 말 도량신 신앙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며, 서울·경기지역의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했던 대(대)허당 체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885년 조성된 극락보전 신중도와 증명비구, 화승, 시주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885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화재의 가치가 인정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군도형식의 신중도로서,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 등 천부세계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위태전을 중심으로 천룡부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있는 화기 내용으로 보아, 광서 11년인 1885년 대허체훈(大虛體訓)이 책임화승을 맡고 보조화승으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활약했던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 중 한명인 비구 공법(比丘肯法)에 의해 조성된 왕실발원 불화로 짐작된다. 참여 화승들이 만세루에 봉안된 1890년 작 신중도 제작에도 동참하였으며 두 신중도가 공간배치 및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두 불화의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천사 천룡도

홍천사 천룡도는 위태천과 천룡팔부를 함께 그린 것으로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화면 중앙에 위태천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천녀와 일월천자, 여러 신중들이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인물표현에 음영법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고, 일부 화려한 금박이 사용되어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특색을 보여준다. 화기에 의하면 1898년 용담(蓉潭)이 초본을 그렸다.

신중도 중 천룡도 형식은 예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의 천룡도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홍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만세루에 봉안된 아미타불회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 십대제자, 사천왕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공들이 시주한 왕실발원 불화로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불화는 수화승 공조(巨照)를 비롯하여 만파정익(萬波定翼), 혜산축연(慧山竺衍), 보암공법(普庵肯法) 등 주로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화승들이 조성하였다. 조성연대는 기록되

어 있지 않으나, 1890년 제작된 만세루의 신중도에 수화승 공조 등이 참여한 바, 만세루 신중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명한 화승인 공조가 수화승으로 참여한 왕실발원의 불화로써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홍천사 만세루 신중도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 등 천부세계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천룡부를 표현하였다. 극락보전에 봉안된 1885년 조성의 신중도와 채색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 신중도의 구성에 참여한 화승(碧瀾圖 圀, 比丘肯圖)이 극락보전 신중도 구성에도 참여한 사실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화면 하단의 화기 내용으로 보아 광서 16년인 1890년 공조(巨照)가 수화승을 맡았다. 화기에 의해 조성연대, 봉안사찰, 조성화승이 명확하며, 동참화승의 기록을 통해 극락보전 신중도와의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의 신중도 도상 비교 등을 위한 자료적 가치가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바이다.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제석천을 중심으로 천부세계를 표현한 비교적 간단한 구성의 신중도로, 화면 중앙에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천부중과 여신 등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하단 중앙에 화기가 있으며, 조성연대, 봉안처, 화승, 시주자 등을 기록하였다. 광서 16년인 1890년 도편수 ‘공조(巨照)’가 책임화승을 맡고 ‘정익’과 ‘성전’이 참여하였다.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조성화원 등이 명확하며, 19세기 후반 한성부와 경기도 지역의 제석천 중심의 신중도 도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바이다.

■ 홍천사 도량장엄번

도량장엄용 의식불화인 오여래도 5점, 사보살도 4점, 팔금강도 7점(8점 중 1점 결실) 등 총 16점이다.

화기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지만, 얼굴의 형태와 채색, 문양 등에서 1898년 조성된 홍천사 극락보전 천룡도의 양식과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영법을 사용하는 등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양식을 보여주며, 19세기 말 홍천사의 불교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홍천사에 전해오는 목조여래좌상으로 크기로 보아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의 홍천사 목록에 보이는 1척 8촌의 아미타불상으로 생각된다.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신체 비례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며, 앉은 자세와 신체 비례, 세부 표현 등에서 1606년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 1719호), 동학사 아미타불상, 석가여래좌상 등과 비견된다. 조성연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양식적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 홍천사 목조보살좌상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조선후기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보살상보다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은 편이며,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은데, 조선전기 유행한 신체비례를 보여준다. 양식적 특징과 복장물로 발견된 묘법연화경이 16세기 간행된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크기로 보아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에 기록된 대세지보살상(3척 7촌)으로 생각된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보존 상태도 완전하고, 양식상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바이다.

■ 홍천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명부전에 봉안된 총 27구의 불상으로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협시로 한 지장삼존상, 시왕상 10구, 귀왕상 2구, 사자상 2구, 판관상 2구, 금강역사상 2구, 동자상 6구이다.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석재로 조성되었고, 사자상과 금강역사상은 흙으로 조성되었다.

홍천사 명부전의 불상들은 조성발원문이 없어서 조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승호와 그 계보가 만든 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여 17세기 후반 영남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에 홍천사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홍천사 명부전 불상은 보존 상태도 완전하고, 17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 우측에 봉안된 이 極樂九品圖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이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홍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첫째, 이 佛畵를 상·중·하의 3段으로 구분한다면 상단의 중앙 <靈山會> 左, 右는 奏樂天人과 菩薩衆 및 比丘衆이 묘사된 것이다. 즉 설법을 찬탄하는 장면인것 같다. 中段에는 <須摩提>, 즉 극락전을 중심으로 구품연못이 나타나있다. <영산회> 장면만 제외하고 왕생자가 있던 없던 8장면에 모두 연못이 묘사되어있다.

둘째, 각 요소들은 앞 시대의 觀經圖(극락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모했는데, 극락의 환상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관경에 없는 요소들(사자, 사슴, 코끼리, 탑, 대나무숲, 마름모꼴로 형성된 극락땅이 아닌 현실의 정원에 세워진 듯한 기암괴석과 나무, 세 개의 아치형의 문이 연속된 건물 등)은 낮설게 나타난다.

셋째, 士大夫 모습으로 왕성한 왕생자가 표현된 하단 중앙부를 上品觀(14관)이라 한다면 菩薩衆이 왕생자를 맞는 장면은 下品觀(16관), 佛이 왕생자를 맞는 장면은 중품관(15관)이라고 하겠다. 보통 菩薩衆은 上品, 승려衆은 중품, 俗人衆은 하품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14-16관 모두 俗人衆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전각 안에 아미타삼존불이 묘사되지만 전각은 비어있다. 불·보살상들은 모두 구름을 타고 마치 왕생자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內院庵 관경도(1853, 木版本)의 불, 보살상이 연못의 왕생자를 맞거나 上段의 불·보살상이 또 반복되어 마치 왕생자를 극락으로 데려오는듯 두 번 반복되었는데, 상단의 구름을 탄 불·보살상이 홍천사 극락구품도에 나타난 것 같다.

화면 좌우 모서리의 붉은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난은 연화질과 시주질로 나뉘어져있으나 제작年代가 없다. 그러나 같은 法堂인 극락전에 奉安된 神衆幀의 畵記를 보면, 1885년에 甘露 등 4軸을 金魚片手인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이 상궁들의 시주로 조성했다고 적혀있는 바 시주자의 명단(홍씨, 심씨)만 다를 뿐,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 화승들의 이름이 이 불화의 畵記에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85년에 신중탱과 함께 제작된 것 같다.

이 極樂九品圖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이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홍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1885년 당시 저명한 화승인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이 참여한 뛰어난 작품인 바, 특히 고양 홍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와 유사한 작품으로 비교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극락구품도와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왕실발원의 신중탱(1885)의 화승이 참여한 이 극락구품도 역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

<좌>

緣化秩」證明 幻翁□眞」誦呪 沖虛基教」持殿 暎曇普潤」金魚片手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性典 玩悟 得訥」供司 雲成」鐘頭 義千 現珠」

<우>

施主秩」大施主」乾命癸酉生洪氏」青信甲午生沈氏大悲華」化主 虛□寶泉」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도량을 장엄하고 三寶의 도량을 지키는 신장을 그린 道場神圖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도량신은 <華嚴經> 略纂偈에 등장하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로 도량의 더러움을 없애는 신으로, <華嚴經> 世主妙嚴品 1에서는 부처세계의 티끌 수 같은 道場神, 즉 淨莊嚴幢道場神, 須彌寶光道場神, 雷音幢相道場神, 雨華妙眼道場神, 華纓光계道場神, 雨寶莊嚴道場神, 勇猛香眼道場神, 金剛彩雲道場神, 蓮華光明道場神, 妙光照曜道場神 등의 10 도량신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願力을 성취하여 공양을 널리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량신은 화면 상단의 三曲屏처럼 각이 진 흰색을 배경으로 하여 정면을 향해 앉아있다. 도량신의 뒤쪽 좌우에는 傘蓋와 幢幡을 든 동자가 배치되었으며, 정면 좌우에는 두 명의 신장이 칼과 圓形의 지물을 들고 중앙을 향해 서있다. 도량신은 團領의 붉은 관복에 가슴과 허리에는 각각 角帶를 차고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데, 세필로 얼굴의 입체감과 수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라든지 눈과 눈썹을 과장되게 치켜세운 모습, 가슴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더부룩한 수염, 團領의 관복 좌우 어깨에 문양이 새겨진 모습, 정면을 응시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그린 關聖帝君圖를 연상케 한다. 붉은 색의 의복에는 주름을 표현한 먹선을 따라 바림질로 채색하고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향우측의 신장은 仰髮의 鬼卒모습으로 이마에 검은 띠를 둘렀고, 오른손은 허리춤에 대고 왼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둥근 지물을 들고 맨발로 서있다. 향좌측의 신장 역시 양발의 귀족모습으로 머리에는 청색의 두건을 쓰고 두 다리를 약간 벌린 채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당당하게 서있다. 도량신의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인 안면묘사는 좌우 신장의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불화는 大虛와 鶴虛 등 두 명의 화승이 조성하였다. 수화승인 대허는 19세기 중·후반에 경상도와 서울 경기 일대에서 활동하던 大虛堂(또는 太虛堂) 體訓(體訓, 體訓)으로, 그는 특별한 사승관계 없이 당대 이름난 여러 화승들과 여러 화승들과 교유하며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였으며, 1870년대 이후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885년에는 竺演과 함께 홍천사 극락보전의 <極樂九品圖>를 제작하기도 했다. 화면에 촛농과 얼룩으로 인한 손상이 보이며, 특히 화기의 아랫부분은 검게 변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불화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인 도량신을 그린 것으로 전해오는 작품이다. 도량신은 보통 104위신중도나 39위신중도에 華嚴神衆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독탱화로 조성 봉안되는 경우는 드문데, 홍천사 도량신도는 단독탱화로 조성된 도량신도의 대표적 작품으로 19세기 말 도량신 신앙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다. 양식적으로는 전통회화의 초상화 기법을 사용한 얼굴묘사가 돋보이며, 서울 경기지역의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했던 대(대)허당 채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비록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1885년에 조성된 尙宮發願의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와 證明比丘 및 畫僧, 化主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885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화기]

緣化秩」證明 幻翁□□」金魚 大虛」鶴虛」化主 應明」化主 靈□」願以此功□」普及□□□」
我等與□」當生極□□」同見無□□」皆供成□□」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帝釋天 및 梵天和 韋馱天을 중심으로 주위로 많은 권속들이 배치된 군도 형식의 신중도(帝釋梵天天龍圖)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촛농 등 오염이 보이고 안료의 산화와 박락이 심한 편이다. 위태천 투구 및 권속들의 구슬장식과 天龍部 상들의 무기와 관모, 지물, 天童·天女의 지물 등에 부분적으로 高粉法이 사용되었다. 畵記는 화면 하단에 횡으로 길게 마련되어 있는데 하단부가 검게 변하여 일부 판독이 불가하며, 중간부가 찢어져 훼손되어 있다.

가로로 길어진 크기의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을 위시한 天部世界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각종 武器로 무장한 天龍部를 나타내었다.

둥근 머리 광배와 장방형 몸 광배를 구비한 상단부 왼쪽(向右側) 위치의 제석천은 궁중복식 모양의 법의를 착용한 채 두 손으로는 흰색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있으며, 제석천과 대칭하여 위치한 범천 또한 제석천과 거의 유사한 모습에 백색 모란화 가지를 들고 있다. 제석·범천 주위로 중앙을 향해 두 손을 모아 笏을 들고 있는 日·月大臣 및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를 비롯하여 중앙 쪽에는 향로와 과일을 받쳐 든 천녀를 비롯하여 생황·피리·현악기 등을 연주하는 주악 동남·동녀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제석·범천 좌우 바깥쪽으로는 傘蓋와 幢幡 및 幢과 扇을 든 천녀 등이 뽁뽁하게 배치되어 있다. 맨 위쪽 상단에는 하늘 공간을 표현하였다.

턱이 둥글어진 모양의 얼굴을 한 제석천과 범천을 위시하여 천녀, 동남·동녀 등의 경우 정교한 세필을 사용하여 상호를 표현하고 피부색을 밝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아름다운 느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단부를 보면 깃털 모양의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쓴 무장 모습의 위태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천룡부 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배를 약간 내민 채 몸을 틀고 서서 두 손으로 삼지창을 쥐고 있어 천룡부 수장으로서의 위엄이 엿보인다.

위태천 좌우로는 탕건을 쓰고 깃털부채를 든 상(山神으로 불림)과 어깨에 책을 걸쳐 든 상(龍王神으로 불림), 갑옷을 입고 靑龍偃月刀와 죽절형 武器 및 검 등으로 무장한 천룡부 신중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위태천 좌측(향우측) 위쪽으로 붉고 푸른 머리칼에 입을 벌린 채 이를 드러내고 눈을 부라린 근육질형 상이 보이는데, 예적금강 같은 모습을 하였다. 한편 천룡부의 상들은 대개 상단 천부계의 상들과는 다르게 피부 빛깔이 갈색조를 띠고 부라린 눈에 턱수염과 구레나룻이 덩수룩하며 갑옷에 무장을 하여 천룡계 상답게 강인한 느낌이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이 주조색을 이루는 가운데 하늘색 계열의 밝은 청색이 사용되었으며, 위태천의 투구 및 갑옷과 삼지창, 검과 각종 기물 등에 고분법을 적용하고 금(색)을 올려 탁해진 적색과 짙고 어두운 암록색의 화면에 경쾌함을 불어 넣어준다.

그럼 하단부에 남아 있는 화기 중의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신중도는 光緒 11年인 1885년 ‘大虛體圖’이 책임화승을 맡고 ‘碧瀾園, 比丘肯因, 比丘妙□’ 등이 보조화승으로 동참하여 조성되었으며 감로왕도 등과 함께 네 폭을 그려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표 시주자로 상궁 김씨와 상궁 홍씨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황제와 명성왕후 민씨,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 등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왕실발원 불화로 짐작된다.

이 신중도의 경우 홍천사 만세루에 봉안되어 있는 1890년 작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와 색채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공간배치 및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극락보

전 신중도 조성 시의 참여화승 가운데 ‘碧瀾圖圓, 比丘肯圖’ 이 만세루 신중도 조성 시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으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는 관독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조성연대 와 조성화승 파악이 가능함은 물론, 왕실발원 불화로서 1890년 조성의 홍천사 만세루 소재 신중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동참화승 ‘肯圖’ 의 경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활약하였던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홍천사 극락보전 봉안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기]

‘光緒十一年乙酉五月初五日極圓畫成神衆幀圓幀甘露圖四軸點圓二十三日晚主上殿下卽卹李氏玉體圓聖壽萬國 王妃殿下圓閔氏玉體圓聖壽齊年 世子邸卹卹李氏寶體圓聖壽千國 嬪宮邸卹圓閔氏貴圓聖壽長圓…金魚 片圓 大虛體圓 碧瀾圖圓 比丘肯圖 比丘妙圓…施主圓 尙宮淸圓圓亥生金因圓體 尙宮圓戌生洪氏圓月保體…’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천룡도

이 불화는 神衆圖 형식의 하나로 韋馱天과 天龍八部를 함께 그린 천룡도로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천룡팔부는 보통 불법을 수호하는 八部衆, 즉 天·龍·夜叉·乾達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 등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천룡도라 할 때는 제석천이나 범천 등 善神은 표현되지 않고 위태천을 중심으로 무장의 신장들이 함께 묘사되는 신중도 형식을 말한다.

화면 중앙에는 위태천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주위에는 천녀와 日月天子 및 여러 신중들이 배치되었다. 韋馱天(Skanda)은 녹색의 두광을 지니고 새 날개깃으로 장식된 화려한 투구를 쓰고 합장한 두 손 위로 삼고저 같은 것을 받들고 있는데, 투구장식 및 肩甲부분을 금박으로 처리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천녀는 꽃으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두 손으로 향로와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있다. 천녀 옆에는 관복을 입고 홀을 든 인물이 서있는데, 향우측 인물은 흰색의 달이 그려진 관을 쓰고 복두칠성이 그려진 홀을 들고 있어 月宮天子로 추정되며, 책관을 쓰고 홀을 든 향좌측 인물은 남장사 신중도(1824년)의 日宮天子와 동일한 모습이어서 日宮天子로 추정된다. 화면 하단에는 중앙에는 상투머리에 검은색 투명두건을 쓰고 오른손에 白翼扇, 왼손에 영지버섯이 든 바구니를 들고 있는 山神과 금문양으로 장식된 검은 두건을 쓰고 서책을 들고 있는 龍王神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옆으로는 활과 화살 및 칼, 화염보주 등을 들고 서있는 신중이 배치되었다.

인물표현은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으며 채색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기물과 복식 일부에 화려한 금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채색법은 19세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색이기도 하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1898년에 蓉潭이 模像, 즉 초본을 그렸다고 했으나 片手 다음에는 화승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 불화조성화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불화는 위태천과 천룡팔부를 간단하게 그린 천룡도로서 1898년에 蓉潭이 초본을 제작하였다. 일반적인 천룡도와 달리 위태천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하단의 산신과 조왕신 및 기타 신중이 부각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의복 및 기물 등에 금박을 사용하여 채색이 돋보인다. 인물묘사에는 섬세한 바림질과 세칠의 묘사로 인해 입체감과 사실성이 돋보이며, 간략하게 표현한 옷주름에도 활달한 필력이 엿보인다. 신중도 중 천룡도 형식은 유례가 많지 않으며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천룡도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 작품은 비록 제작시기는 늦지만 19세기 말의 서울·경기지역의 천룡도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화기]

향우측 : 大韓光武二年戊戌十二月十六日神供十九日夜點眼 □安于三角山 □興□寺 緣化所 證明翠山錦 □ 暎曇普 □ 誦呪 兩潭明 □ 乘法 模像蓉 □ 片手比丘 □ 鐘頭 沙彌 茶角 別供沙彌 □ 供司沙彌 □ 都監 化主 報靈 □

향좌측 : 大施主 乾命壬戌生 □ □ 坤命丙子生 □ □ 兩主保體 董子戊戌生 □ 保體 壽福增長 □ 引勸大施主 坤命乙卯生 □ □ 罪滅福 □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1890년 作 만세루 아미타불회도는 다수의 상공들이 시주한 왕실발원의 불화로 수화승 공조(巨照)를 비롯하여 만파정익(萬波定翼), 혜산축연(慧山竺衍), 보암공법(普庵肯法) 등 주로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화승들이 조성하였다.

화기에 이 불화의 조성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전각인 만세루의 1890년 作 두점의 신중도 역시 수화승 공조(巨照) 등이 참여한 바, 동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위의 보살, 십대제자, 타방불, 사천왕, 천부중 등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이 두광과 신광을 등지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모양을 하고 있다. 본존불 좌우에는 연꽃 등을 든 8위의 보살 및 사천왕이 모두 倚坐像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왕실발원의 이 불화에는 값비싼 재료인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바, 持物부분에는 주로 金箔이, 天衣 등 복식의 문양에는 金泥로 그렸다. 특히 아미타불의 신광에 사용된 금은 구불구불한 선과 변화 있는 금색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빛이 방사하듯 보여 예배자의 시선을 중앙의 아미타불로 향하게 한다.

화면 하단부 밑부분에 흰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난이 마련된 바, 이 불화의 조성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세루의 1890년 作 두점의 신중도 역시 수화승 공조(巨照) 등이 참여한 바, 동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1890년에는 홍천사 大房에서 여러 점의 불화를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인근 사찰인 봉국사[奉國寺: 神德王后(?~1396)의 원당] 大房에 봉안하기 위한 불화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수월도랑공화불사(水月道場空花佛事)’와 관련하여 불화가 제작된 점이다. 이 불사는 19세기 말에 홍천사를 비롯하여 파주 보광사, 수원 청련암, 삼각산 화계사 등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설행되었다.

동참시주인 다수의 상공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갑신생 하씨 正德慧는 1878년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1, 3대왕도), 1878년 개운사 감로도, 1884년 진관사 영산전 석가모니불도 등 여러 불사에 시주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87.6cm, 104.6cm, 84.5cm의 비단 세 폭을 이어 가로로 긴 화면의 바탕을 마련한 1890년 作 만세루 아미타불회도는 일반 불교신도들의 이름과 함께 동참시주로서 상공들이 다수 참여한 왕실발원 불화로 값비싼 재료인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채색, 필선, 장식, 문양 등에서도 정교함이 드러나 있다.

특히 결가부좌한 본존불 좌우의 8위 보살 및 사천왕이 모두 의좌상을 한 좌세는 특징적이다.

당시 저명한 화승인 공조가 수화승으로 등장한 이 아미타불회도는 왕실발원 불화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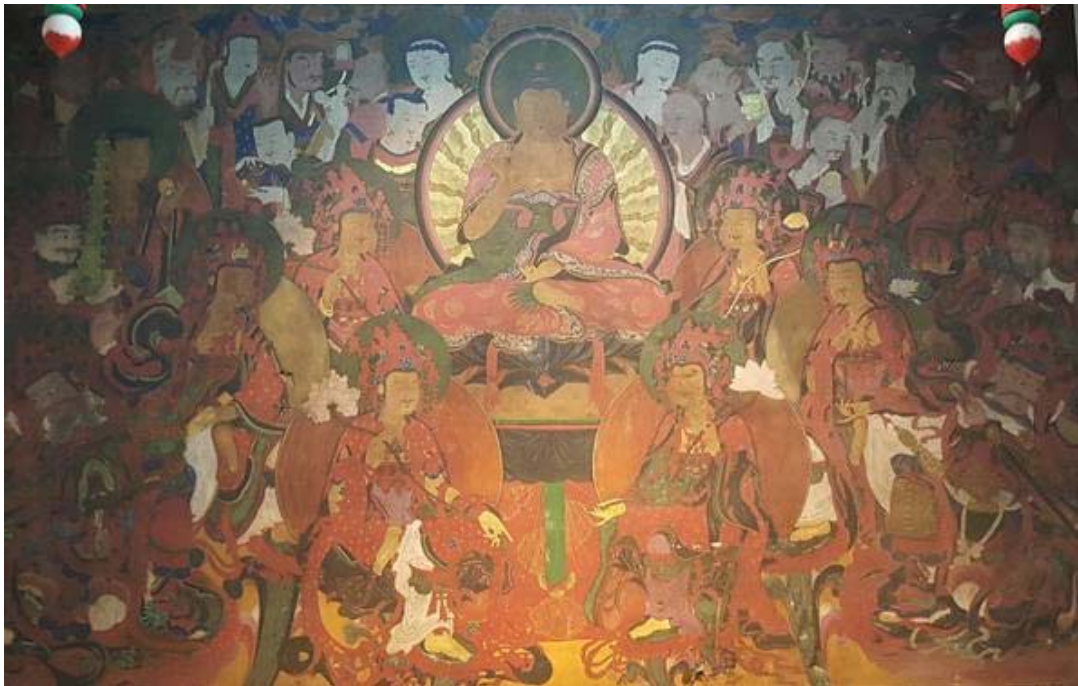
[화기]

山興天寺水月」道場空花佛」事本寺大○」上壇幀一軸」願佛幀一軸」觀音一尊像」改金」神衆幀一軸」帝釋幀一軸」各房願佛」一軸」一尊像改粉」一尊像改金」南巡童子海」龍王改彩」奉國寺大房」上壇幀一軸」神衆幀一軸」各房願佛幀」一軸」觀音幀一軸」願佛改金」本月十六日

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緣化所」證明翠山錦哲」誦呪嘆曇普潤」懶庵允祚」金魚都片手亘照」模像碧隱誌閑」萬波定翼」蕙山竺衍」明應幻鑑」普庵肯法」錦城性典」玩明應基」比丘慧照」比丘戒禪」景林」慧觀」等閑」沙彌敬恩」鍾頭沙彌法念」淨桶」沙彌斗仁」萬成」別供」供司」比丘法泉」茶角沙彌法念」造餅比丘熙法」秉法」持殿懶庵允祚」都監」化主」比丘坦照」施主」清信女乙未生趙氏」妙法月」清信女癸未崔」氏普惠心」坤命乙巳生元氏」

同參施主」尙宮清信女甲申」生河氏正德慧」尙宮癸未生朴氏」尙宮丁亥生尹氏」尙宮丙子生裴氏」尙宮壬辰生金氏」尙宮丁酉生宋氏」尙宮丙申生洪氏」尙宮辛丑生李氏」清信女己酉生朴氏」坤命癸亥生白氏」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신중도

가로와 세로가 거의 동일한 크기의 정방형 바탕 위에 帝釋天과 梵天을 중심으로 天龍部를 거느린 韋馱天과 天神, 天女, 童女, 童男 등 天部の 무리를 그린 신중도이다. 화기가 기록된 화면 하단은 부분적으로 얼룩과 찢어진 부분, 안료 박락과 찌꺼기에 의한 오염 흔적이 엿보인다.

書記는 화면 테두리 흰색 바탕 위에 별도의 구획 없이 먹으로 조성연대, 봉안처, 조성화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화면을 크게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을 위시한 天部世界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비롯하여 여러 무기를 들고 무장한 천룡부를 표현하였다.

등근 머리광배에 장방형 몸광배를 구비한 상단부 왼쪽(向右側)의 제석천은 마치 궁중의복처럼 화려한 법의를 착용한 채, 두 손으로는 왼 어깨에 비껴 연꽃가지를 들었다. 제석천과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는 범천 또한 오른 어깨에 비껴 모란화 가지를 들고 있는 점만 다를 뿐 제석천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제석천과 범천 주위로는 笏을 든 日·月大臣 및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를 비롯하여 傘蓋와 幢幡을 든 천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 동남·동녀, 일종의 부채인 扇과 幢을 든 천녀 등이 뽁뽁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맨 위쪽 상단에는 하늘 공간을 표현하였다.

턱이 가름하니 둥글어진 얼굴의 제석천과 범천을 위시하여 천녀, 동남·동녀 등의 상들을 보면 정교한 필선을 사용하여 상호를 표현하고 밝은 피부색을 하여 천부세계를 나타낸 듯 곱상하고 우아함이 느껴진다.

하단의 천룡부 수장인 위태천은 깃털 모양의 장식을 갖춘 투구를 쓴 무장 모습으로 배를 약간 내민 채 두 손으로 삼지창을 쥐고 서 있다.

위태천 좌우로는 탕건을 쓰고 깃털부채를 든 신중상(山神으로 불림)과 책을 어깨에 기대어 들고 있는 신중상(龍王神으로 불림), 갑옷을 입고 靑龍偃月刀와 죽절형 武具 및 검으로 무장한 천룡부의 신장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천룡부의 상들은 상단 천부세계의 상들과 달리 어두워진 피부 빛깔에 모두 무장을 한 채 길고 덩수룩한 수염을 하고 부러진 것처럼 눈을 크게 표현하여 강인한 느낌을 준다.

채색은 이 시기의 다른 불화들과 마찬가지로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적색의 경우 탁해지고 녹색 또한 짙고 어두운 암록색을 하여 전반적으로 화면이 무거워진 느낌이다. 이를 해소하기라도 하듯 삼지창과 검 등의 무구, 각종 器物과 冠帶, 의복 등에 부분적으로 금을 사용하여 채색하거나 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써 밝아지고 활기가 느껴진다.

또한 이 신중도 조성 시 홍천사에 별도의 불사 도량을 개설하여 홍천사 大房의 상단불화 1축을 비롯한 원불도 1축과 신중도 1축, 제석천도 1축 조성과 함께 아미타불상 改粉 및 관음보살상 改金, 원불 1존상 改金, 南巡童子 및 海上龍王의 改彩도 이루어졌음이 파악된다. 그리고 인근 사찰인 봉국사 봉안의 대방 상단불화 1축과 원불도 1축, 신중도 1축을 조성하고 원불 1존상의 개금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중도의 도상을 살펴보면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1885년 조성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와 하늘 공간 처리와 색채의 채용에서만 약간의 차이점이 엿보일 뿐 도상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 신중도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화승 가운데 ‘碧瀾園 圀, 比丘肯園’의

경우 극락보전 신중도 조성 시 동참화원이었다는 데 있다고 하겠으며, 동일 본을 사용하여 그렸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짐작된다.

이 신중도는 화기에 의해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및 조성화승 등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19세기 후반 한성부 지역의 신중도 도상 비교 및 수화승 ‘궁조’와 동참 화승 ‘궁법, 축연’, 그리고 극락보전 신중도 동참화승 ‘囹’, ‘圉’과의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궁조, 궁법, 축연’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걸쳐 서울·경기지역에서 대활약을 하였던 대표적 화승들로서 불화의 격이 짐작된다.

이에 홍천사 만세루 봉안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화기]

‘大清光緒十六年庚寅十月日三角山興天寺水月道場空花佛事 本寺大房上壇幀一軸 願佛幀一軸 神衆幀一軸 帝釋幀一軸 阿彌陀佛改粉 觀世音菩薩改金 願佛一尊像改金 南巡童子 海上龍王改彩 奉國寺大房上壇幀一軸 願佛幀一軸 神衆幀一軸 願佛一尊像改金 本月十六日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金魚都片手 亘照 模像 普庵肯法 碧隱誌閑 萬波定翼 蕙山竺衍 明應幻鑑 錦城性典 玩明應基 比丘慧照 比丘戒禪 比丘景林 比丘慧觀 比丘等閑 沙彌敬恩’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신중도는 光緒 16年인 1890년 ‘亘照’가 수화승을 맡고 ‘普庵肯法 碧隱誌閑 萬波定翼 蕙山竺衍 明應幻鑑 錦城性典 玩明應基 比丘慧照 比丘戒禪 比丘景林 比丘慧觀 比丘等閑 沙彌敬恩’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제석천을 중심으로 天部世界の 여러 신들을 그린 비교적 간단한 구성의 신중도이다.

녹색 안료 일부의 박락과 변색이 보이고, 화면에는 부분적으로 뚫림과 함께 찢음으로 오염된 흔적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 중앙쪽으로 화기관을 마련하여 조성연대, 봉안처, 화승, 시주자 등을 기록하였다.

화면의 중앙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제석천을 감싸듯 天部衆과 天女 등의 권속들이 빙 둘러 배치되어 있다.

제석천의 경우 원형의 頭光과 장방형 身光을 구비한 모습으로 정면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두광은 짙은 암록색인 반면 신광은 토황색에 가까운 밝은 갈색 바탕에 황색의 구불구불한 선과 직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마치 몸에서 빛이 방사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한편 제석천 주위로는 관을 쓰고 笏을 든 왕 모습의 천부중 8위가 배치되었는데 하단에는 제석천을 향하여 八팔을 이루며 좌우로 각 3위씩 6위를 두고, 상단 어깨 좌우로는 각 1위씩 2위의 천부중을 그려 놓았다. 천부중은 遠遊冠 형식의 관모를 쓴 상이 4위, 方形 또는 半月形 日月冠을 쓴 상이 4위로 일월관을 쓴 상의 경우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단 천부중 옆으로는 幢幡을 들고 과일을 받쳐 든 天女의 모습이 보이며, 상단 중앙부 제석천 머리 위 좌우로는 幢과 扇을 들고 있는 두 명의 童女가 자리하였다.

왕의 모습을 한 천부중은 턱이 두툼하니 통통한 얼굴에 눈과 코를 가는 먹선으로 그리고 주위에 열게 음영을 가하였는데, 눈동자가 대부분 가운데 쪽으로 몰려있어 해학적인 느낌이다.

채색의 경우 의복과 관 및 광배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탁한 赤色과 暗綠色이 주조를 이룬 반면, 각 존상의 피부색은 흰색에 가까운 정도로 밝게 처리하고 하늘 공간과 관 및 의복에 밝은 청색을 사용하여 환한 느낌을 준다. 천부중들이 들고 있는 홀과 관모에 부분적으로 金이 사용되고, 옷 위에 그려진 문양 일부에도 금을 사용하였다. 배경을 이루는 구름은 녹색과 밝은 갈색 구름으로 바름질을 가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의 書記의 내용으로 보아, 이 불화는 淸信女 乙未生趙氏妙法月과 乙巳生元氏의 시주로 光緒 16년인 1890년 도판수 ‘궁조’가 책임화승을 맡고 ‘정익’과 ‘성전’이 참여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조성화원 등이 명확할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한성부와 경기도 지역의 제석천 중심의 신중도 도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채색과 존상의 형태 등에 있어서도 19세기 후반의 양식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화기]

大清光緒十六年庚寅十月日三角山興天寺空花佛事

本寺他本幀畫上中幀合七軸改金改彩改粉尊像合六位

本月十六日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

緣化所

證明 翠山錦哲 映曇普潤

誦呪 懶庵允祚

金魚 都片手 亘照

模像 萬波定翼 錦城性典

鍾頭 沙彌法念

斗仁

茶角 沙彌法念

供司

比丘法泉

別供

淨桶 萬成

都監

比丘坦照

化主

施主 清信女乙未生趙氏妙法月

坤命乙巳生元氏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도량장엄본

도량장엄용 의식불화인 오여래도·사보살도·팔금강도로서, 오여래도 5점, 사보살도 4점, 팔금강도 7점(8점 중 1점 결실) 등 총 16점이다. 오여래도·사보살도·팔금강도는 불교의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야외 의식도량에 현괘되어 도량 주위를 結戒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맡은 도량장엄용 불화로 대부분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다.

五如來圖는 南無多寶如來(孤魂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法材를 具足케 함), 無妙色身如來(누추하고 험상한 형상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원만하게 함), 南無甘露王如來(바늘처럼 가는 목구멍을 개통시켜 甘露味를 먹게 함), 南無廣博身如來(六道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허공과 같은 청정한 法身을 얻게 함), 南無離怖畏如來(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涅槃의 즐거움을 얻게 함) 등 5폭으로, 각 폭의 향우측 상단에 존상의 명칭이 적혀있다. 오여래는 수인과 착의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녹색의 두광과 흰색의 신광을 지니고 붉은 법의를 입고 붉은 연꽃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있다. 다보여래와 감로왕여래는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2, 3지를 구부리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3지를 맞대고 있으며, 이포외여래는 오른손을 길게 무릎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3지를 맞대었다. 광박신여래는 두 손을 가슴 부근으로 올려 손가락을 맞대고 묘색신여래는 두 손을 벌려 설법인을 취하였다.

四菩薩圖는 오여래도와 같이 불교의식을 행할 때 도량을 장엄하는 역할을 하는 번이다. 일반적으로 장엄용번에 그려지는 사보살은 金剛索菩薩, 金剛眷菩薩, 金剛愛菩薩, 金剛語菩薩이지만, 홍천사 번의 경우 그림에 기록된 명칭으로 볼 때 神衆壇에서 奉請하는 104位신중 가운데 方便擎物眷菩薩(어느 곳이든지 모임이 있는 곳이면 그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갖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일깨우는 보살), 現身調伏愛菩薩(중생따라 신통을 나타내어 잘못된 사람을 조복하는 보살), 普警群迷語菩薩(청정한 운음으로 널리 깨달음을 주는 보살) 등 세 보살과 大聖引路王菩薩 등 4구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보살은 모두 녹색의 두광과 백색의 신광에 붉은색의 보관을 쓰고 소매폭이 넓은 붉은 천의를 입고 좌측 또는 우측을 향해 합장한 채 연꽃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있다. 반면 인로왕보살은 幢幡을 든 동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靈山齋를 통해 천도된 망자들은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로왕보살이 하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八金剛圖는 사보살도, 오여래도처럼 불교의식을 행할 때 그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엄용 불화이다. 靑除災金剛(중생들의 전생의 재앙을 없애줌), 辟毒金剛(중생들의 온갖 독을 破해줌), 黃隨求金剛(모든 공덕을 주재하여 소망을 성취시켜 줌), 白淨水金剛(보장을 주재하여 열녀를 없애 줌), 赤聲火金剛(부처님을 보면 몸에서 빛이 나고 바람처럼 달려가는 금강), 定除災金剛(자비의 눈으로 物을 보아 지혜로 재난을 없애 줌), 紫賢神金剛(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땅을 파헤쳐 중생들을 깨우침), 大神力金剛(物을 따라 중생을 조절하여 지혜를 성취하게 함) 등으로 구성되지만, 여기에서는 黃隨求金剛圖가 결실되어 7폭만 남아있으며 대신력금강 대신에 대예적금강도가 포함되어 있다.

7폭 모두 가는 먹선을 이용하여 전체 화폭의 안쪽에 방형으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중앙에 금강의 모습을 크게 부각시켜 묘사하였다. 붉은 옷에 두건을 쓴 紫賢神金剛을 제외한 나머지 금

강은 모두 근육이 불거진 신장의 모습으로 칼·창·철퇴 등을 들고 있는데, 백정수금강은 마치 南極星(壽星老人)처럼 정수리가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또한 대예적금강은 3面3目8臂像으로 손에는 金剛鈴, 印璽, 寶劍, 法輪, 뱀, 牽索 등을 들고 있으며, 다른 금강들과 달리 방향의 대좌위에 두 다리를 벌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있다. 대예적금강은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일체의 악을 제거하는 위력을 가졌는데, 팔금강을 거느리고 불법을 옹호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보통 8금강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대신력금강 대신에 대예적금강을 함께 그린 것이 특이하다.

홍천사 도량장엄번은 팔금강 중 黃隨求金剛을 제외한 16점이 남아있는데, 화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 도량장엄번이 일반적으로 괘불도와 함께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홍천사 괘불도(1832년 작)와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홍천사 괘불도와 번은 양식이 달라 함께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장엄번은 얼굴의 형태와 채색 및 문양 등에서 1898년에 제작된 홍천사 극락보전 천룡도의 양식과 유사하여, 조성연대는 1898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법을 사용하는 등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양식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19세기 말 홍천사의 불교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사진자료



①묘색신여래



②광박신여래



③이포외여래



④감로왕여래



⑤다보여래



⑥현신조복애보살



⑦보경군미어보살



⑧방편경물권보살



⑨대성인로왕보살



⑩청제재금강



⑪벽독금강



⑫정제재금강



⑬백정수금강



⑭자현신금강



⑮대예적금강



⑯적성화금강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천사길 29(돈암동) 홍천사에 전해오는 목조여래좌상은 높이 56.3cm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중소형 불상이다. 불상의 크기로 보아 조선충독부 관보(1933년)와 『봉은본말사지』에 실린 「홍천사 귀중품 목록」에 보이는 1척8촌의 아미타불상으로 생각된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데,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장대한 신체의 비례는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서도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주목된다. 얼굴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불신(佛身)의 크기에 비해 얼굴은 작은 편이며, 그에 비해서 머리의 측면 폭은 넓다.

육계가 낮아 머리와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는 두부에는 나발이 큼직하고 중앙에 반달형의 중간계주와 정상에 둥근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었다. 개금이 두꺼워 이목구비의 세부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미간의 백호에는 수정이 박혀있고 우뚝한 콧날과 넓은 인중, 미소 띤 자비로운 입가에서 차분하고 단엄한 상호를 보인다.

대의(大衣)를 입은 착의형식은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법(또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로 불리는 옷이 걸쳐지고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 뒤로 넘겨져 늘어졌다. 앞가슴은 U자형 넓게 열려 안에 입은 내의(승각기)가 겹쳐서 사선의 주름을 이루는 것이 잘 드러나고 가부좌한 두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오른발을 반쯤 덮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양 무릎위에 주름을 이루고 있다. 양 손은 통통하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힘 있게 조각되었다. 수인(手印)은 설법인(說法印, 下品中生印으로도 불림)으로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댈 듯이 가까이 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댈 듯 가까이 하고 있다.

불상의 뒷면에는 넓은 직사각형의 복장공이 있으나 현재 불상의 바닥에 인위적으로 뚫은 가로지름 10.2cm, 세로지름 11cm의 원형 복장공이 뚫려있고 복장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다만 지본목서의 다라니 2건과 발원자명이 목서된 목판(13cm x 9.1cm)이 남아있는데, 다라니 2건은 처음 조성 당시의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내민 듯한 자세를 비롯해서,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장신형의 신체 비례와 체구에 비해 작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상호 등, 세부 표현에서 1606년에 조성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 1719호)과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 특히, 사선으로 표현된 내의가 비스듬히 물결처럼 휘어진 것과 살이 많아 두터운 손과 구부린 손가락의 형태는 동학사 아미타불상과 비교될 만하고, 다리를 덮은 옷주름의 표현은 본존 동학사 석가여래좌상과 흡사하다. 공주 동학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 17세기 초의 작품인 것을 감안할 때,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역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각승 석준(釋俊)과 각민(覺敏) 등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삼불좌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홍천사 목조여래좌상도 이들 조각승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천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나 복장이 남아있지 않지만,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양식적인 면에서 볼 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목조보살좌상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101.5cm의 중대형 보살상으로, 나무로 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은 정면을 향하여 날고 있는 두 마리의 봉황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화문(花文)과 연화문 장식 등이 붙어 있고, 상단에 다섯 개의 화염문과 측면에 좌우로 관대(冠帶)가 매달려 있다. 보관 겉면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장식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머리 정상에 높은 보계[상투]가 있고, 보관 밑 이마에 머리카락이 단정히 처리되어 있으며, 보살의 머리카락이 귀를 타고 내려와 어깨 위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얼굴은 조선후기 제작된 불상에 비하여 역삼각형에 가까운 가름하다. 머리는 어깨에 비하여 큰 편이지만,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어 안정된 신체비율을 보인다. 이목구비가 단정한 편이고, 선정(禪定)을 하듯이 가늘게 뜬 눈의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코는 뽕족하고 콧등은 짧아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된 인상과 다르다. 미간 사이에는 얼굴에 비해 큰 백호가 있다. 양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무릎에 놓인 오른손과 어깨까지 치켜든 왼손에 연봉오리가 달린 줄기를 자연스럽게 들고 있다.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끝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이 자연스럽게 접혀 있어 연관형으로 처리된 17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보살상과 차이가 난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이전에 대부분 없어졌고, 조성 시기와 연화질을 밝힐 수 있는 복장발원문도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 지정 조사를 계기로 남아있는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1543년(嘉靖22, 癸卯) 황해도 토산 석두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6-7권(앞부분 망실), 1578년(萬曆6, 戊寅)에 경기도 용인 광교산 서봉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4-5권 등의 경전과 주서다라니, 다수의 비단 편만 남아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경전 1543년 석두사에서 펴낸 『묘법연화경』 6-7권 마지막 장에 묵서된 내용은 시주질에 속한 인물들이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제작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년명 불상이 수 백점 조사되어 양식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신체비례에서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보살상보다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은 편이다. 또한 보살상이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비례는 조선후기보다 조선전기에 유행했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15세기에 조성된 경북 영주 흑석사 불상(145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주사 불상(1482년)과 달리 신체비율에 약간의 왜곡이 있고,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문경 대승사 불상(1586년) 등과 유사한 편이다. 또한 발견된 복장물 중에 『묘법연화경』이 모두 16세기 간행되어 보살상의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식적인 특징을 통하여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살상이 홍천사에 언제부터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왕실 후원 사찰로 유명한 홍천사는 1536년에 한성부에서 홍천사의 빈터를 직급에 따라 관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16세기 중반에 완전히 폐사되었

다. 이후 1799년에 스님들이 홍천사 중창을 발원한 후, 1853년(철종4) 5월에 구봉계장(九峰啓壯)이 대웅전을 창건하고, 다른 사찰에서 불상들을 이운하여 삼존상으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불상은 1933년 1월 24일에 발간된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에 홍천사 귀중품으로 “아미타불(1척 8촌), 관음보살(2척 2촌), 대세지보살(3척 7촌)”이라 적혀 있고, 1943년에 안진호 스님 등이 수집한 자료를 묶은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목조보살좌상을 대세지보살로 적어놓았다. 따라서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보존상태도 완전하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 작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복장물 『묘법연화경』 6-7권 묵서]

전면 - 大施主 趙孟童 兩主, 林順連 兩主, 吳先 兩主, 李碩孫 兩主, 申論石 兩主, 金氏繼德保体, 李根山 兩主, 徐檢成兩主, 李業成 兩主, 盧成山 兩主

후면 - 崔守連 兩主, 田千孫 兩主, 金石 兩主, 郭孫 兩主, 崔順根 兩主, 幹善道人 法能 保体, 嘉靖四十五年丙寅(1566)五月日竟祚

참고 1)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811호 사찰유재산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홍천사(興天寺) 귀중품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아미타불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1척8촌
관음보살	1	철제도금	〃	높이 2척2촌
대세지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3척7촌

참고 2)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홍천사지(興天寺誌)

소상(塑像)

番號	名稱	員數	品質	形狀	寸法	作者	年代
1	阿彌陀佛	1	木質金相	坐	높이 : 1.80 너비 : 90	未詳	未詳
2	四十二手觀音	1	鐵質金相	坐	높이 : 2.27 너비 : 3.50	未詳	未詳
3	大勢至菩薩	1	木質金相	坐	높이 : 3.30 너비 : 1.30	未詳	未詳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석조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홍천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시왕상 10구, 귀왕상 2구, 사자상 2구, 판관상 2구, 금강역사상 2구, 동자상 6구로 총 27구가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 대부분 존상은 석재(石材)로 조성되고, 사자상과 금강역사상은 흙으로 만들었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좌상으로, 총 높이가 84.5cm인 중소형 불상이다. 도명존자(높이 74cm)와 무독귀왕(높이 81.5cm)은 입상이고, 시왕과 의자가 하나의 돌에 조각된 시왕상(초강대왕 총 높이 114.6cm)과 판관 등은 입상이다. 사자상과 금강역사상(높이 135-138cm)은 재료와 크기가 다른 존상과 차이가 난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으로,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고, 신체와 같이 조각된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에 둥근 보주를 들고 있고, 왼손은 편상태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이러한 손의 형태는 조선후기 제작된 석조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인(手印)이다. 보살은 각진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의 코, 미소를 머금은 입, 길게 늘어진 귀를 가지고 있다. 목은 짧게 수평으로 형식화 된 삼도(三道)가 새겨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편삼(扁衫)을 입고,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腹部)에서 편삼과 겹쳐져 있다. 이러한 겹쳐진 표현은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목조불상에서 편삼이 대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것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앞으로 한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고, 그 옆으로 낮은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가린 승각기(僧脚崎)는 상단이 수평이고, 내부에 대각선으로 간략하게 접혀 있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늘어져 있다.

지장보살의 협시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은 지장과 크기가 비슷하다.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합장을 하고, 무독귀왕은 문관복(文官服)에 원류관을 쓰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차수(叉手)하고 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耳目口鼻)에서 풍기는 인상은 도명존자와 유사하다.

지장삼존상의 좌우에는 벽면을 따라 왼쪽[向右]에 홀수 대왕을, 오른쪽[向左]에 짝수 대왕을 배열하였다. 시왕상의 사이사이에 동자상과 불단 앞에 귀왕(鬼王), 판관(判官)을 세워놓았다. 한쪽 벽면에 사자(使者)와 무기를 든 금강역사가 서 있다.

명부전 내 존상들은 대부분 복장구가 열려 있고, 일부 복장구가 훼손되지 않은 시왕상이 있다. 기존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도록에 제4 오관대왕상에서 1873년에 시왕을 개채한 원문이 발견되었다.

홍천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조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 제작연대가 밝혀진 기년명(紀年銘) 불상이 수 백점 조사되어 양식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홍천사 명부전 불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이용한 점과 17세기 후반에 조각승 승

호와 그 계보가 만든 불상과 양식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1680년대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부전 불상과 양식적으로 비슷한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경북 청도 덕사(1678년), 경남 창원 성주사(1681년), 부산 기장 장안사(1684년) 등 영남 지역에 주로 남아있어 19세기 후반 이 지역에서 이운되어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천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기년 명 불상과 양식적인 특징을 비교하면, 17세기 후반에 영남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보살상이 홍천사에 언제부터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왕실 사찰로 유명한 홍천사는 1536년에 한성부에서 빈터를 직급에 따라 관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폐사(廢寺)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99년에 스님들이 홍천사의 중창을 발원한 후, 1853년(철종4) 5월에 구봉계장(九峰啓壯)이 대웅전을 창건하고, 1855년에 명부전이 건립되었다(참조1).

이 명부전 불상은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에 게재된 홍천사 귀중품 대장에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등이 총 27점이 적혀 있고(참조2), 1943년에 안진호 스님 등이 수집한 자료를 묶은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지장보살삼존상이 존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참조3). 따라서 홍천사 명부전 불상은 보존 상태도 완전하고,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시왕개채원문]

十王改彩願文

伏以願滅四生六途法界●●多劫生來諸業障我●●廣大募緣成就佛事奉安于
漢東三角山興天寺以●●●●者受者生者亡者願諸●障悉消●世●行菩薩道
願共法界諸衆生 同八彌陀大願海

證明 青峰應策	比丘 釋云	施主秩
寬河海禪	比丘 善益	乾命辛未生 金氏
幻般道岸	改彩拜 在根	坤命甲辰生 金氏
幻隱允定	比丘 釋祚	乾命甲申生 張淳奎
龍隱快雲	都監 秀山當潤	
會主 應化元淳	別座 靈隱寶泉	
誦呪 春潭度憲	鍾頭比丘 在學	
龍海修品	比丘 善旭	同治十貳年癸酉五月日
比丘 在謙	淨桶比丘 敏初	
金魚 比丘 在典	茶角沙彌 頓法	
比丘 奉炯	都化主 漢鏡學能	

(●는 없어진 부분)

참고 1) 《京畿右道楊州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創記文》

寺本以興天古社 三遷爲新興寺 而唯我太祖神德后貞陵항포奉供之所也 聖后神明之德 國家追獎之典及先王 臣筭啓之請 詳悉於菱洋土所贊屠維協治(己未)之記 則不敢疊架 而寺之前後剏修因緣實有所稱頌敬服矣 蓋其剏也 性敏師久而住持 其頽也 敬信師繼而修葺 迄于憲宗丙午(1846) 啓壯師先建七星閣 而爲國祚祝釐之所 越己酉(1899)春 性慧師獨躬寂照庵 而說念佛觀禪之室 哲宗癸丑(1853) 啓壯師又剏大雄殿, 而廣開人天之化問 乙卯(1855)春 舜祺師親建冥府殿 而薦生靈之迷途如上種種功德 亦莫非自上愛護之德 則將欲報之罔極矣 事之未遑者 惟波寮舍 而遷延已久 頽廢益甚 嗚呼盛哉 我聖上卽位之明年乙丑(1865) 自雲峴宮 發無漏之妙因 行一施之洪恩 募化各道列邑收若干財 而其材瓦鐵物亦皆恩念所賜矣 於是 處均掌其材 贊奎董其役 召嶺南名匠 不月竣事 左右之分翼 前後之布排 比前倍蓰 而寺如是重重新新而興矣 既落成 改其扁曰興天寺 蓋因其舊制而然矣噫 國家之另加護念 同一益茂於仙李萬歲之春 而若其均奎及快明應策諸上士 其餘各當所費之師亦一敏老之後 毘而相繼於無窮 則五佛冥冥福國 何啻萬世而止哉 小衲生長蓬華之下 幽蟄寂滅之場 昧於事體 拙於文字 而亦在臣民之一 則油然而有忠君愛國之誠 故稽首再拜而以爲記 崇禎紀元後四甲己巳 重陽節 四佛山人 景雲以祉 謹識 道庵門孫 尙月堂 天如 書梓

참고 2)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811호 사찰유재산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흥천사(興天寺) 귀중품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지장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2척7촌
도명존자	1	석제도채	입상	높이 2척3촌
무독귀왕	1	"	"	높이 2척6촌
대왕	10	"	좌상	높이 3척
판관	2	"	입상	높이 2척6촌
녹사	2	"	"	높이 3척2촌5분
거령신	2	토제도분	"	높이 4척7촌
동자	6	석제도채	"	높이 1척7촌
사자	2	"	"	높이 3척3촌

참고 3)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흥천사지(興天寺誌)

소상(塑像)

番號	名稱	員數	品質	形狀	寸法	作者	年代
1	地藏菩薩	1	木質金相	坐	높이 : 2.70 너비 : 1.50	未詳	未詳
2	兩補處尊	2	玉質彩相	立	높이 : 2.30 너비 : 1.10	未詳	未詳
3	大王	10	石質彩相	坐	높이 : 3.00 너비 : 1.10	未詳	未詳

※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높이	무릎 너비
①지장보살상	1	높이 84.5	무릎 너비 56
②무독귀왕	1	높이 81.5	어깨 너비 28.5
③도명존자	1	높이 74	어깨 너비 26
④~⑬시왕상/제1대왕	10	높이 87.0~93.2 /총 높이114.6(높이 91)	무릎 너비 35~44
⑭⑮귀왕상	2	높이 67.5~77	어깨 너비 24~25
⑯⑰판관상	2	높이 72~76.5	어깨 너비 24~25
⑱⑲사자상	2	높이 93.5~98	어깨 너비 27~28
⑳㉑금강역사상	2	높이 135~138	최대폭 37~43
㉒~㉓동자상	6	높이 37.5~56	어깨 너비 13~17.5

사진자료



석조지장삼존상(①지장보살좌상 ②무독귀왕 ③도명존자)



④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⑤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⑥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⑦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⑧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⑨제6변성대왕의좌상(우3) ⑩제7태산대왕의좌상(좌4) ⑪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⑫제9도시대왕반가상(좌5) ⑬제10오도전륜대왕반가상(우5) ⑭귀왕상(2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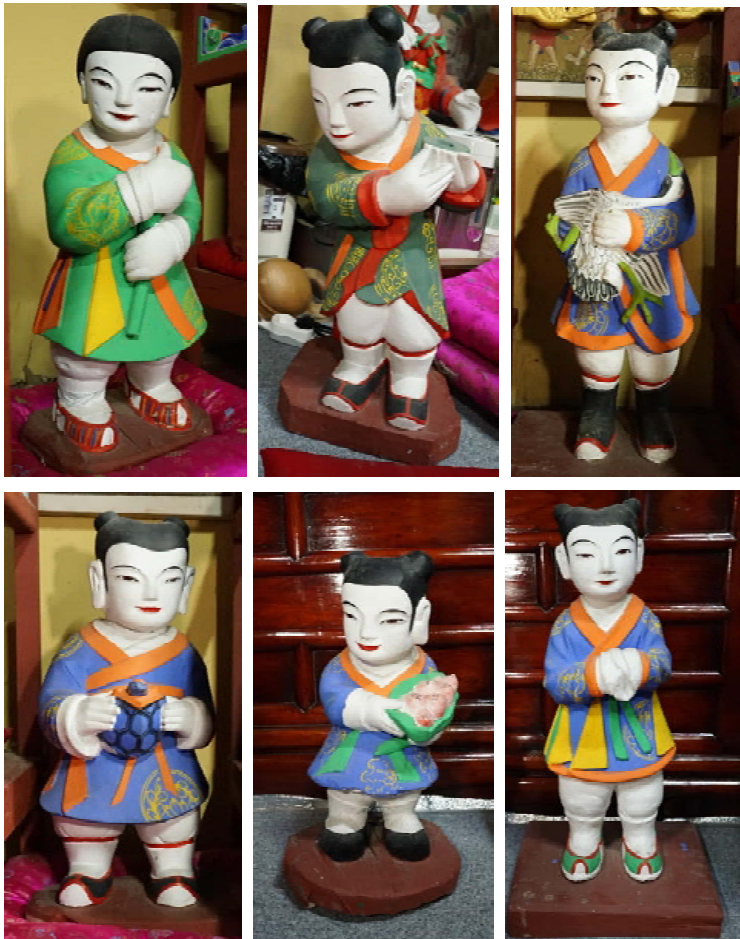


⑮판관상(2구)

⑯사자상(2구)



㉞금강역사상(2구)



㉟동자상(6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한 금호로 구간(금호로 종점 ~ 신금호역로터리) 연장 및 폭원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	15~25	보조 간선	1,644	광희동2가 105-32	금호동2가 220-1	일반 도로	-	총고 722호 (1936.12.26.)	
변경	중로	2	12	15~25	보조 간선	1,685	광희동2가 105-32	금호동2가 222-1	일반 도로	-	총고 722호 (1936.12.26.)	도로 연장 (L=41m)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2		• 도로연장 [연장 1,644m → 1,685m (증41m)]	• 도로폭 협소한 구간(도로종점~신금호역 로터리) 폭원 확장을 위해 도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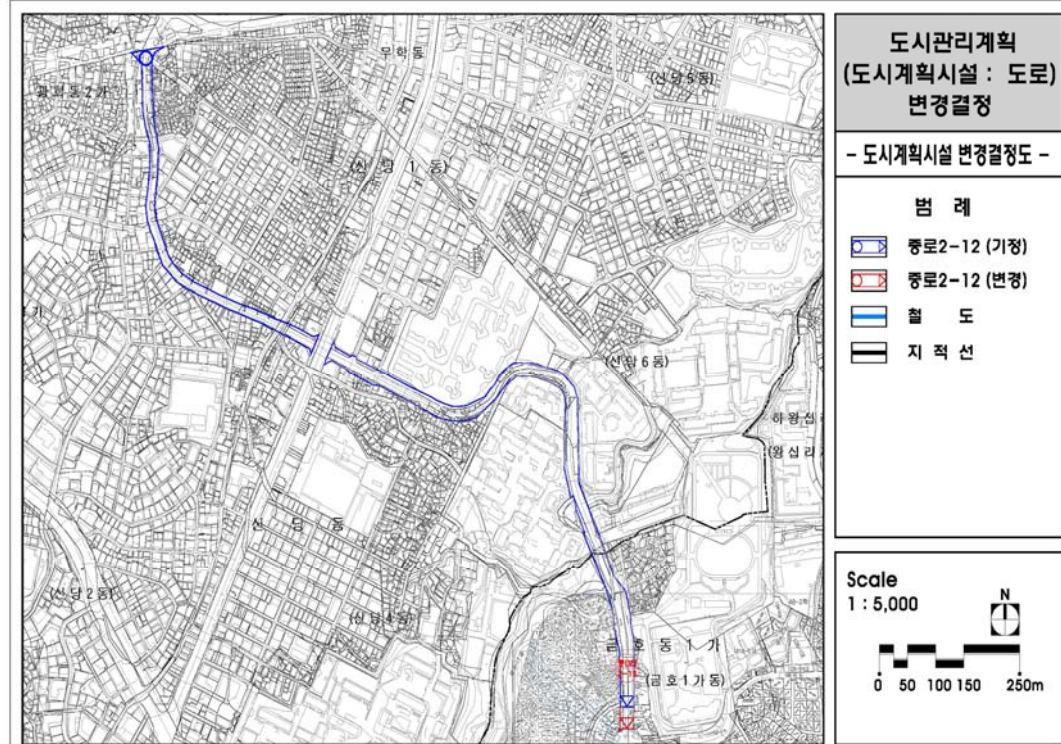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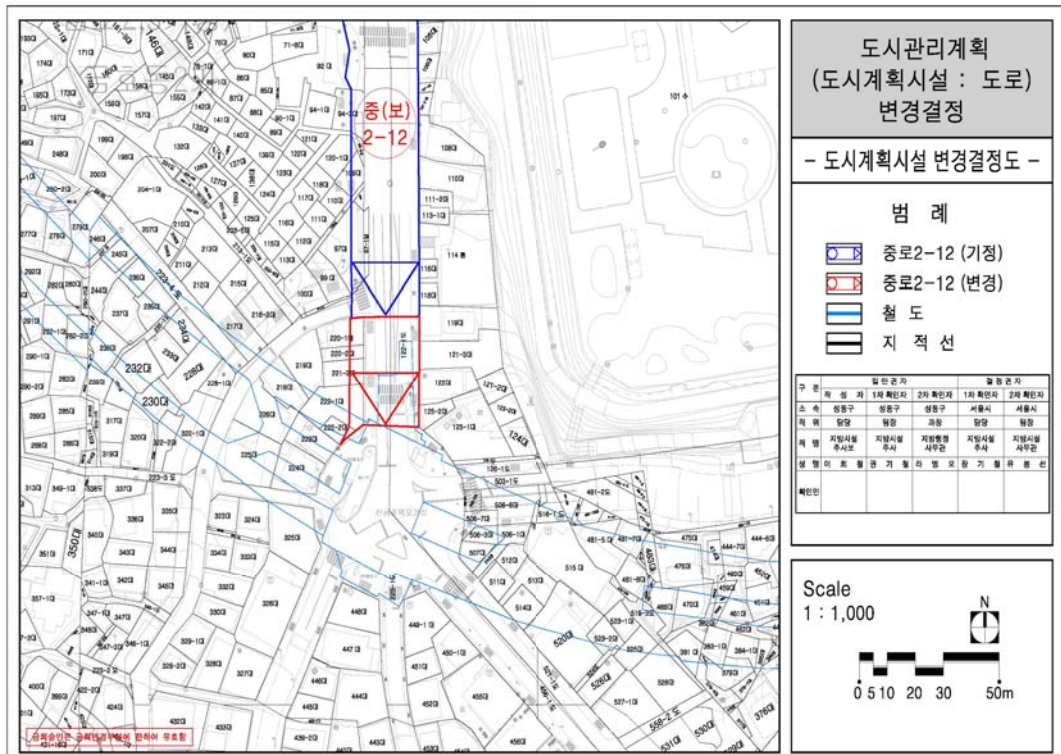
다.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5)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53)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5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호(2005.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4호(2015.3.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나들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73-5번지 일대

3. 면적 : 32,0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9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02-3783-5966)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계	32,000.00	10,365.80	3동	256.90	249.70	6.00	3동	256.90	249.70	6.00	
	소계	5,769.00	5,769.00	-	-	-	-	-	-	-	-	감)173.0㎡
	도로	3,922.00	3,922.00	-	-	-	-	-	-	-	-	-
	광장	1,847.00	1,847.00	-	-	-	-	-	-	-	-	감)173.0㎡
조경시설		700.00	700.00	-	-	-	-	-	-	-	-	-
휴양시설		144.00	144.00	-	-	-	5	-	-	-	5	-
운동시설		1,330.00	1,330.00	-	-	-	-	-	-	-	-	감)536.5㎡
교양시설		964.60	964.60	2동	70.40	70.40	-	2동	70.40	70.40	-	-
편익시설		515.00	515.00	-	-	-	-	-	-	-	-	증)774.5㎡
유희시설		663.00	663.00	-	-	-	1	-	-	-	1	
관리시설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1동	186.50	179.30	-	-
녹지		21,634.20	-	-	-	-	-	-	-	-	-	감)65.0㎡
시설율 (법정 40%이하)		10,365.80 ÷ 32,000.00 × 100 = 32.39%				10,430.80 ÷ 32,000.00 × 100 = 32.59%						
건폐율 (법정 15%이하)		256.90 ÷ 32,000.00 × 100 = 0.80%				256.90 ÷ 32,000.00 × 100 = 0.8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합계			32,000.00	10,365.80		3동	256.90	249.70	6			32,000.00	10,430.80		3동	256.90	249.70	6	
	소계			5,769.00	5,769.00	-	-	-	-	-			5,596.00	5,596.00	-	-	-	-	-	
	도로			3,922.00	3,922.00	-	-	-	-	-			3,922.00	3,922.00	-	-	-	-	-	
	광장	가	전지역	1,847.00	1,847.00	-	-	-	-	-	가	전지역	1,674.00	1,674.00	-	-	-	-	-	
조경 시설	소계			700.00	700.00	-	-	-	-	-			700.00	700.00	-	-	-	-	-	
	피크닉장	나		320.00	320.00	-	-	-	-	-	나		320.00	320.00	-	-	-	-	-	
	휴게데크	다		133.00	133.00	-	-	-	-	-	다		133.00	133.00	-	-	-	-	-	
	수로	라		247.00	247.00	-	-	-	-	-	라		247.00	247.00	-	-	-	-	-	
휴양 시설	목교	①	초화원 사이	-	-	목재	-	-	-	-	①	초화원 사이	-	-	목재	-	-	-	-	
	소계			144.00	144.00	-	-	-	-	5			144.00	144.00	-	-	-	-	5	
	휴게소	마	발맛사지 주변	144.00	144.00	-	-	-	-	-	마	발맛사지 주변	144.00	144.00	-	-	-	-	-	
		마-1		(72.0)	-	-	-	-	-	-	마-1		(72.0)	-	-	-	-	-	-	
유희 시설		마-2		(72.0)	-	-	-	-	-	-	마-2		(72.0)	-	-	-	-	-	-	
	파고라	②	전지역	-	-	목재	-	-	-	5	②	전지역	-	-	목재	-	-	-	5	
	소계			663.00	663.00	-	-	-	-	1			663.00	663.00	-	-	-	-	1	
	놀이터	바		308.00	308.00	-	-	-	-	-	바		308.00	308.00	-	-	-	-	-	
유치 시설	뽕동산	③		-	-	막구조	-	-	-	1	③		-	-	막구조	-	-	-	1	
	체험의숲	사		355.00	355.00	-	-	-	-	-	사		355.00	355.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후		비 고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 시설	소계			1,330.00	1,330.00	-	-	-	-	-			793.50	793.50	-	-	-	-	감)536.5㎡
	맨발건강원	아		627.00	627.00	-	-	-	-	-	아		627.00	627.00	-	-	-	-	
	배드민턴장	자		703.00	703.00	-	-	-	-	-	자		166.5	166.5	-	-	-	-	
교양 시설	소계			964.60	964.60	-	2동	70.40	70.40	-			964.60	964.60	-	2동	70.40	70.40	-
	농가체험장	차		861.20	861.20	-	-	-	-	-	차		861.20	861.20	-	-	-	-	-
	농가주택	2		71.20	71.20	-	1동	51.60	51.60	-	2		71.20	71.20	-	1동	51.60	51.60	-
	외양간	3		32.20	32.20	-	1동	18.80	18.80	-	3		32.20	32.20	-	1동	18.80	18.80	-
편의 시설	소계			515.00	515.00	-	-	-	-	-			1,289.50	1,289.50	-	-	-	-	증)774.5㎡
	주차장	카		515.00	515.00	-	-	-	-	-	카		1,289.50	1,289.50	-	-	-	-	-
관리 시설	소계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관리사무소	타	운영센터 및 매점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타	운영센터 및 매점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녹지 및 기타			전지역	21,634.20								전지역	21,569.20						감)65.0㎡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90.00	3,922.00				
변경	합 계				990.00	3,922.00				
당초		소 계			990.00	3,922.00				
변경					990.00	3,922.00				
당초	소로	(2)	(1)	8.0	285.00	2,280.00	진입도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변경		2	1	8.0	285.00	2,280.00	진입도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당초		(2)	(2)	8.0	50.00	400.00	연결로	소로2-1	북측경계	
변경		2	2	8.0	50.00	400.00	연결로	소로2-1	북측경계	
당초	산책로		1	2.0	73.00	146.00	산책로	소로2-1	동측경계	
변경			1	2.0	73.00	146.00	산책로	소로2-1	동측경계	
당초			2	1.2	86.00	104.00	산책로	휴게데크	맨발건강원 하부	
변경			2	1.2	86.00	104.00	산책로	휴게데크	맨발건강원 하부	
당초			3	2.0	17.00	34.00	연결로	입구광장	산책로-6	
변경			3	2.0	17.00	34.00	연결로	입구광장	산책로-6	
당초			4	2.0	30.00	60.0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변경			4	2.0	30.00	60.0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당초			5	2.0	126.00	252.00	연결로	산책로-7	입구광장	
변경			5	2.0	126.00	252.00	연결로	산책로-7	입구광장	
당초			6	2.0	53.00	106.00	연결로	산책로-7	나들이마당	
변경			6	2.0	53.00	106.00	연결로	산책로-7	나들이마당	
당초			7	2.0	93.00	186.00	산책로	소로2-1	나들이마당	
변경			7	2.0	93.00	186.00	산책로	소로2-1	나들이마당	
당초			8	2.0	152.00	304.00	산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변경			8	2.0	152.00	304.00	산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당초			9	2.0	25.00	50.0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8	
변경			9	2.0	25.00	50.0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8	

조성계획도(변경전)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나들이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76호(2014. 7. 3)로 도시계획시설(미관지구, 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8호(2014. 12.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0호(2015. 10. 22) 및 제2017-9호(2017. 1. 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555(장안삼거리) ~ 전농동 32(전농사거리)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1) 전체 : 폭 25~28m, 연장 1,240m

2) 금회 : 폭 25~28m, 연장 520m

- 전농동사거리 구간 : 폭 25m → 25.5m, 연장 130m

- 배봉사거리 구간 : 폭 24~25m → 25.5~28.75m, 연장 39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05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07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 : 붙임

2) 지장물조서 : 지장물 없음. (보상 완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3)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토목부(☎ 02-3708-2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 확장공사

일련 번호	변경 구분	동 명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당초			16,258.8							
			변경			16,258.8							
22	당초	장안동	1-490	구	51	51	국						
	변경	장안동	1-490	구	51	51	국	국토교통부					
57	당초	장안동	108-27	대	52	52	서울특별시						
	변경	장안동	108-27	도	52	52	서울특별시						

※ 그 외 토지조사내용 변경 없음.

※ 그 외 토지조서내용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7호

구로구 가리봉동(한뫼모아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리봉동 한뫼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가리봉동 한뫼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	-	증) 43,400	43,40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세입자 지원책 관련, 중국인 동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주민협약(안) 마련 유도 및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장기안심주택제도’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 추가 검토
- 대상지 내부 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화재 등 비상시의 소방·방재계획 관련 구체적·종합적인 계획 검토 필요

1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400	－	43,400	100.0	
주택용지 (개별건축)			30,878	－	30,878	71.2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507	－	10,507	24.2	
	도 로	소 계	9,957	－	9,957	22.9	
		도시계획도로	5,479	－	5,479	12.6	
		현황도로	4,478	－	4,478	10.3	
	공공공지		550	－	550	1.3	
종교용지			2,015	－	2,015	4.6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400	-	43,4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1,503	-	41,503	95.6	
준공업지역	1,897	-	1,897	4.4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가리봉동 87-193 일원	3,962	198	20	서고제98호 (1980.3.18)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62	주간선 도로	35,096	삼전동	방화동	일반도로	-	건고제503호 (1969.08.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00	가리봉동 2	가리봉동 13	일반도로	-	서고제440호 (1979.10.15.)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00	가리봉동 9	가리봉동 13	일반도로	-	서고제440호 (1979.10.15.)	

나)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가리봉동 1-11 일대	5,781 (166)	-	5,781 (166)	구고제2007-44호 (2007.05.31.)	-
기정	2	공공공지	가리봉동 13-10 일대	384	-	384	구고제2015-114호 (2015.03.12.)	-

※ ()는 대상지 내 편입 면적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구로구 가리봉동 13-80	-	증) 118	118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 고
신설	202동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가리봉동 한뫼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43,400	-	-	가리봉동 2번지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 등	관계법령에 따름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6)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하여 통일감있는 마을길 조성 (구로동로7나길, 구로동로7길), 골목길 환경개선, 담장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
환경보존	-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화단조성,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 가급적 자연토양을 유지하고, 포장 정비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 내 통합형 비상소화함 설치를 통하여 재난 안전 확보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에상 세대수	비 고
주거환경관 리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동측으로 초등학교 1개소 인접하여 입지 -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 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일반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30% 이상	○	- 운영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 름	- 조경녹지 및 투수면적 최 대 확보	-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 시가화지역이며, 특별한 식물 상은 없음	-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녹 지 확보	-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 절 · 성토 비율 미비	- 지형을 고려한 건축계획으 로 절 · 성토량 최소화	-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 일부 지역의 단차가 심해 지형 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수위보전	○	- 저층주거지이므로 지하수위 영 향 미비	- 지하공간 최소화	-
	4. 비오톱	3등급	○	- 비오톱유형 평가등급 5등급 - 특별한 식생 분포 없음	- 화단 등의 추가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 준수	-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주거지역으로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미비	- 기존 건축물 개발 규모 유지	-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수립	○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연계 및 홍보	-
		신재생에너지사용	○	- 일부 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
	8. 경관	Skyline 보전	○	- 저층주거지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권 확보	○	- 고층건물 미입지	-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계획 수립	-
		가로녹시율 35%	○	- 현재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가로녹화는 열악한 실정	- 화단조성 및 조경공간의 가로변 조성유도 등을 통해 가로 녹시율 향상	-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 부족	- 공원 및 쉼터공간 개선 등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	-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보차분리된 곳이 있으나 전신주가 보도를 차지해 통행불편	- 보차혼용도로 및 보도를 확폭하여 보행공간 확보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사업대상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 도로 확보 불가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X	- 사업대상지 내 자전거 보관소 전무	-	-
추가	11. 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이하	○	- 향후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12. 폐기물	건설폐기물재활용	○	- 건설폐기물, 폐유 발생 예상	-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하며,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나무둘레(cm)	본수	활용계획	비 고
1	측백나무	250	1	- 단일 수종 국내 최고령 추정(500년 이상) 보호수이며, 그 주변으로 '측백나무 보호수 정자마당' 을 조성되어 있음 - '측백나무 보호수 정자마당' 을 중심으로 공동이용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활용	가리봉동 13-10번지 일대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및 노후 보안등 정비 및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
접근통제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 설치 -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침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 설치	-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썸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통일성 있는 가로시설물 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시설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방법거점 역할 수행을 통한 활동성 강화	-
유지관리	- 도로, 썸지공간, 화단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12) 주거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주민역량 강화	- 사례지답사 및 교육 실시 -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 전문가를 지역재생 활동가로 지정·파견(서울시)	지원조직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공동체 활성화	- 지속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지원조직
	공동체 프로그램	- 한뜻모아 마을 비전/목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 - 구로구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체 활동 추진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조직구성 및 운영규약 작성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예정))	주민공동체운영회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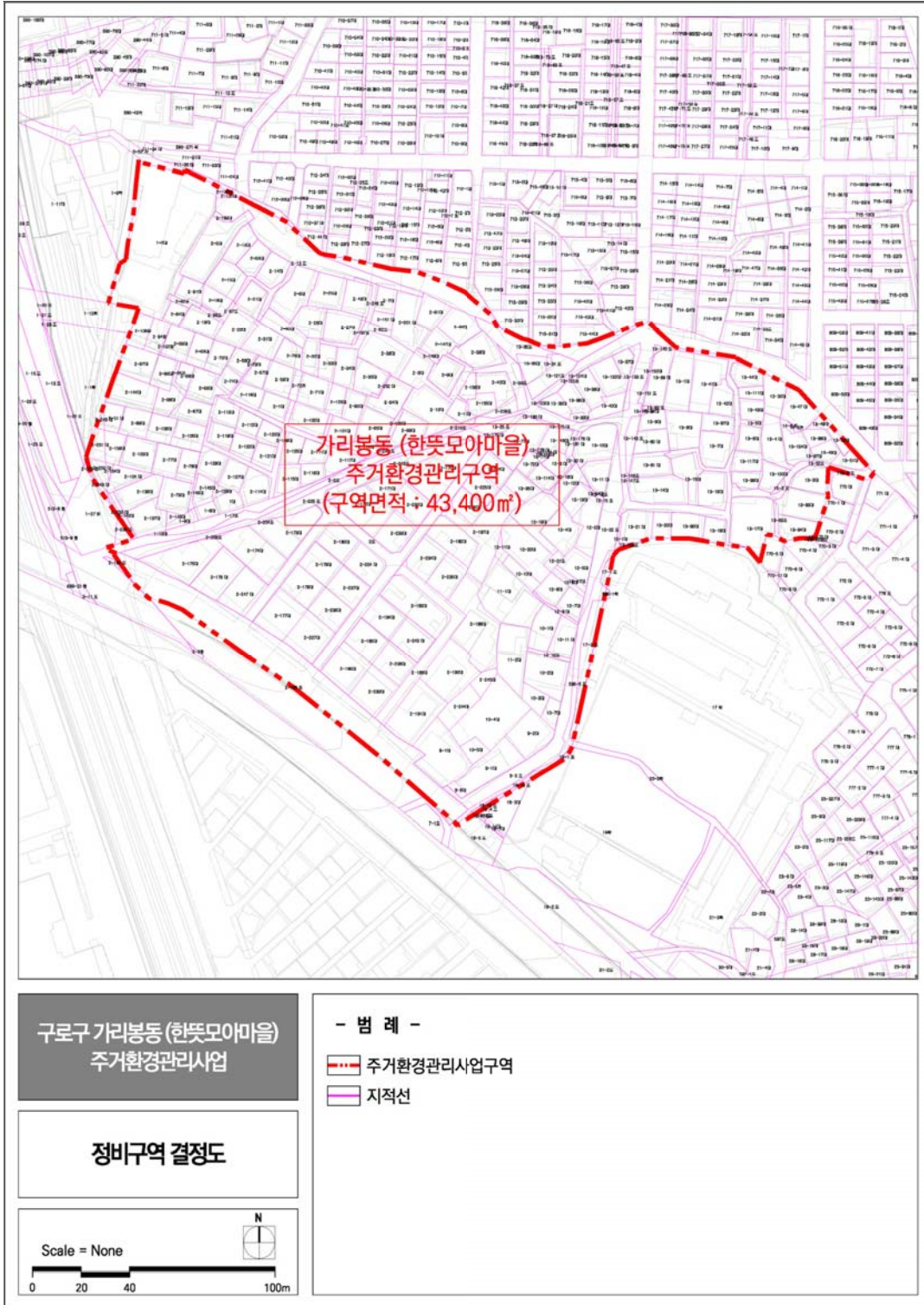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구로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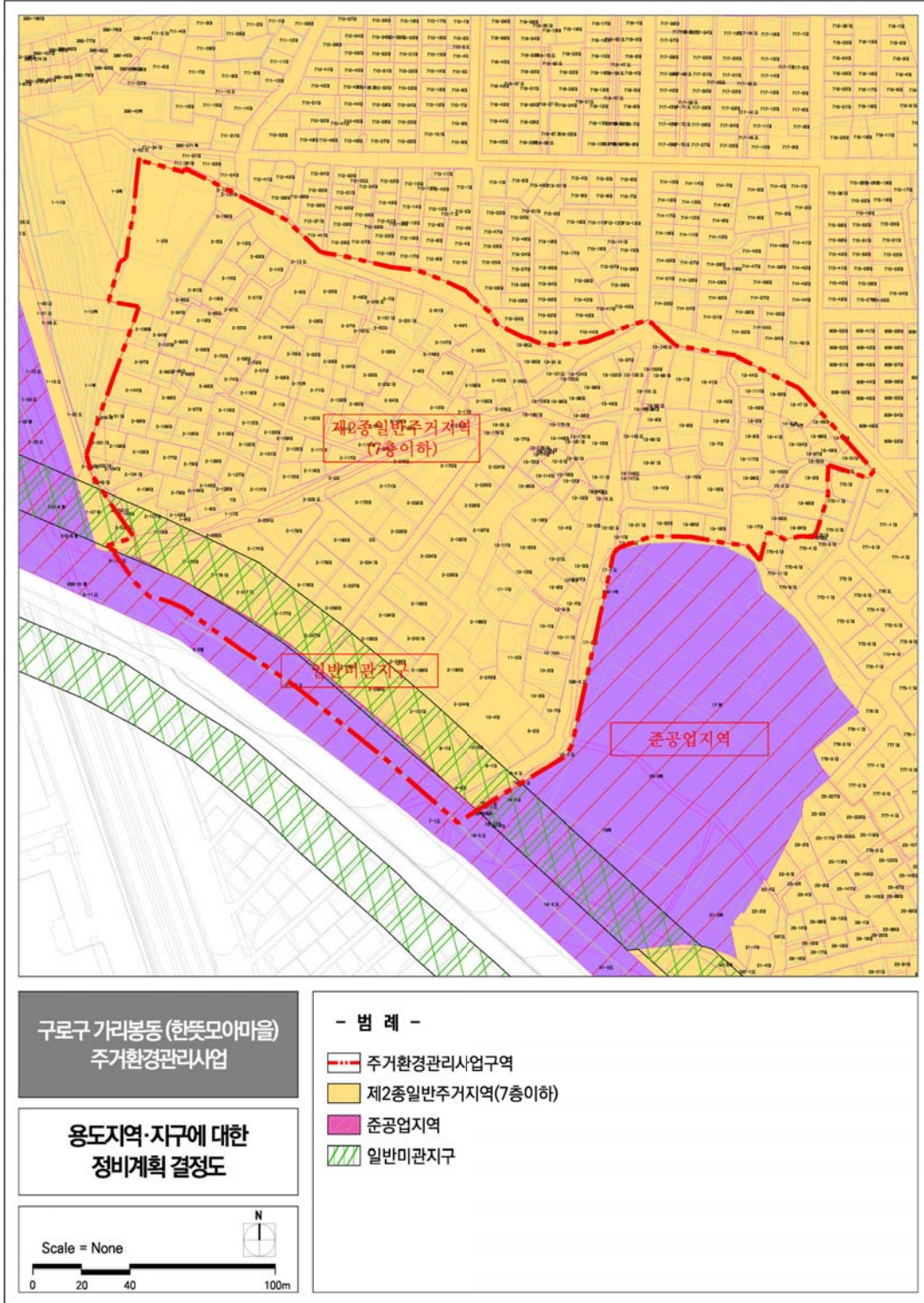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김철기 / ☎ 02-2133-7255)
2) 구로구 도시재생과 (담당자 강남길 / 02-860-2517)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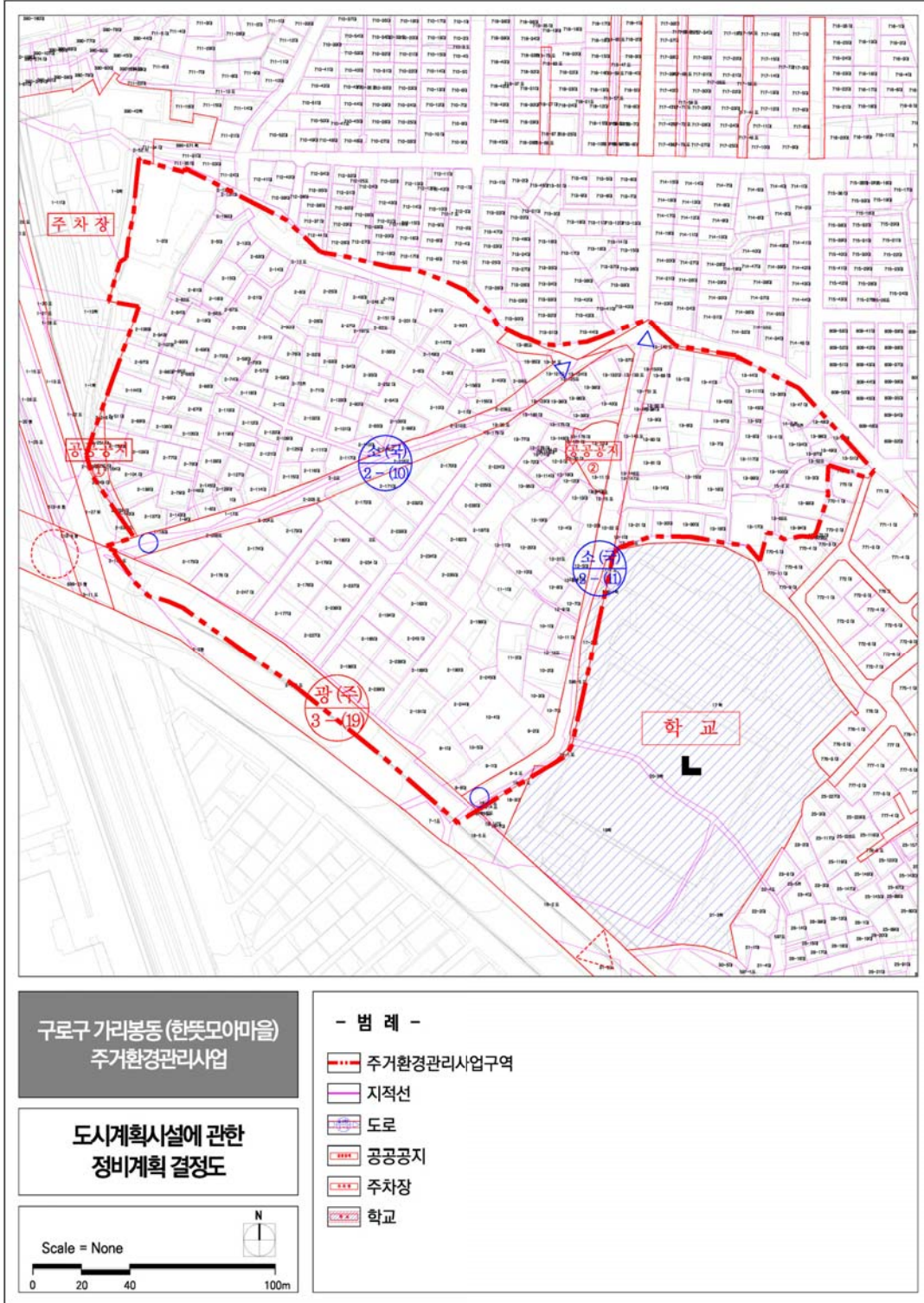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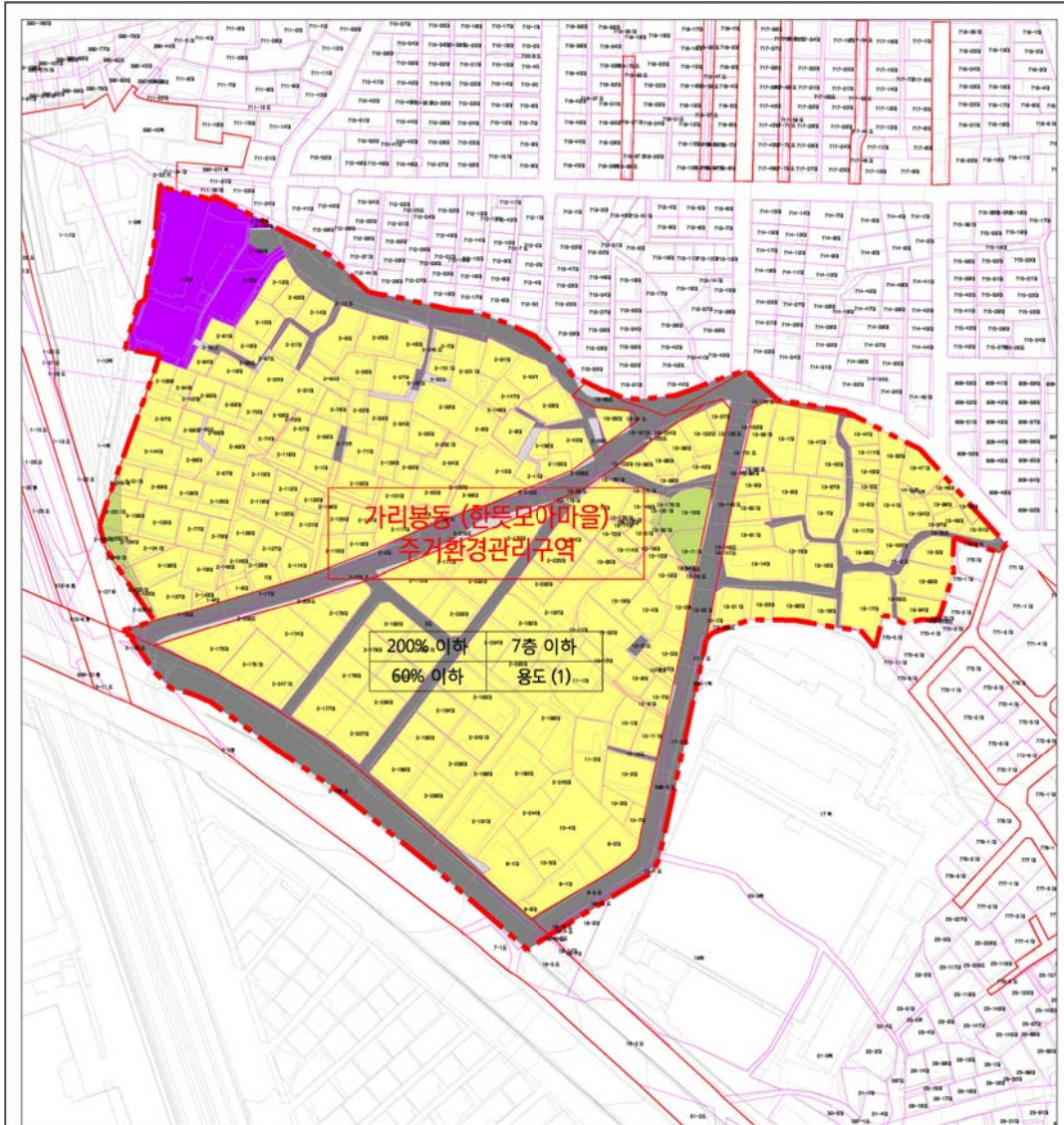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구로구 가리봉동 (한뫼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Scale = None

0 20 40 100m

- 범 례 -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정비기반시설
- 획지
- 도로
- 공공공지

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용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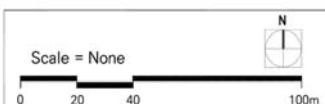
※ 관계법령에 따른
 ※ 용도(1): 허용용도(관계법령에 따른)
 불허용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구로구 가리동 (한뚝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 범 례 -

A 가로환경개선

- A-1 안전한 마을길 조성
 - 교차로 포인트 페이빙 조성
 - 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
- A-2 계단 및 경사로 정비
 - 계단정비
 - 경사로 정비(핸드레일설치)
 -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
 -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B 생활환경개선

- B-1 화단조성
 - 화단조성동의(10개소)
 - 화단조성가능지
- B-2 노후담장 환경개선
 - 담장환경개선동의(9개소)
 - 노후담장
- B-3 주민유틸리티조성
 - 주민유틸리티조성
- B-4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 블랙박스 설치
 - 블랙박스 설치(4개소)
- B-5 하수구악취 및 해충방지
 - 공중선 정비(연계사업)
- B-6 공중선 정비(연계사업)

C 안전 및 범죄예방

- C-1 CCTV정비(도색9개소, 보조카메라 1개소)
- C-2 신규설치(6개소)
- C-3 보안등 정비(90개소) 및 신규설치(3개소)
- C-4 비상벨 설치(5개소)
- C-5 비상소화장치 설치(3개소)

D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 D-1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E 건축물 지원 및 관리

- E-1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 E-2 집수리 안내 지원체계 구축
- E-3 주택관리

※ 상기 정비사업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8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재건축정비에정구역 해제된 저층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	증) 40,446	40,44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0,446	-	40,44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0,339	-	40,339	9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	-	107	0.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자연경관지구	40,273	-	40,273	99.5	
최고고도지구	40,446	-	40,446	100.0	

3)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명칭	기정면적(㎡)	변경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0,446	40,446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5,460	7,267	17.96	
	도로	356	2,163	5.35	도로확폭 L 93m×B 6m=558㎡
	공원	992	992	2.46	
	주차장	298	298	0.74	
	하천	3,814	3,814	9.42	
기타 도로	도로	5,728	4,479	11.07	
	현황도로	221	-	-	현황 약3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등	-	-	-	향후 부지확보 시 설치 예정
택지	택지	28,700	28,700	71.00	
임야	임야	337	-	-	516(임), 산123-13(임)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⑤	8m이하	국지 도로	60	516-88대	516-5대	도시 계획 도로	-	변경 없음
신설	소로	3	④	8m이하	국지 도로	313	516임	516-6대	도시 계획 도로	-	신규 결정

나) 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차장	강북구 수유동 516-34	298	-	298	-	

나) 공원(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어린이공원	강북구 수유동 516-44	992	-	992	-	

다) 하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가오천	지방 하천	수유동 산124	수유동 우이천 합류점	국립 재활원앞 교차로	2.28	-	28,967 (3,814)	2013.1.17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 확정(추후 부지매입 예정)
- 설치계획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에서 결정 예정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기정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40,446	변경없음 (기존 개별 필지)	수유동 516-21 번지 일대	주택 등	30%이하 → 40%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관련법령에 따름

□ 다음 각 호의 경우 건폐율 완화적용

- 단독 주택 건축 시
- 다가구주택(6가구), 다세대주택(6세대), 연립주택(6세대) 미만 건축 시
- 기타용도 : 높이 8m(2층) 이하 건축 시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름

7)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존	구역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풍수해)	투수성 포장제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 등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강북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없음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해당없음	

10)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정비계획결정 이후 주민 10%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예정(강북구청장) - 수유동 인수봉숭길마을 주민공동체운영규약, 주민협정서에 의거 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계획 수립 -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협정서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및 공동체활성화 유도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강북구청(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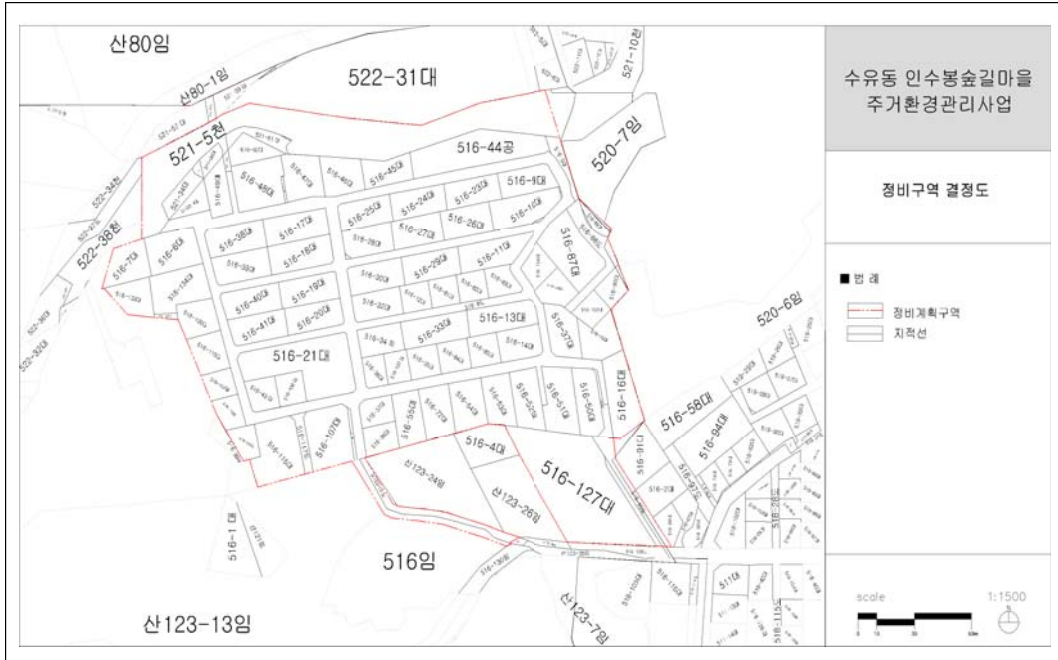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윤영준 ☎02-2133-7254)

2) 강북구청 주택과(담당자 신하형 ☎02-901-6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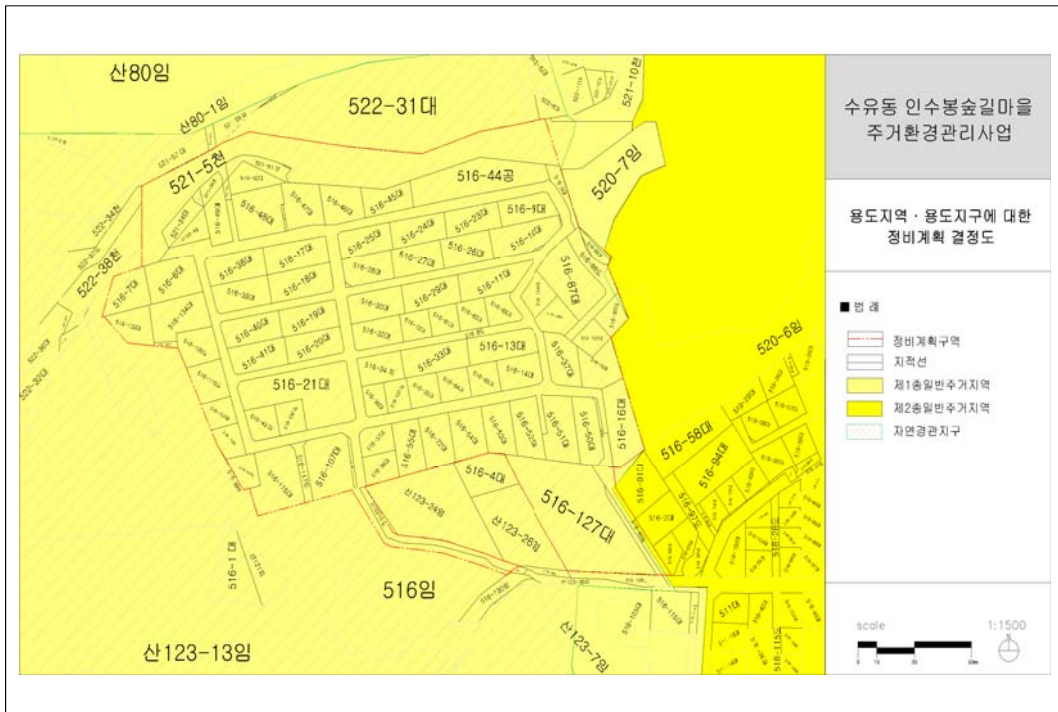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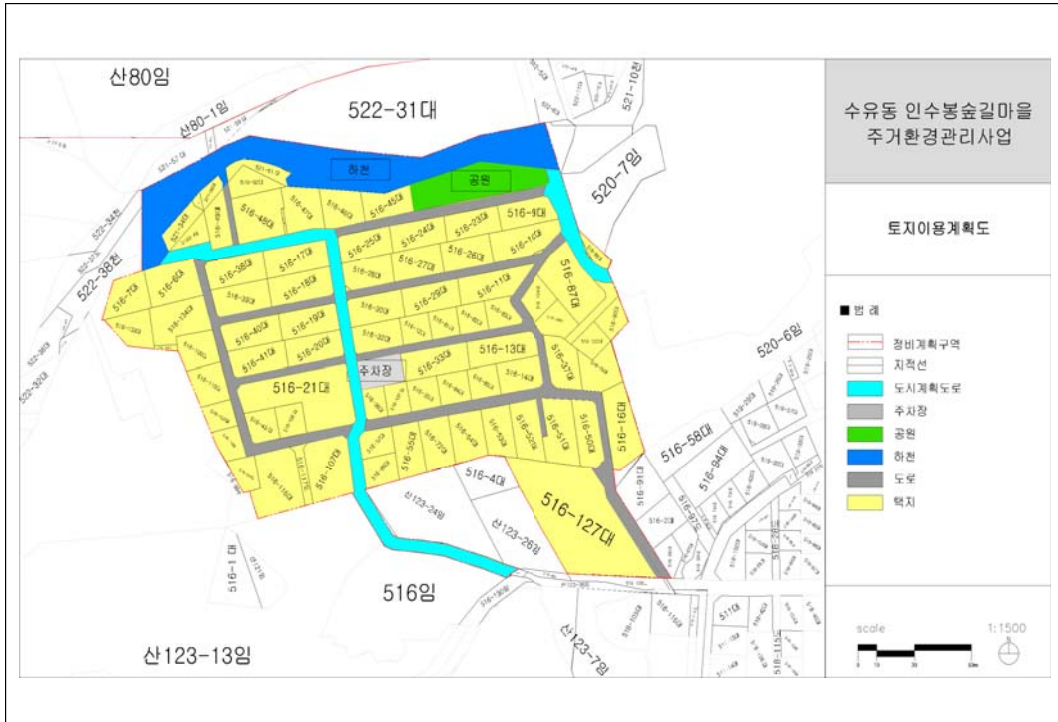
□ 정비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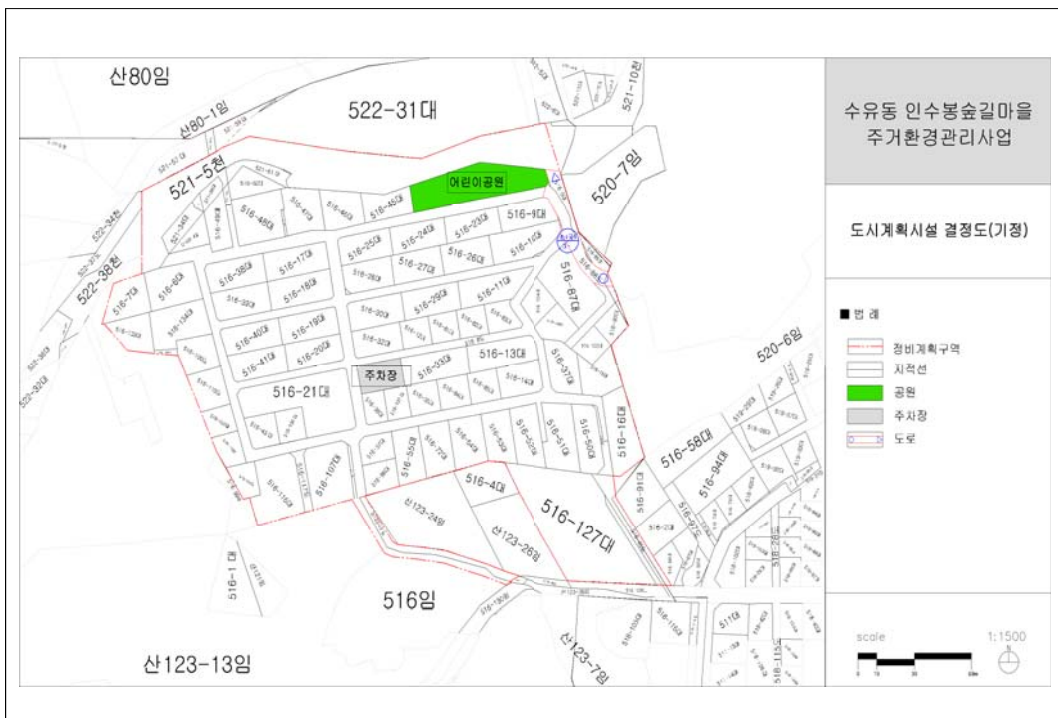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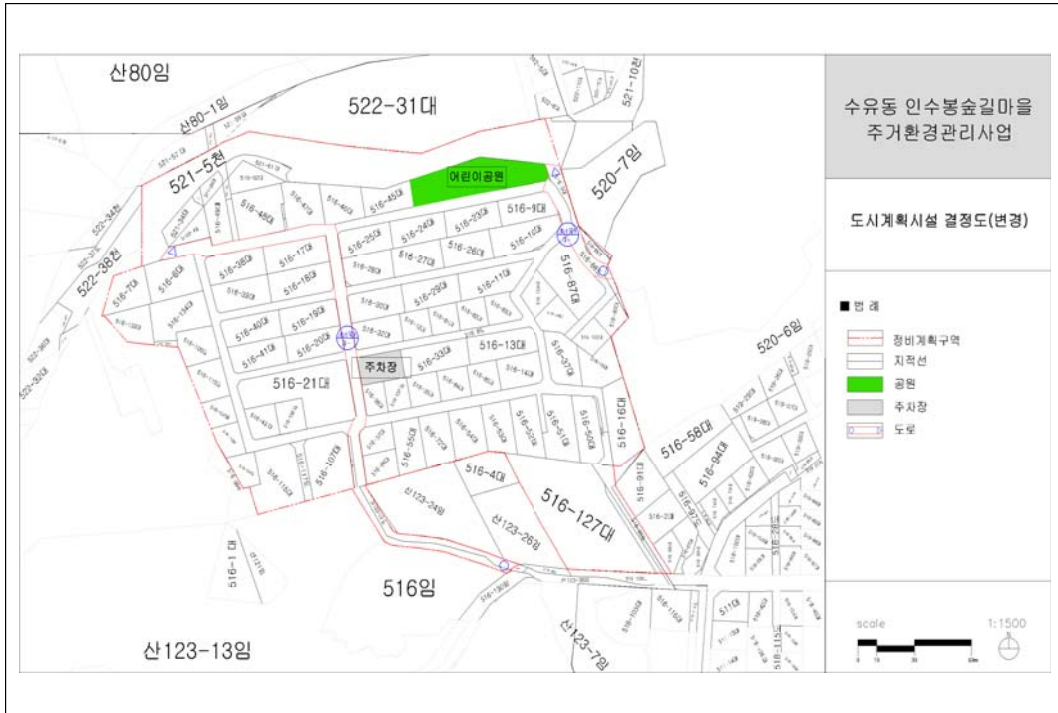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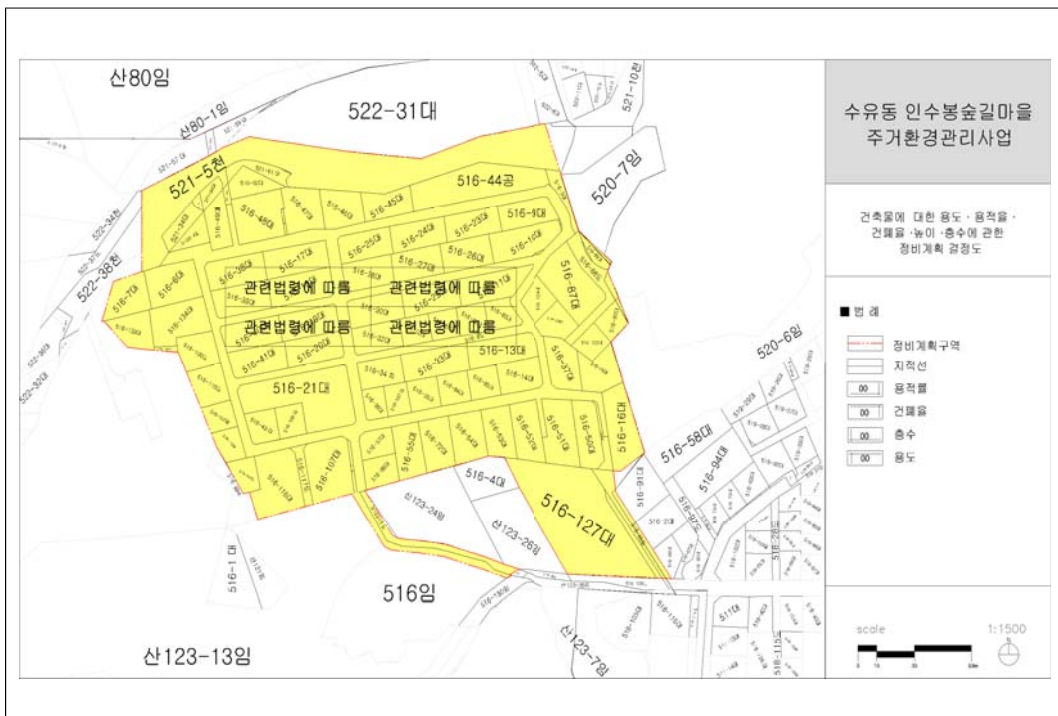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률, 건1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0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변경)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58	(재)아름다운재단 (대표 박종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 공익제보자 긴급 생계 비 및 비영리단체 인프 라, 공익활동사업 지원	300 (현금및물품)	전국	'17.5.30 ~ '17.11.30
						'17.5.30 ~ '18.12.31
2017-49 -2 (변경)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2	- 성소수자 군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50 (100) (현금)	전국	'17.4.26 ~ '17.6.30
						'17.6.30 ~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2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및 복장유물 (興天寺 木造觀音菩薩三尊像 및 腹藏遺物)	3구	보살상:높이 67 무릎 47 용왕상:높이 42.3 어깨 11.5 동자상:높이 34.3 어깨 9.8	1701년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흥천사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및 복장유물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중앙의 관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왕과 선재동자가 협시하고 있는 삼존 형식이다.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조성발원문을 통해 1701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가가 확인되는데, 원래 전라북도 임실 사자산 적조암에서 제작한 것을 언젠가 흥천사로 옮긴 것이다. 용왕과 선재동자를 협시로 한 삼존 형식은 수월관음도에 적지 않게 보이지만 조각의 경우에는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1655년, 조각승 혜희),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삼존불감(경남유형문화재 제575호), 운흥사 목조불감(1670년)을 제외하면 그 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불교조각사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닌다.

복장유물은 후령통, 주서와 묵서 다라니 등 총 9건(633점)으로, 수습한 불서들은 임란 이후 간행되었고, 현전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일괄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목록은 붙임 「조사보고서」 참조)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과 복장유물은 조성시기가 명확하고 그 예가 드문 관음·용왕·선재동자의 삼존상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불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2241-2653 ② 팩스 : (02) 2241-6536
- ③ 우편 :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및 복장유물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중앙의 관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왕과 선재동자가 협시하고 있는 삼존 형식이다. 중앙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화려한 보관을 쓴 조선 후기의 보살상이다. 양 손을 비롯해 보관에 이르기까지 손상된 곳 없이 잘 남아있다. 특히 보관은 5개의 화염문과 좌우로 매달린 관대(冠帶), 그리고 중앙의 화불(化佛)에 이르기까지 완전하다. 안정된 신체비례를 지녔으며, 방형의 얼굴은 신체에 비례해 작은 편이며, 이목구비가 단정하다. 미간 사이에는 얼굴 크기에 비례해 크기가 큰 백호가 있다. 보살의 머리카락은 귀를 타고 내려와 어깨 위로 늘어졌다. 손은 양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 손바닥 위에는 정병이 놓여 있다. 가사가 넓게 벌어져 가슴이 많이 드러나 있고,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옷자락은 넓고 길게 늘어져 그 끝은 엉덩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점은 다른 상과 차이가 있다.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있다. 현재는 조성발원문을 다시 납입하여 조사 당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초 조사 당시 촬영한 복장발원문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다. “全羅道任實縣治北獅子山寂照庵觀音聖尊腹藏 發願文 時維歲次康熙四十年辛巳…”로 시작하는 이 발원문을 통해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01년 전라북도 임실 적조암에 봉안됐던 관세음보살상이며, 5명의 조각승이 힘을 합해 이 보살상을 제작했음이 밝혀졌다. 수조각승은 법잠(法岑)이며, 함께 작업한 조각승은 계초(戒楚), 진열(振悅), 성인(性印), 수오(守吾)이다. 어떤 연유로 전라도 임실 적조암의 관음보살상이 이곳 홍천사로 이운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말기에 전국 각지의 폐사 문화재들이 왕실과 관련된 서울 인근의 사찰로 이안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수조각승 법잠은 현재 다른 작품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다만 1688년 완주 대원사 명부전 시왕상 조성에 수조각승으로 등장하는 도잠(道岑)이 계초(戒初)와 진열(震悅)과 같이 작업하여 법잠과 도잠은 선후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도잠은 1659년 고흥 금탑사 지장보살상 조성에도 참여하여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활동한 계초, 진열보다 연배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좌우 협시로 용왕상과 선재동자상이 함께 조성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관음보살상의 왼쪽에 용왕이, 오른쪽에 선재동자가 서있다. 이처럼 관음보살상 좌우로 용왕상과 선재동자상이 위치하는 경우는 수월관음도에 적지 않게 보이는데, 특히 불화로써는 의견이 그런 1730년 운흥사 수월관음도(쌍계사성보박물관), 1901년 연화사 수월관음도 등이 있다. 조각으로는 1655년에 혜회가 만든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17세기 중반 경남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삼존불감(경남 유형문화재 제 575호), 1670년 운흥사 목조불감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2,3 참조). 이처럼 용왕상과 선재동자상이 좌우 협시로 조성된 관음보살상은 그 예가 드물어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관음상 복장에서 수습한 불교전적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2종으로 불복에 납입할 당시 분책한 상태로 시납하였기 때문에 낱장 상태이다. 2종의 간략한 서지정보는 아래와 같다.

- 1) 대자본계통-- [1634년 전라도 순창 복천사본] 1책(권1)
- 2) 갑인자계통-- 1665년 경상도 안음 영각사본 1책(권1,2,5,6,7)

상기 2종 가운데 한 종은 권7의 말미에 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1665년에 경상도 안음의 영각

사(靈覺寺)에서 간행한 불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간기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자의 조사파일과 비교해 본 결과 1634년 전라도 순창의 복천사(福泉寺)에서 간행된 불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기 2종은 임난 이후에서 복장이 조성된 1701년 사이에 간행된 전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붉은 비단에 싸인 후령통, 대불정수능엄신주다라니(大佛頂首楞嚴神呪陀羅尼), 주서와 묵서 다라니, 보협진언(寶篋真言)이 함께 수습되었다.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을 통해 1701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가 확인된 작품이다. 이를 통해 이 상이 원래 전라북도 임실 사자산 적조암에서 제작한 보살상이며, 언젠가 이곳 홍천사로 옮겨졌음이 밝혀졌다. 이 보살상을 제작한 조각승 법잠은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 도잠과 선후배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는 조선후기에 널리 알려진 조각승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그의 작품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좌우 협시로 용왕과 선재동자상이 함께 한 경우 역시 그 유례가 많지 않은데, 1655년에 혜회가 만든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1670년 운흥사 목조불감 등 적은 수량이 남아있다.

관음상 복장에서 수습한 이들 불서는 임난 이후에 간행되었고, 현전본이 비교적 여러 부수가 남아 있어 별건으로 지정 관리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의견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처럼 홍천사 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상과 관련된 문자 기록이 보존 상태도 좋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복장유물

순번	명칭	크기 (가로×세로, cm)	수량	사진
1	후령통	2.5(지름) × 15(높이)	1	
2	발원문	189 × 38.5	1	
3	묘법연화경 서	21.2 × 31.5	60	
4-①	묘법연화경 제1권	21.5~22 × 33	77	
4-②	묘법연화경 제2권		80	

순번	명칭	크기 (가로×세로, cm)	수량	사진
4-③	묘법연화경 제3권		53	
4-④	묘법연화경 제4권		70	
4-⑤	묘법연화경 제5권		69	
4-⑥	묘법연화경 제6권		65	
4-⑦	묘법연화경 제7권		60	

순번	명칭	크기 (가로×세로, cm)	수량	사진
5	묵서다라니	세부 43.5 × 24.5 전체 43.5 × 74.5	11	
6	다라니	36~40 × 44~47	73	
7	보협진언 (후령통 싸개)	43 × 22.5	2	
8	보협진언	45 × 75.5	2	
9	대불정수능엄신 주다라니	46 × 26	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23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민속문화재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唐人洞 府君堂 巫神圖)	8점	일괄 110×66	20세기 초	마포구 당인동 15-4 (당인리부군당보존회)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당인동 부군당의 무신도 8점은 양식과 도상, 채색방식으로 보아 한 명의 화승에 의해 20세기 초에 일괄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탕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존격들의 얼굴은 맑고 원만하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 탕화에 유행하던 레이스 모양의 꽃무늬 띠 문양이 옷깃과 소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대기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일부 탕화에 보이는 다양하면서 정련된 색감의 배치가 나타난다.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지장시왕탱이나 현왕탱과 같은 명부(冥府) 계통의 탕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져 있다.

도상의 존명도 무신도로는 흔치 않게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여 있으며, 예서체와 비슷한 글씨로 반듯하게 격이 있게 쓰여 있고 낙관을 찍듯 도상의 위치를 고려해 묵서하였다.

당인동 부군당의 무신도는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서울지역 무신도들 가운데 제작시기가 앞서며 무신도로는 보기 드문 화려한 색채감과 정치한 회화성을 지니고 있어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마포구청 문화진흥과

① 전화 : (02) 3153-8372 ② 팩스 : (02) 3153-8399

③ 우편 :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현존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배접상태가 족자에서 액자로 바뀌면서 구김 및 박리,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전체적으로 화면 상태는 양호하나 원래의 흰색바탕에 칠해진 은색[銀粉] 개채로 인해 화면이 많이 왜곡되었고, 존명의 글씨 부분에도 인위적인 방제 모양이 남아 있다.

※ 그림배경은 15년 전(소유자 의견)에 덧칠을 하였는데 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무신도의 제작연대는 양식적 특징으로 보면, 20세기 초에 활발히 활동하던 한 명의 화승에 의해 일괄로 제작된 것이다. 전통적인 탕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무신도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상적인 창의성이 접목됐다. 화승이 그렸음에도 용궁부인에는 여의주로 청룡을 제압하는 해학적인 장면이 표현되어 있고, 삼불제에는 원근법에 기반한 매우 감각적인 구름 배치가 드러나 있으며, 신선은 정치한 한 폭의 도석인물화와 같고, 부군주와 부군부인은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따라 존격이 표현됐으며, 대장군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무신도 도상에 나타나는 교상(交牀)에 앉아 있고 화려한 비단 문양과 더불어 망건에 걸린 패영의 정교한 금고리 장식이 돋보인다. 이들 무신도를 양쪽에서 수호하는 좌제장군과 우제장군은 비교적 현실적인 얼굴표현에 덕장의 풍모가 잘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존격들의 얼굴은 맑고 원만하며,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 탕화에 유행하던, 레이스 모양의 꽃무늬 띠 문양이 옷깃과 소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대기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일부 탕화들에 보이는 다양하면서 정련된 색감의 배치가 나타난다. 화면의 색은 채도가 낮은 연녹색, 다자색 등에 청색과 주홍색을 대비적으로 설채했다. 여기에 금박을 비롯해 황토색과 노란색을 특징적으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다양하면서 화려하고 담채와 같은 명징함도 있다.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정교한 기하학적인 문양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지장시왕탱이나 현왕탱과 같은 명부(冥府) 계통의 탕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식 문양이다.

또한 도상의 존명도 무신도로는 흔치 않게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여 있다. 예서체와 비슷한 글씨로 세로로 반듯하게 격이 있게 쓰여 있고, 낙관을 찍듯 도상의 위치를 고려해 묵서(墨書)하였다.

당인동 부군당의 무신도 8점은 기년명이 없어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식과 도상적 특징으로 보면,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화승이 그린 무신도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서울지역 무신도들 가운데 제작시기가 앞서며 또한 무신도로는 보기 드문 화려한 색채감과 정치한 회화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요 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좌제장군(110×66)



용궁부인(110×66)



삼불제(110×66)



산신(110×66)



부군주(110×66)



부군부인(110×66)



대장군(110×66)



우제장군(110×6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4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와이티개발	윤귀옥	2017.04.20	서울170045	강남구테헤란로52길6,606호 (역삼동,테헤란로오피스빌딩)	300,000	신규등록
2	리안월드(주)	서동주	2017.04.20	서울170046	강남구언주로625,10층 (논현동,선민빌딩)	500,000	신규등록
3	이에스개발(주)	유수경	2017.05.08	서울170048	송파구송파대로111,202동씨1827호 (문정동,송파파크하비오피스텔)	300,000	신규등록
4	유진건설산업(주)	오정석	2017.05.08	서울170049	강서구수명로72,401호 (내발산동,발산신성프라자)	510,000	신규등록
5	(주)유니크플래닝	이동우	2017.05.08	서울170050	중랑구 동일로101길 56, 3층(면목동)	300,000	신규등록
6	(주)덕성에프앤비	김삼범	2017.05.12	서울170051	성동구 아차산로 168 (성수동2가)	300,000	신규등록
7	(주)원포올디앤씨	조정훈	2017.05.15	서울170052	강남구 언주로 551, 9층 (역삼동,프라자654빌딩)	300,000	신규등록
8	해가온건설(주)	박종만	2017.05.17	서울170054	동작구 상도로15길 103, 2층(상도동)	510,000	신규등록
9	(주)어반코리아	지희성	2017.05.19	서울170055	광진구자양로4길15,301호 (자양동,양자빌딩)	300,000	신규등록
10	(주)코리아디앤씨	박우상	2017.05.19	서울170056	강동구 천호대로 1082, 503호(성내동)	300,000	신규등록
11	(주)상우산업개발	박우상	2017.05.19	서울170057	강동구 천호대로 1082, 503호(성내동)	300,000	신규등록
12	(주)현강종합건설	이강종, 조영익	2017.05.23	서울170058	영등포구선유로3길10,12층1202호 (문래동5가,하우스디비즈)	5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3	(주)상우 디벨럽먼트	박우상	2017.05.29	서울170059	동작구상도로315,4층 (상도1동,상정빌딩)	300,000	신규등록
14	코스마포 피에프브이(주)	정경호	2017.05.29	서울170060	강남구선릉로801,604호 (신사동,배강빌딩)	5,000,000	신규등록
15	(주)프리즘 파트너즈	김성준	2017.05.29	서울170061	강남구 테헤란로 311, 1521호(역삼동)	1,000,000	신규등록
16	(주)두레에셋	이대성	2017.05.01	서울170053	금천구가산디지털1로128,1407호 (가산동,엑스티엑스브이타워)	1,000,000	전입등록 (대구시)
17	(주)원도사건축 건축사사무소	이은규, 허서구	2017.05.29	서울100005	강남구 도산대로1길 17(신사동)	전문인력부족	폐업
18	헥스파워 시스템(주)	김경선, 김상성	2017.05.24	서울150061	구로구디지털로33길11,1108호 (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사업종료	폐업
19	(주)아이앤비개발	이정현	2017.05.23	서울150078	광진구능동로280,2층 (능동,제이에스빌딩)	사업종료	폐업
20	마곡통합조합프로젝 트금융투자(주)	유영식	2017.05.17	서울130044	송파구 백제고분로 175, 3층(잠실동)	사업종료	폐업
21	(주)태림디앤아이	김명현, 김지은	2017.05.15	서울140042	서초구서초대로67,8층2호 (방배동,성령빌딩)	사업종료	폐업
22	(주)엘5에이엠씨	이호규	2017.05.15	서울160041	마포구 백범로 119, 5층(염리동, 원빌딩)	사업종료	폐업
23	(주)크리에드컴	이환중	2017.05.10	서울080256	강남구 강남대로 362(역삼동)	사업종료	폐업
24	동광종합토건(주)	이명규, 이신근	2017.05.02	서울100108	강서구 강서로 406(등촌동)	사업실적없음	폐업
25	(주)비스타케이	이병주, 김인길	2017.05.18	서울150046	강남구남부순환로2704,2층 (도곡동,세화빌딩)	300,000	전출 (수원시)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4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광호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55 ****동***호(조례동, **아파트)	일시: 2017.03.22. 06:51 장소: 용산구 한남동 남산1호터널앞 한남 제2고가(20톤) 내용: 총중량 23.95톤(3.9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4.26. 납기일: 2017.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우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30 ***호 (신림동, **빌라트)	일시: 2017.01.07. 10:14 장소: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삼거리 어울림아파트앞 내용: 축하중 11.8톤(1.8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2.27. 납기일: 2017.04.30.
신현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64 ***동 ****호(사리현동, **아파트)	일시: 2017.01.09. 09:22 장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271 이노력스빌아파트앞 내용: 축하중 11.6톤(1.6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2.27. 납기일: 2017.04.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

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50호

차량의 운행제한 변경공고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77조 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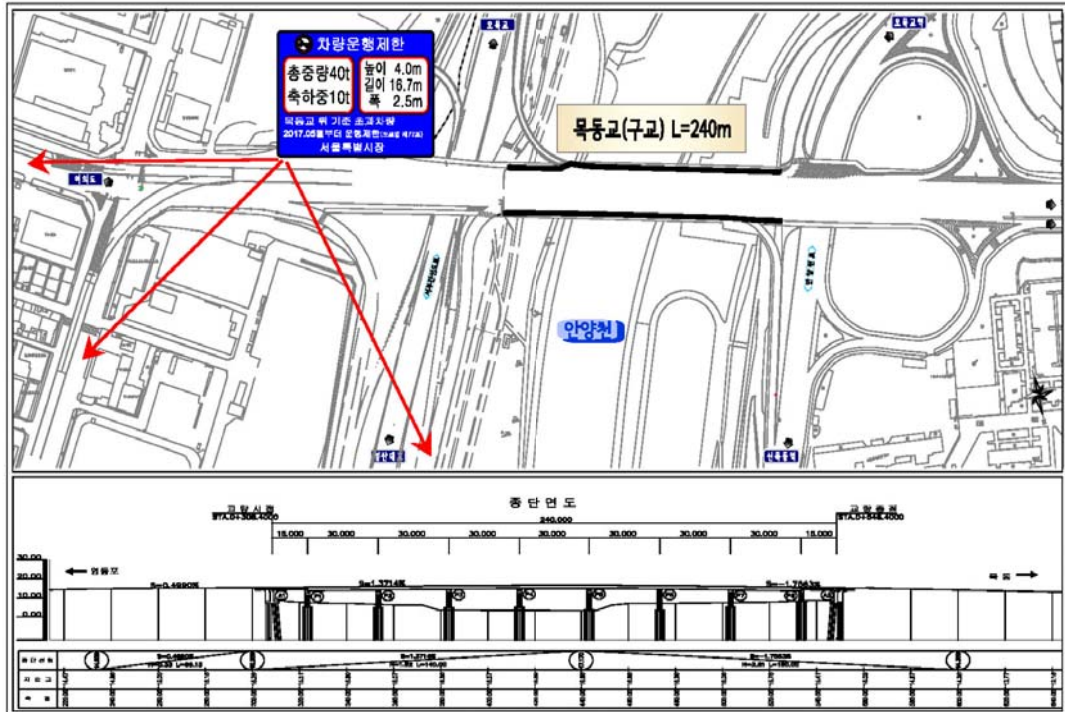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도 로 의 종 류	서울특별시도	
노 선 명	국회대로 목동교	
제 한 의 대 상	변경 전	변경 후
	○ 총중량 32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제원 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 (건설기계 포함) ○ 목동교에서 안양천로에 연결되어 진출되는 램프는 기존과 같이 32톤으로 제한

구 간	시설물명	목동교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목동174) ~ 영등포구 양평동(양평동 57) (※ 목동교 구교 신월IC방향)
	규 모	○ 폭 20M(5차로), 연장 240M
기 간	2017. 6. 8. 00시 ~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 방지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결과 DB-24를 상회함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657-7922)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02-3708-2579)	
위 치 도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에 도면 비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도면 비치	

■ 목동교 노선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5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종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동****호 (영천동)	일시 : 2017.05.15 15:33 장소 : 경기 고양시 현천동 자유로 일산방면 난지하수처리장 버스정류장 앞 내용 : 폭 2.81m, 0.31m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자진납부액:4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2017. 07. 01.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203(상암동)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6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699	2017.5.16.	(주)소너텍 양주현 110111-47476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층 507호(구로동, 이앤씨벤처 드림타워6차)
2	202700	2017.5.16.	(주)동신정보통신 임춘섭 110111-6295938	서울 도봉구 방학로 192, (방학동, 유성빌딩)
3	202701	2017.5.17.	(주)퍼니포커스 김환영 110111-6278893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18, 13층 1324호(성수동2가, 성수 아카데미타워)
4	202702	2017.5.17.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주영걸 110111-6363850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5	202703	2017.5.17.	(주)그리드컴 홍일표 110111-5 4 4 0 0 8 9	서울 용산구 후암로 32, 3층(후암동, 현석빌딩)
6	202704	2017.5.19.	(주)에이엠네트웍스 서정희 110111-455854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비-403(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7	202705	2017.5.19.	(주)와이정보 이동철 285011-0232136	서울 은평구 증산로 325, 401호(증산동, 유니온빌딩)
8	202706	2017.5.22.	(주)한세스 유기현 110111-0931603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44, 303호(성수동2가, 우영테크노센터)
9	202707	2017.5.22.	(주)명지시스템 이원경 110111-4 8 9 9 8 3 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18호(적선동, 광화문플래티넘)
10	202708	2017.5.22.	(주)제이와이정보통신 송치현 110111-590318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5, 1층(한강로1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1	202709	2017.5.22.	(주)실로아이앤씨 서정호 110111-633744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318호(구로동,한신아이티타워)
12	202710	2017.5.22.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신원철 110321-0044435	서울 중구 필동로8길 50-10, 지층(예장동)
13	202711	2017.5.24.	(주)보문테크닉스 김영찬 110111-468208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105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14	202712	2017.5.24.	(주)인투에스 남기용 110111-4173376	서울 동작구 등용로4길 139, 1층(대방동,케이티동작지사)
15	202713	2017.5.24.	(주)켓츠텔레콤 안승수 124611-024050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203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8차)
16	202714	2017.5.26.	(주)알엠소프트 최광훈 110111-4 7 3 8 5 3 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607호(가산동,벽산디지털밸리6)
17	202715	2017.5.26.	이트론(주) 노성혁 110111-1803976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1203호(가산동,디지털엠피어)
18	202716	2017.5.26.	(주)디앤와이코리아 손경탁 110111-4 7 1 4 2 8 7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206호(성수동2가,에이팩센터)
19	202717	2017.5.26.	(주)태마루 정규식 110111-332435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에이1208호,에이1209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20	202718	2017.5.29.	(주)에이치에비뉴앤컴퍼니 이문희 110111-2542523	서울 종로구 사직로12길 21, (내자동)
21	202719	2017.5.29.	라운위즈기술(주) 류충희 110111-3562405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4, 506호(서초동, 강남미래타워)
22	202720	2017.5.29.	(주)에이바이트 나성일 110111-604412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9길 53, 2층(잠원동, 삼우빌딩)
23	202721	2017.5.31.	(주)시큐런스 모철민 110111-3604091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에이동 603호(가산동, 갑을 그레이트밸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6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7.05.02.	350016	(주)에스제이링크 오석주 110111-5940196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비즈니스타워5층(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2	2017.05.23.	202444	(주)노루기반 조영천 110111-531697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0층(양재동, 에이티센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120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28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예산담당관)	1829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30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31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예산담당관)	1836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총무과)	1837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정보화담당관)	1838
8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평생교육과)	1839
9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체육건강과)	1840
1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1841
1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42
12	학교(기관)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43
1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844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8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5-427호(2005.12.29)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종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각자바위 상부 보존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보존구역 밖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 도로계획선 변경에 따른 인접 월암공원부지 저촉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원석축 철거가 불가하여 소로 2-102호선과 근린공원 중복구간에 대해 향후 공원과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중복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송월동 1-44	10,662	-	10,662	서울시고시 제2005-427호 (2005.12.29.)	도로(소로2-102)와 중복결정 (면적 231㎡)

(가)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 일부구간 도로와 중복결정 - 면적: 231㎡	• 근린공원과 도로를 중복결정하여, 공원내 보행 공간 조성 및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7.5~9.5	국지도로	309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근린공원① 과 중복결정 (면적231㎡)

주) 금회 결정은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연장(104m) 및 면적(231㎡)에 한함

(가) 도로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02	일부구간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면적: 231㎡	근린공원과 도로를 중복결정하여, 공원내 보행공간 조성 및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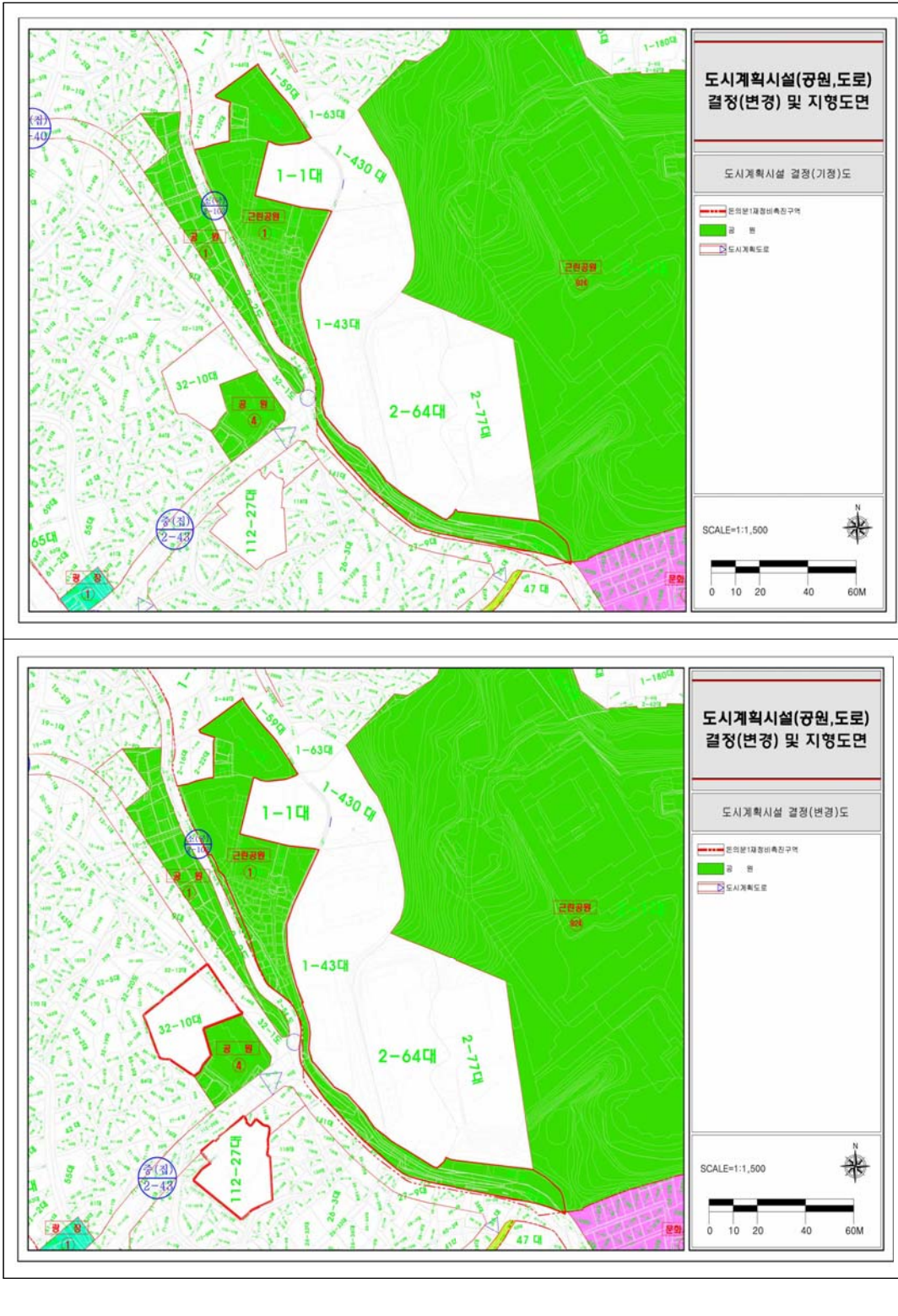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92, 2663) 및 토지정보과(☎02-2148-291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중구고시 제2017-4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필동2가 59-4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중 구 청 장

1. 결정사유

- 대상지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1명소 사업 중 필동을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 중인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하나로
- 골목길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애대학문화거리를 필동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필동2가 59-4 일대	-	증)315.0	315.0	-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도(중구청 공원녹지과 및 도심재생과에 비치)

4. 기타 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73) 및 도심재생과(☎02-3396-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7-88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 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780호(1980.5.26.)로 지적승인 된 경의제2녹지와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429호(2017.4.4.)로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등 3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5,0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대문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 조서상의 물건은 현황 측량한 철거될 지장물로 보상 시 물건의 종류와 면적이 조서상의 물건 및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 및 건물 보상, 녹지조성 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32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대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5	대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4-2	구	40.7	40.7	국토교통부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3	도로	13.2	13.2	기획재정부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4	대	36.7	36.7	기획재정부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4	대	40	40	기획재정부				
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9	도로	75	66	국유지				
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4	도로	79.9	54	시유지				
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도로	174.9	71.88	국토교통부				
1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철	5,961	3,468.18	국토교통부				
1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5	철	30.7	7.7	국토교통부				
1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4	철	91.9	91.9	국토교통부				
1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3	철	80.7	80.7	국토교통부				
1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2	철	57.5	57.5	국토교통부				
1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1	철	55.2	55.2	국토교통부				
1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0	철	48.6	48.6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9	철	36.4	36.4	국토교통부					
1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8	철	43	43	국토교통부					
1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7	철	53.9	53.9	국토교통부					
2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6	철	82	82	국토교통부					
2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5	철	37.4	37.4	국토교통부					
2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4	철	6	6	국토교통부					
2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3	철	7.9	7.9	국토교통부					
2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2	철	51.9	51.9	국토교통부					
2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6	구	59.7	5	시유지					
2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3	철	47.1	10	시유지					
2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3	철	939.2	383.54	국토교통부					
2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9	철	42.6	42.6	국토교통부					
2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8	철	35.7	35.7	국토교통부					
3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7	철	15.9	15.9	국토교통부					
3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6	철	14.2	14.2	국토교통부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5	철	3.6	3.6	국토교통부					

○ 건물(지장물) 현황 : 6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상황	건축물관리대상 면적 (㎡)	현황측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8-11	주택/점포	목조	주택/ 점포(공감)	32.23	69.5	권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0다길 72 (삼선동1가)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4	세입자 (점포)	확대보 상심의 대상
		장독대	콘크리트	장독대	-	12						
2	서대문구 홍정로3가 155-5	점포 (화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화집)	39.6696	110.6	신문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17번길 28, 202호(내유동, 용진빌)	양금순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홍정로3가 155-5	세입자 (점포)	
3	서대문구 홍정로3가 143-2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칠길떡볶이)	-	39.7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3가 143-2				
4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점포 (칠물점)	목조	점포 (신성종합상사)	49.587	67.9	홍준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65, 1513호 (다가동, 아트빌아파트)	신진철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홍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5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점포 (고물상)	목조	점포 (고물상)	79.3392	(미측량)	최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3가 150번지	오성철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홍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6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가건물 (주차관리)	콘테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	3.2	등아 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9				

○ 영업권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1	영업권	공감	점포 (음식점)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현동 699-4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영업권	세메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영업권	세메조	점포 (음식점)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묵조	점포 (철물점)	신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묵조	점포 (고물상)	오성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콘텐츠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양천구고시 제2017-38호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6-123호(1996.4.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3-437호(2003.4.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17년 제2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017.05.24)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양 천 구 청 장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고 구역계의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자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76-1번지 일원	138,665.9	감)1,421.2	137,244.7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지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지 역	계	138,665.9	137,244.7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303.1	112,881.9	감)1,421.2
	자연녹지지역	24,362.8	24,362.8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불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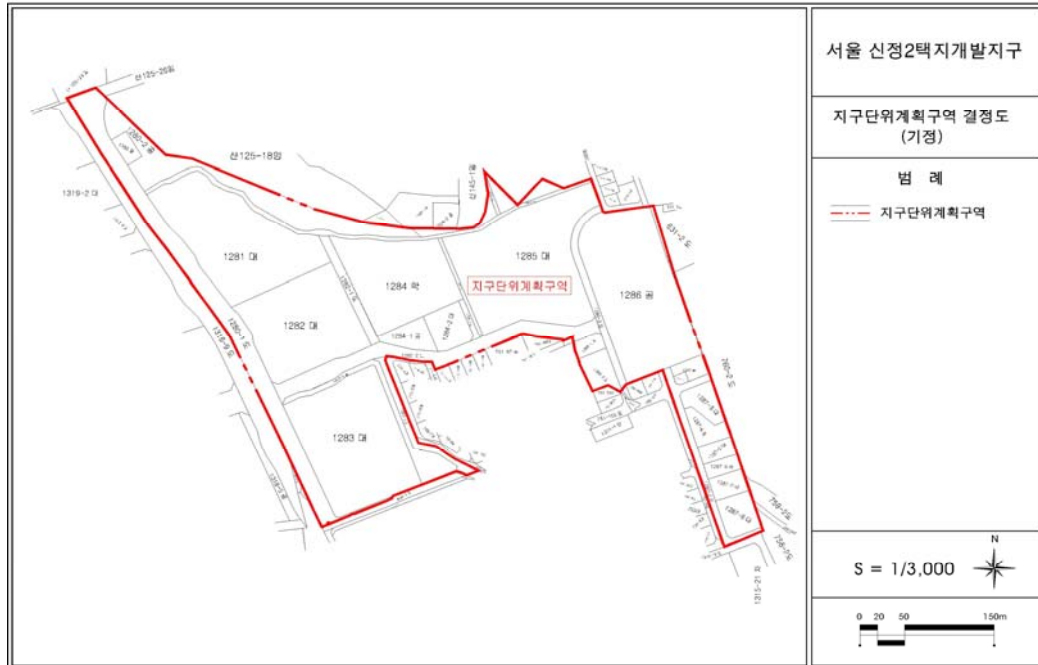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02-2620-3513)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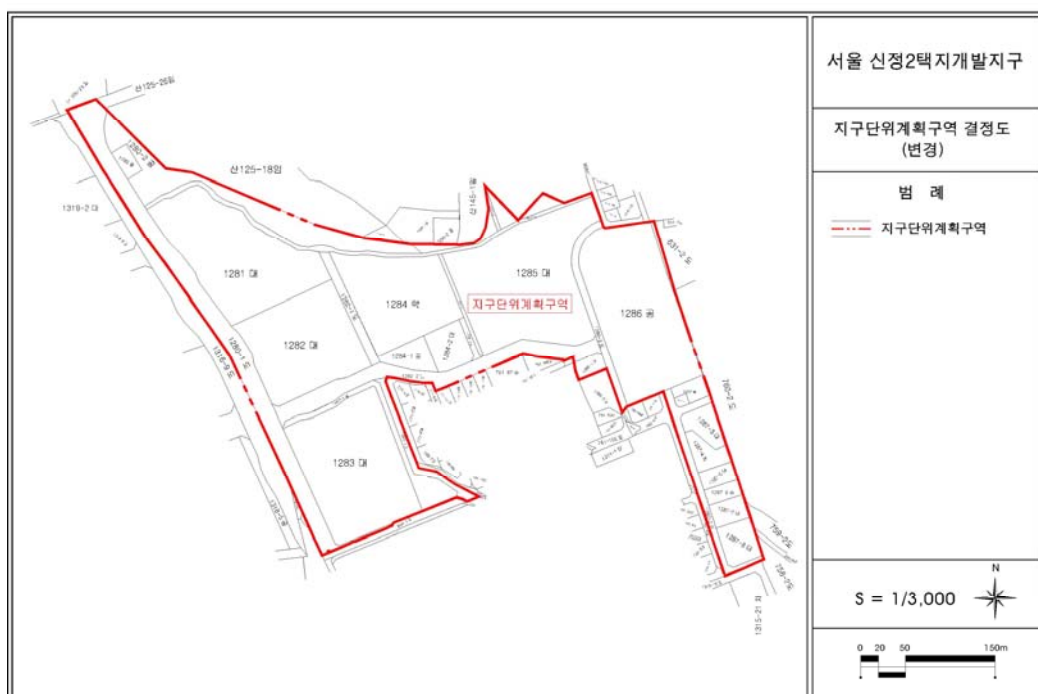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부.

기 정



변 경



◆ 구로구고시 제2017-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개봉동 416-2 ~ 개봉동 241-148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구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해당 도로는 1974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폭8m, 연장220m) 되어 2003년에 개설된 도로로, 각각부분을 기존 담장 및 대문이 점용하고 있으나 저축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철거 사업시행계획이 없고 현장여건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각각부분을 변경하여도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것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20	개봉동 416-2	개봉동 241-148	일반도로	서고시 제2호 (1974.01.14)	일부구간 각각 조정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220	개봉동 416-2	개봉동 241-148	일반도로		

※ 시종점 변경 없이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임.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류	소로2류	위치 : 고척동 241-336 각각정리 규모 : 6㎡ 사유 : 도로 각각변경에 따른 제외	고척동 241-336번지 각각부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정(제외)

3. 지형도면의 작성

- 구로구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와 도로과(☎860-312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S = 1:1,200



구 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직 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유인오	민광식	이근식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면적 (㎡)							
기점	소로	2	8	국지 도로	220	가봉동 416-2	가봉동 241-148	일반 도로	서울시 교서 2호 (74.01.14)
변경	소로	2	8	국지 도로	220	가봉동 416-2	가봉동 241-148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각조장

■ 변경사유서

시행령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 위치 : 교척동 241-336 가각정리 - 규모 : 6㎡ - 사유 : 도로 가각변경에 따른 제외	교척동 241-336 가각부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정(제외)

범 레 : 변경전 ————— 변경후 —————

◆ 동작구고시 제2017-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00-2 외 2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칭 : 대방동 100-2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22(대방동 100-2 외 2필지)
3. 사업면적 : 1,330.4㎡
4. 사업주체 : (주)다움주택건설, 김성구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1, 501호]

5. 사업구역의 면적

토 지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	비 고
대 지 면 적	대방동 100-2, 101-9, 99-9	대	1,330.4	

6. 사업의 시행기간 : 2017. 06. ~ 2017. 12.(사업비 38억원)

7. 사업개요(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가. 대지면적 : 1,330.4㎡
- 나. 건 폐 율 : 53.4% (건축면적 : 710.43㎡)
- 다. 용 적 륜 : 199.9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660.57㎡)
-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60세대)
- 마.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2,660.57㎡

8.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관 계 법 명	조 항	의 제 사 항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사항

9.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동작구 건축과(전화:02-820-1392, 염정호)에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7-90호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일대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지

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강 동 구 청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2동 일대	634,885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 전 :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모여들고 살기 좋은 암사

2) 목 표

- 주거환경개선
 - 주거생활의 최적지 조성
 - 안전·방범·생활편의 증진
- 주민교류 활성화
 - 소통,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
 - 지속적인 공동체활동
-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 경제기반 확충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역사문화자원 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지역 자본화
 - 역사자원과 공동체연계

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5년 ~ 2018년

2)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

○ 마중물 사업 : 4개 부문, 9개 사업

핵심 컨텐츠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총 계			10,000	-	9,000	1,000

핵심 컨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주거지 재생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방법 및 치안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한 마을만들기	2,230	-	2,007	223
	암사 집가꿈 프로젝트	지역주민 대상 집수리교육 및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제공	210	-	189	21
지역 역량 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도시재생거버넌스 조직 구축 및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650	-	585	65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자생적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 유도	520	-	468	52
	앵커시설 건립	도시재생 운영과 실행이 집약된 전력거점공간 조성	4,000	-	3,600	400
주거지 경제 재생	도시농업(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도시농업 공동체활성화 및 소득기반 창출	720	-	648	72
	암사 일자리 연계사업	지역 내 사회참여 자원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190	-	171	19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청년야시장 운영 및 시장명소화 및 경쟁력 제고	170	-	153	17
역사문화 자원연계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역사체험형 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거리조성, 역사문화 테마가로조성	1,310	-	1,179	131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사업 : 6개 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총 계			15,414	1,000	6,161	4,976	3,277
연계 사업	경관개선사업 (소외·낙후지역 중심)	범죄예방환경(CPTED) 디자인을 적용한 소외낙후경관 개선사업	683	-	683	-	-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1,000	1,000	-	-	-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새장터공원 지하부 주차장조성	8,772	-	4,723	4,049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암사길 주변 특색없고, 노후한 간판 정비	262	-	-	262	-
	올림픽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공중에 복잡하게 노출된 가공선로 지중화	2,170	-	755	665	750
	불량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무질서한 불량케이블 정비추진	2,527	-	-	-	2,527

3) 파급효과(마중물 사업)

핵심 컨텐츠	사 업 명	파 급 효 과	비고
주거지 재 생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거주 지속성 확보	
	암사 집가꿈 프로젝트	•주민주도적 거주환경개선 유도 •취약계층 재사회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 역 역 량 강 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접근성이 좋은 주민공유공간 확보로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활동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 •주민 참여기회 확대/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주민 문화/예술 향유 제고	
	앵커시설 건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토대 확보	
주거지 경 제 재 생	도시농업(로컬푸드)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로컬푸드의 지역특화 산업화	
	암사 일자리 연계사업	•주민 소득원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집객력 향상으로 암사종합시장 활성화 •청년층 유입을 통한 암사종합시장 경쟁력 증대	
역사문화 자원연계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방문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역사적 장소성 확보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부문	연번	사 업 명	내 용	비고
공동 이용 시설	1	암사동 앵커시설 건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 활동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집적한 신규 산업 및 주민주도 시설 운영공간 조성	

마.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 사업

사 업 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5	2016	2017	2018	
		10,000	17.7	1,936.5	4,938.82	3,106.98	
주거지 재 생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2,230	-	480	535.02	1,214.98	
	암사 집가꿈 프로젝트	210	-	-	100	110	

사 업 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지 역 역량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650	9.6	101.4	323.41	215.59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520	8.1	105.1	216.79	190.01	
	앵커시설 건립	4,000	-	1,100	2,900	-	
주거지 경제재생	도시농업(로컬푸드)활성화사업	720	-	100	87.6	532.4	
	암사 일자리 연계사업	190	-	-	9.9	180.1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170	-	50	55	65	
역사문화 자원연계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1,310	-	-	711.1	598.9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사업

사 업 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5	2016	2017	2018	
		15,414	-	4,259	2,383	8,772	
연계 사업	경관개선사업(소외·낙후지역 중심)	683	-	90	593	-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1,000	-	1,000	-	-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8,772	-	-	-	8,77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62	-			-	
	올림픽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2,170	-	380	1,790	-	
	불량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2,527	-	2,527	-	-	

※ 향후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조사·분석 실시(연 1회)

- 주거지재생, 지역역량강화, 주거지경제재생, 역사문화재생 부문 등에 대해 거주만족도, 사회적 경제 조직, 방문객 수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사업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한 평가 및 보완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 할	운 영
암 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협의기구)	•사업추진 총괄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의견 및 갈등 조정	•센터장 1명 및 현장활동가(코디네이터)3명 활동 •총괄계획가(MP), 자문계획가(건축·경관, 사회적경제, 공동체) 비상근 자문활동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 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주민의견 ‘소통창구’ 및 참여확대 유도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전체 주민협의체 및 4개분과(마을환경, 마을경제, 공동체, 역사문화) 조직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 및 주민의견 전달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사업 추진협의회 (사업추진·지원기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체 •활성화사업 실행계획 협의 결정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조직, 주민협의체, 지역공동체 조직, 총괄·자문계획가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기구)	•도시재생사업 간 조정 및 총괄 의사결정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행정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계획가, 사업책임기술자 등 전문가, 주민협의체, 각 사업 추진협의회 민간회원 등으로 구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적 협의 및 의사결정
도시재생 전담조직 (행정)	•사업실행 행정지원	•강동구 도시계획과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활동가 육성,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확대, 공동체 활동 공간제공 등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02-2133-7175),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41),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2)에 비치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위치도 >



<사업 구상도>

A. 주거지 재생

-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 안전·연성 마을조성사업
 - 암사길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 마을 안전대책별 설치
 - 주민참여형 나눔주차

B. 지역역량 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활동거점 조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공동체활동거점조성
 - 암사도서관 녹색사랑방 조성
-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 도시재생마을학교
 - 주민 공모사업
 - 공동체 활동 지원
 - 공유무대
 - 암사아이가 마음신포 발간
- 암사로 열거시설 건립

The map shows the Am-sa-dong Urban Regeneration Area with various colored zones and labeled facilities. Key locations include:

- Am-sa-dong Library Green Love Room (암사도서관 녹색사랑방)**: Located in the central blue zone.
- Am-sa Community Center (암사공동체 센터)**: Located in the red zone on the left.
- Am-sa Community Commons (암사공동체 마당)**: Located near the center-left.
- Thermal Facility (열거시설)**: Located in the yellow zone.
- Am-sa Community Commons (암사공동체 마당)**: Located near the center-left.
- Am-sa Community Commons (암사공동체 마당)**: Located near the center-left.

C. 주거형 자족-경제 재생

- 도시농업(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 암사 도시텃밭 조성사업
 -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구축
- 암사 일자리 연계 사업
 - 직주교류 및 일자리 연계사업
 - 청춘 푸드트럭
 - 가족산업 지원창구 운영
- 암사시장 활성화 사업
 - 시장 활력증진 사업
 - 청년 이시점
 - 시장 명소화 사업

D. 역사·문화 자원연계

- 선사 아미가길 조성 사업
 - 선사테마가로 디자인 가로환경 조성
 - 선사테마가로 활성화 프로그램
 - 보행자 관광루트 조성
 - 역사 체험형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

E. 연계사업

- 경관개선사업 (소외내후지역개선)
- 노후차후처리공사
- 생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간판이 아름다운 가옥조성
- 올림픽로 가공간로 지출회
- 불광 구우 커뮤니티 센터

◆ 강동구고시 제2017-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암사동 495-7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강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강동구 암사동 495-72호에 대하여 암사도시재생시범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 거점공간을 마련코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강동구 암사동 495-72	-	증)285.9	285.9	-	2종일반 주거지역

- 건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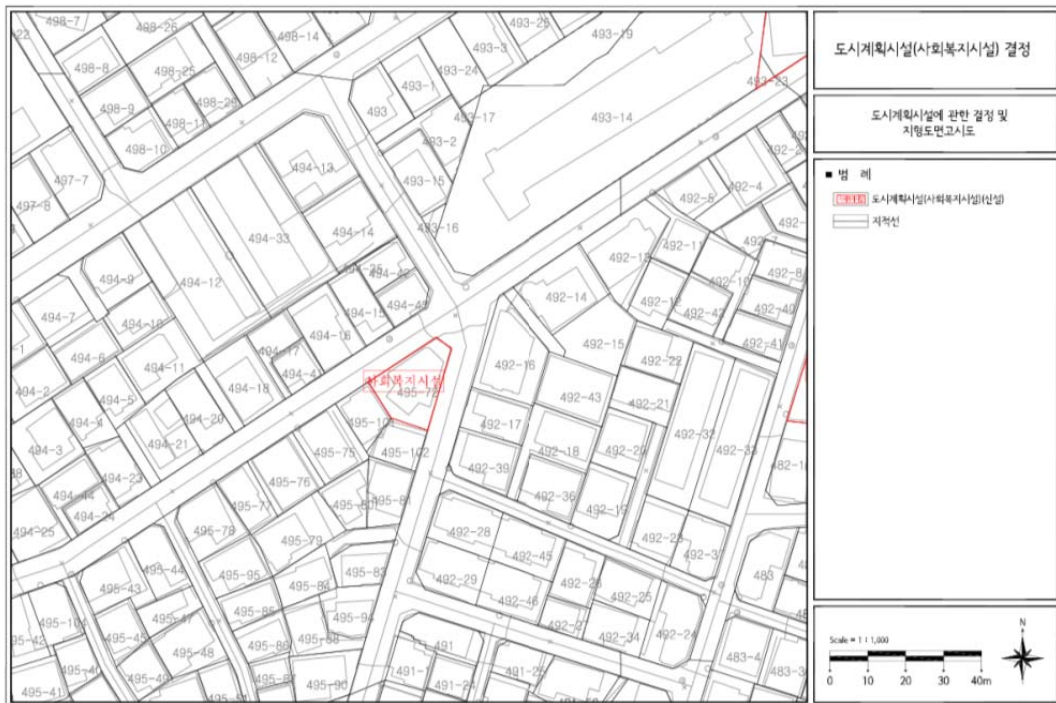
시 설 명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사회복지시설	- 면적 : 285.9㎡ - 건축범위의 결정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200%이하 · 층 수 7층 이하	· 암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해 주민공동체 활동기반 조성 및 지역역량 강화 거점공간 마련을 위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425-60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 강동구고시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17-286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암사역사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토지보상 10,938㎡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1	192	전	2,061	2,061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3/7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71, 301호(권동, 명석빌딩)				1/7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1/7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2/7
변경	1	192	전	2,061	2,061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3/7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504동 1704호(원동, 주공아파트)				1/7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1/7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2/7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2	137-2	전	1,432	1,432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변경	2	137-2	전	1,432	1,432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20(암사동)	서울경기양 돈축산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3	197	전	6,474	1,0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변경	3	197-3	전	1,000	1,0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당초	4	135-2	대	329	329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변경	4	135-2	대	329	329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환영철강공 업주식회사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5	근저당권	
당초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변경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 10(암사동)	와이케이 스틸주식회사	부산시 사향구 을숙도대로 760(토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6	139-4	임	242	24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변경	6	139-4	임	242	24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당초	7	188	대	865	865	심인숙	1030 N. Broadway Evereu WA 18201				
변경	7	188	대	865	865	심인숙	1030 N. Broadway Evereu WA 18201	송파구 세무2과 강동구 세무1과 잠실세무서		압류 3	
당초	8	135	전	2,885	2,885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662/ 28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662/ 2885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변경	8	135	전	2,885	2,885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662/ 28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강동농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	662/ 2885
당초	9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5/9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2/9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2/9
변경	9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5/9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2/9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2/9
당초	10	138-4	전	72	72	권일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82-12, 2층(둔촌동)				
변경	10	138-4	전	72	72	신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52, 111동 301호(도화동, 현대아파트)				
당초	11	139-7	임	72	7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변경	11	139-7	임	72	7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지장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분		소 유 자		용도	구 조	비고
						성명	주 소			
당초	1	135-2	건물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90.66㎡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30.28㎡					
변경	1	135-2	건물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90.66㎡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30.28㎡					
당초	2	192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농업용	파이프 비닐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켄리사로 71, 301호(괘동, 명석빌딩)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변경	2	192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360㎡ 315㎡ 270㎡ 225㎡	박영만	서울 강동구 암사5길 34(암사동)	농업용	파이프 비닐	
당초	3	197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11동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농업용	파이프 비닐	
변경	3	197-3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8동 133㎡ 141㎡ 120㎡ 94㎡ 78㎡ 53㎡ 26㎡ 6㎡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농업용	파이프 비닐	

지장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분		소 유 자		용도	구 조	비고
						성명	주 소			
당초	4	135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0동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파이프 비닐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변경	4	135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8동 154㎡ 308㎡ 154㎡ 154㎡ 150㎡ 150㎡ 156㎡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파이프 비닐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당초	5	137-9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파이프 비닐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변경	5	137-9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217㎡ 154㎡ 154㎡ 154㎡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파이프 비닐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물건(수목)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당초	1	137-2	가이즈까향나무	H3.5*W1.8	3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감나무	H2.0*R4	2					
			개나리	H1.0*7가지	5					
			공작단풍	H1.5*R4	1					
			꽃복숭아	H1.0*W0.6	11					
			꽃복숭아	H1.2*W0.8	4					
			꽃복숭아	H1.2*W1.0	63					
			꽃사과	H4.0*R25	1					
			남천	H1.2*5가지	2					
			능소화	L2.5*R4	3					
			대추나무	H2.0*R6	10					
			대추나무	H2.0*R4	3					
			매화나무	H3.0*R8	27					
			매화나무	H2.5*R6	16					
			모과나무	H2.0*R4	12					
			밤나무	H3.0*R6	1					
			배롱나무	H1.5*R6	33					
			백철쭉	H1.5*W1.0	17					
			사철나무	H1.5*W0.5	190					
			서양측백	H3.0*W1.0	20					
			소나무(동근형)	H1.0*W1.2	413					
			소나무(조형)	H1.6*W0.8*R6	178					
			소나무(조형)	H1.8*W0.8*R8	62					
			소나무(조형)	H2.0*W0.8*R8	26					
			수수꽃다리	H2.0*W1.0	50					
			수수꽃다리	H4.0	2					
			앵도나무	H1.2*W0.6	23					
			앵도나무	H1.5*W0.8	25					
			앵도나무	H2.0*W1.5	2					
			영산홍	H0.3*W0.3	304					
			영산홍	H0.5*W0.6	120					
			영산홍	H1.0*W1.2	246					
			옥향	H0.4*W0.5	12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당초	1	137-2	왕벚나무	H2.0*B6	4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왕벚나무	H2.0*B8	1					
			왕벚나무	H2.0*B5	5					
			왕벚나무	H3.0*B7	2					
			왕벚나무	H2.0*B4	3					
			왕벚나무	H6.0*B15	13					
			왕벚나무	H6.0*B10	6					
			왕벚나무	H6.0*B18	3					
			자두나무	H10*R46	1					
			자목련	H10*R36	1					
			조팝나무	H1.2*W0.6	40					
			주목(선주목)	H1.5*W0.8	8					
			주목(선주목)	H2.0*W1.0	8					
			주목(선주목)	H2.5*W1.2	6					
			쥐똥나무	H1.2*W0.3	200					
			진달래	H1.2*W1.2	10					
			청단풍	H2.0*R4	20					
			장미	3가지	5					
			홍단풍	H2.5*R20	1					
			황금촉백	H0.4*W0.3	18					
			황금촉백	H0.6*W0.4	51					
			황금촉백	H0.8*W0.5	46					
			황금촉백	H1.0*W0.6	5					
			회양목	H0.3*W0.3	29					
			회양목	H0.4*W0.6	38					
			회양목	H0.4*W0.5	1000					
			회양목	H0.6*W1.0	2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변경	1	137-2	가이즈까향나무	H3.5*W1.8	3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감나무	H2.0*R4	2					
			개나리	H1.0*7가지	5					
			공작단풍	H1.5*R4	1					
			꽃복숭아	H1.0*W0.6	11					
			꽃복숭아	H1.2*W0.8	4					
			꽃복숭아	H1.2*W1.0	63					
			꽃사과	H4.0*R25	1					
			남천	H1.2*5가지	2					
			능소화	L2.5*R4	3					
			대추나무	H2.0*R6	10					
			대추나무	H2.0*R4	3					
			매화나무	H3.0*R8	27					
			매화나무	H2.5*R6	16					
			모과나무	H2.0*R4	12					
			밤나무	H3.0*R6	1					
			배롱나무	H1.5*R6	33					
			백철쭉	H1.5*W1.0	17					
			사철나무	H1.5*W0.5	190					
			서양측백	H3.0*W1.0	20					
			소나무(둥근형)	H1.0*W1.2	413					
			소나무(조형)	H1.6*W0.8*R6	178					
			소나무(조형)	H1.8*W0.8*R8	62					
			소나무(조형)	H2.0*W0.8*R8	26					
			수수꽃다리	H2.0*W1.0	50					
			수수꽃다리	H4.0	2					
			앵도나무	H1.2*W0.6	23					
			앵도나무	H1.5*W0.8	25					
			앵도나무	H2.0*W1.5	2					
			영산홍	H0.3*W0.3	304					
			영산홍	H0.5*W0.6	120					
			영산홍	H1.0*W1.2	246					
			옥향	H0.4*W0.5	12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변경	1	137-2	왕벚나무	H2.0*B6	4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왕벚나무	H2.0*B8	1					
			왕벚나무	H2.0*B5	5					
			왕벚나무	H3.0*B7	2					
			왕벚나무	H2.0*B4	3					
			왕벚나무	H6.0*B15	13					
			왕벚나무	H6.0*B10	6					
			왕벚나무	H6.0*B18	3					
			자두나무	H10*R46	1					
			자목련	H10*R36	1					
			조팝나무	H1.2*W0.6	40					
			주목(선주목)	H1.5*W0.8	8					
			주목(선주목)	H2.0*W1.0	8					
			주목(선주목)	H2.5*W1.2	6					
			쥐똥나무	H1.2*W0.3	200					
			진달래	H1.2*W1.2	10					
			청단풍	H2.0*R4	20					
			장미	3가지	5					
			홍단풍	H2.5*R20	1					
			황금촉백	H0.4*W0.3	18					
			황금촉백	H0.6*W0.4	51					
			황금촉백	H0.8*W0.5	46					
			황금촉백	H1.0*W0.6	5					
			회양목	H0.3*W0.3	29					
			회양목	H0.4*W0.6	38					
			회양목	H0.4*W0.5	1000					
			회양목	H0.6*W1.0	2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7-499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남동 177-1번지 일대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종로구청장

1.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
3.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1)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A-4	1	185.1	원남동 171-2	185.1	
		2	1,027.1	원남동 177-1	1,027.1	
		3	599.0	원남동 189-1	599.0	
변경	A-4	1	151.0	원남동 171-2	151.0	공동개발지정 (도로편입 57.8㎡제외)
			1,003.4	원남동 177-1	1,003.4	
		2	599.0	원남동 189-1	599.0	

※ 도로 편입 : 원남동 171-5(27.1㎡), 원남동 171-6(7.0㎡), 원남동 177-8(5.7㎡), 원남동 177-9(18.0㎡)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정용도 : 신설

구 분		지 정 용 도	비 고
신설	원남동 177-1번지 외 1필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70%이상)	

2) 권장용도 : 변경

구분	위치		도면표시	권장용도(전층)	비고
기정	간선부	종묘블록	UA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변경	간선부	종묘블록	UA UH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3) 용적률 : 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간선부	400%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이면부	400%	500% 이하		
	종묘인근 블록	300%	400% 이하		
	울곡로 북측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이하		
	원남동 49-17번지 외 25필지	400%	600%이하	800% 이하	
변경	간선부	400%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이면부	400%	500% 이하		
	종묘인근 블록	300%	400% 이하		
	울곡로 북측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이하		
	원남동 177-1 외 1필지	300%	520% 이하		
	원남동 49-17번지 외 25필지	400%	600% 이하	800% 이하	

4)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금지구간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변경	차량출입금지구간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일부조정)			
		구분	구간	허용구간	
		변경	171-2대	폭2m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게재생략(종로구청 건축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공고 제2017-513호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종로구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017.05.10.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종로구청장

1. 재열람 사유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관련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4. 열람내용 :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	증)39,154.0	39,154.0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다. 이 외의 내용, 세부 조서 및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5.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6. 의견제출 : 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2148-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공고 제2017-556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2011.12.8)호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5.10.)에서 수정가결된 자양동 2-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광진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450-769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3-2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건대입구 3-2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3,967.8	2011.12.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호)	
변경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	
변경	건대입구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구역분할 및 일부 편입된 필지 제척
변경	건대입구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구역분할

※ 제척된 부분편입필지(2-6번지)는 3-3지구내 완전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3,967.8	-	3,967.8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1일대	3,967.8	감)2,560.0	1,407.8	35.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일대	-	증)2,560.0	2,560.0	64.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자양동 2-6일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560.0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된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함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결정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관계도면 : 생략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17-751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3-39호(1973.3.2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3)

다.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응암동 74-7	1,793	감)1,793	-	1973. 3.24. (서울시39호)	

☐ 변경사유

- 현재 시장 폐업 처리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변경(폐지) 결정코자 함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 **양천구공고 제2017-711호**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33호(2006.04.20.)로 결정(변경) 고시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양천구 공고 제2016-216호(2016.02.25.)로 열람공고 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양 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909번지 ~ 신정동 324번지 일대	714,871.4	서고2006-133호 (2006.4.2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①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도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3	공공 청사	우체국	목동 905-16	9,314.7	감)9,314.7	-	-	

- ③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④ 도서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⑤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

2.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 2620-3531)
4.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
5.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양천구공고 제2017-713호

도시관리계획[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1992-729호('92.12.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593호(2000.9.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1.25.) 심의결과(보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명 칭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기정	의료시설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① 불허용도 계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관련법상 지정·허용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② 지정·허용용도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허용용도	비고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	-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전용면적 4,500㎡ 이상)	A	

※ 허용·용도 계획표

A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육외 골프연습장 제외,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나) 건축물의 밀도

① 건폐율·용적률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용적률	건폐율	비고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250%이하	50%이하	

다) 건축물의 높이(변경)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높이	비고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45m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획지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11호 노유자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대상지 건축물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양천구)에 기부채납	건축허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 (비용산정, 관리청 지원, 시설운영 계획, 이행담보 방안 등)은 양천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부 지 면 적 의 10.5%이상 [계획(안)] : 11.73%	양천구청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2.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본관 7층, ☎2620-3531)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17-714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로 결정 고시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신정동 972-5, 6호 : 공동개발 해제 및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신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6. 8 ~ 6. 23(15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2620-3513)
3.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 가구계획 : 변경없음
 - (나) 획지계획 : 변경
 -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 변경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13BL	3	1,968.1	양천구 신정동 972-4	577.6	972-5(권장)	972-5(권장)	
			양천구 신정동 972-5	572.8	972-4(권장) 972-6(지정)	972-4(권장)	972-6와의 공동개발 해제
			양천구 신정동 972-6	817.7	972-6(지정)	-	972-5와의 공동개발 해제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다) 최대개발규모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 : 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 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

- 대지내 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 지구 내 동선체계의 효율성 확보

구분	적 용 대 상	기정	변경	비고
공개 공지	· 보행환경을 위하여 간선변 및 가각부 등 주요 보행결정점 주변에 지정 · 침상형 공지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공장	· 8개소 (위치지정)	· 7개소 (위치지정)	- 감)1개소 (사유:공동개발 해제) - 쌈지형 공지 - 침상형 공지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라) 교통처리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 간선 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이면부 차량진출입이 불가한 간선변 대지에 한하여 일부구간 허용
- 보행 편의성 제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 강서로변 · 신월로변	·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 출입구 설치 금지 ※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강서로변(신정동 972-5 번지) 차량진출입불허구 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 구간 1개소 신설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4척	한강준설 정비공사	2017.06.01~ 2017.12.31	2017. 6.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3척 (부선 3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6.01 ~ 2017.06.18	2017. 6.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6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양화 관공선 선착장 및 홍제천·안양 천 합류부	선박 2척	한강 복조제거	2017.06.05.~ 2017.10.31.	2017. 6.5

사업소공고

◆ 용산소방서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용 산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 용산 2017-1호 (2017.5.30.)	유니테크전설 주식회사 (110111-3101394)	최미숙 (1960.9.1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68 (청파동3가, 3층)	(02) 3273-0404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용산소방서 위험물안전팀(☎ 797-384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0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33-1번지 일원
 - 면 적 : 713.34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수송관 매설
 - 내 역 : 열수송관 매설(L=167m)
5. 점용기간 : 2015.8.10.~2020.8.0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염창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0, 양화동 1-22
 - 면 적 : 일시 2.88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철개교체 작업
5. 점용기간 : 2017.06.05.~2017.07.0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1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1(봉천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636-4번지 등 4필지
 - 면 적 : 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용 전주 설치”
 - 내 역 :
 - 통신용전주(H=13.5) 설치(4개소)
5. 점용기간 : 2017.05.31.~2022.05.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